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차 본회의 회의자료

서 산 시 의 회

목 차

의사일정	안 건 명	쪽번호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21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4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45
5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55
6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7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80
8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9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10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16
11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
12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6
13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76
14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88
1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96
1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6
1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29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3
※ 의안번호 50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403

의사일정 제1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4.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1.

나. 발 의 자 : 기양순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4.

2. 제안설명 요지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사항(2026.4.개정)을 반영하고, 「국회법」 규정을 준용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의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자율성 확대 및 일정기간 내 선출 의무화를통한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고, 국회법을 준용하여 의장단 선거시 의결정족수 조항을 보완하므로 선출의 정당성을 강화함(안 제18조)

나.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시 그 직무대리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다. 임시의장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라. 보궐선거 사유 명문화 및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보궐선거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안 제23조의2)

마.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 (안 제28조)

바. 주소지 이전 등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된 당연퇴직 의원이 의정활동을 지속하는 문제의 해소를 위한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의2)

사. 회의록 작성의 자구 수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51조)

자. 결석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중, 조문 인용항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사항(2026. 4. 개정)을 반영하고, 「국회법」 규정을 준용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의회의 원활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22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기양순 의원 외 10명
발의연월일	2026. 8. 2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양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22 호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기양순, 강석환, 김애란, 송치윤, 조동식, 이국찬, 안원기, 김혜림, 가충순, 이정수, 장갑순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사항(2026. 4. 개정)을 반영하고, 「국회법」 규정을 준용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의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자율성 확대 및 일정기간 내 선출 의무화를 통한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고, 국회법을 준용하여 의장단 선거시 의결정족수 조항을 보완하므로 선출의 정당성을 강화함(안 제18조)

나.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시 그 직무대리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다. 임시의장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라. 보궐선거 사유 명문화 및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보궐선거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안 제23조의2)

마.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안 제28조)

바. 주소지 이전 등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된 당연퇴직 의원이 의정활동을 지속하는 문제의 해소를 위한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의2)

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산시가 설치한 공단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46조의2)

아. 회의록 작성의 자구 수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51조)

자. 결석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중, 조문 인용 항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9조, 제61조, 제90조

○ 「국회법」 제15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

나. 관련 공문

○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안내’(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2818(2026. 6. 2.))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서산시의회 조례 제 호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5일에 실시한다”를 “10일부터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중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보궐선거)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제29조의2 및 제4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퇴직사유의 확인) 의장은 의원이 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의2(출석·답변 요청)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

업법」 제76조에 따른 시가 설치한 공단의 이사장, 임원 및 간부직원에 대하여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개의·회의중지”를 “개회·회의 중지·계속, 개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직·성명”을 “직위와 성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기명투표의 투표자”를 “기명투표·전자투표·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하고, 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⑤ (생 략)	제18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0일부터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 ---------- ---------- ---------- ---------- ----------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② (생 략)	제2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제22조(임시의장의 직무 및 선거) ① ~ ③ (생 략)	제22조(임시의장의 직무 및 선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
<신 설>	제23조의2(보궐선거)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8조(청가 및 결석) ① ~ ③ (생 략)	제28조(청가 및 결석)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⑤ (생 략)	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5항의 출석요구서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⑧ 제7항----------.
<신 설>	제29조의2(퇴직사유의 확인) 의장은 의원이 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의2(출석·답변 요청)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시가 설치한 공단의 이사장,

	임원 및 간부직원에 대하여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회의록의 작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개회·회의 중지·계속, 개의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출석공무원의 직·성명	5. ---------- 직위와 성명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 기명투표·전자투표·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결 석 신 고 서

직　　위 : 서산시의회 의원
성　　명 :

위 의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산시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2. 사　　유 :

년　　월　　일

결 석 자　　(서명·인)

서산시의회 의장 귀하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1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 「국회법」

[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2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72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나. 관련 공문

□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안내’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2818(2026. 6. 2.))

볼거리는 충남, 즐길거리는 충남, 먹거리는 충남, '충남이면 충분해!'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사무처

wow!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314(2026.5.15.)호와 관련됩니다.

2.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사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26.4월 행정안전부 개정)」에 대해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포함하여 추가 안내하오니, 향후 회의규칙 개정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등 1부. 끝.

충청남도의회의장 충청남도의회의장인

수신자 천안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공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보령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아산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서산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논산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계룡시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당진시의회의장(당진시 의회사무국장),금산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부여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서천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청양군의회의장(청양군의회사무과장),홍성군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예산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태안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

주무관	남홍우	의사팀장	대결 2026. 5. 29. 김선태	의사담당관	전결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2750 (2026. 5. 29.) 접수 의회사무국-2818 (2026. 6. 2.)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 / http://council.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5081 팩스번호 041-635-5283 / namdum826@korea.kr / 대국민 공개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가능합니다.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결론

○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및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없어 미첨부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전문위원 신 광 수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2026. 9. 22.(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4.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1.

나. 발 의 자 : 가충순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4.

2. 제안설명 요지

○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독자성이 강화되고 의회 또는 의장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독자적인 소송사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송사무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적·체계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소송사무의 주관 및 서산시의회가 원고가 되는 소송 절차를 규정(안 제3조～제5조까지)

다.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상소 결정 및 소의 취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4. 검토의견 요지

○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독자성이 강화되고 의회 또는 의장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의 독자적인 소송사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송사무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적·체계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42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가충순 의원 외 10명
발의연월일	2026. 8. 21.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가충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42 호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가충순, 안원기, 이국찬, 조동식, 이 만, 이경화, 송치윤, 김애란, 강석환, 기양순, 장갑순

1. 제정이유

○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독자성이 강화되고, 의회 또는 의장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독자적인 소송사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송사무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적·체계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소송사무의 주관 및 서산시의회가 원고가 되는 소송 절차를 규정 (안 제3조 ~ 제5조까지)

다. 피소사건의 응소결정,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 제8조까지)

라.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상소 결정 및 소의 취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또는 서산시의회 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무”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및 행정재판, 민사소송,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 중재·조정 등 그 밖의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말한다. 다만, 의원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제외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을 보조하여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장이 지명한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소송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주관한다.

제4조(제소요청) 의회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소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 등을 구하는 내용
3. 제소 이유 및 사건 경위서
4. 증빙서류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제소결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의회 법률고문 또는 변호사의 의견
4. 소송의 제기가 의회 운영 및 예산에 미치는 영향

제6조(피소사건의 응소결정) 피소된 소송사건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빙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의장이 의회 부의장 및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소송대리인 선임) 의장은 소송 제기 또는 응소 결정과 동시에 소송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소송담당자 지명) ① 의장은 소송사무마다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소송담당자로 지명하여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사무가 종결될 때까지 증거자료수집·현장검증안내·변론기일출정 등 소송대리인의 보조자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의 부담) ① 소송사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회 예산으로 부담한다.

② 의장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상소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판결의 내용, 승소 가능성, 예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후 항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의장은 이를 들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내부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

가. 서산시의회 의원

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2. 외부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회 법률고문

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상소 여부의 결정) ① 의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판결의 내용, 승소 가능성, 예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상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장은 그 의견을 고려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한다.

③ 상고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위원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등 둘 이상으로부터 상고의 실익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심의의 근거자료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을 정한다.

제13조(소의 취하 등) 의장은 소의 취하, 화해·조정,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소송사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소송사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조례 제정 자체로 인해 소요되는 재정은 없음. 다만, 향후 개별 소송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대리인 수임료, 패소비용, 수당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소송사무의 발생 여부와 사건 수·난이도에 따라 변동되는 경비로서 조례 시행만으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소송이 실제 제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됨. 최근 소송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연평균 소요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위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산시의회 운영전문위원 신 광 수

의사일정 제3항



제31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2026. 9. 22.(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4.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1.

나. 발 의 자 : 조동식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4.

2. 제안설명 요지

○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함.

3. 주요 내용

○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규정 신설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4. 검토의견 요지

○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43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조동식의원 외 11명
발의연월일	2026. 8. 2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동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43 호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조동식, 이국찬, 안원기, 김혜림, 가충순, 이정수, 김기욱, 장갑순, 기양순 송치윤, 이경화, 이 만

1. 개정이유

○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규정 신설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

○ 「국회법」 제16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산시의회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서산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생 략) <신 설>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산시의회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서산시의회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

	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4.>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

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 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감액·지급 제한·환수가 발생하여,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출의 변동요인이 존재함

- 다만, 그 방향은 세출의 순증가가 아닌 순감소로서 시 재정에 추가 부담을 초래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시행에 따른 재정효과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나타나는 우발적 효과로서 징계 의결 발생 여부, 연간 발생 건수, 징계의 종류(경고·사과·출석정지), 출석정지 일수 가중사유 해당 여부 등 감액 규모를 좌우하는 변수가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없음

○ 또한, 이 개정안의 재정효과는 세출의 순감소에 해당하여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계량적 추계의 실익도 인정되지 아니함

○ 따라서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유서로 갈음하고자 함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전문위원 신 광 수

의사일정 제4항



제31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2026. 9. 22.(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서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4.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1.

나. 발 의 자 : 이 만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4.

2. 제안설명 요지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 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산시의회 징계 절차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상을 확립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징계사유 (안 제2조)

다. 징계양정 (안 제3조)

라. 징계의결 (안 제4조)

마. 징계결과 공개 (안 제5조)

4. 검토의견 요지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 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산시의회 징계 절차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상을 확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44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발 의 자	이 만 의원 외 11명
발의연월일	2026. 8. 21.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이 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44 호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이 만, 이경화, 송치윤, 조동식, 이국찬, 안원기, 김혜림, 가충순, 이정수, 김기욱, 장갑순, 강석환

1.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산시의회 징계 절차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상을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징계사유 (안 제2조)

❍ 징계양정 (안 제3조)

❍ 징계의결 (안 제4조)

❍ 징계결과 공개 (안 제5조)

3.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서산시 규칙 제 호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징계사유 등 의원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사유) 서산시의회는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에 따른 겸직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 제82조에 따른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법 제94조에 따른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 등 발언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8. 법 제96조에 따른 발언 방해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9.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3.「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였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였을 때
15.「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6.「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17.「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8.「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9.「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0.「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1. 그밖에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징계양정)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 유형, 위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 위반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2, 3에 규정된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유형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4조(징계의결) ① 신속한 징계절차 이행을 위해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징계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징계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중에 없었던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본회의에 제출된 경우
2.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사실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징계 의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징계결과 공개) ① 징계처분 후에는 즉시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서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개인정보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개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하되, 공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산시의회 의원 위반행위 유형(제3조 관련)

일반적인 경우	▲의원의 의무(지방자치법 §44),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지방자치법 §82), ▲공직자윤리법 위반(공직자윤리법 §22)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44),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처벌법 §2), ▲성매매(성매매알선처벌법 §2),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3),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지방공무원법 §69의2), ▲부정청탁 등(부정청탁금지법 §5, §6),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5),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대통령령),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등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회의의 질서유지 방해(지방자치법 §94), ▲모욕 등 발언의 금지(지방자치법 §95), ▲발언방해 등의 금지(지방자치법 §96), ▲겸직 등 금지(지방자치법 §43), ▲겸직신고 고의 누락 및 허위 신고·사임권고 미이행(지방자치법 §43) 등

[별표 2]

위반행위 유형별 징계기준(제3조 관련)

위반 정도 및 고의·과실의 경중 / 위반행위 유형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위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위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위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위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명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제명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3조 관련)

유형별		징계기준
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②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③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사망사고의 경우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사고 후「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명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의사일정 제5항



제31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1.

나. 발 의 자 : 안원기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7.

2. 제안설명 요지

○ 야간·공휴일 등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의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약사법」 제21조의3을 근거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문약사 복약지도 확대로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민 건강권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금의 환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조례안은 야간 및 공휴일 등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위험을 경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약사법」및「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공심야약국 지정기준, 운영시간, 지청취소 및 운영비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현재 서산시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용실적 또한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3)**

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 안 가 결』

의 안 번 호	제 45 호
의결 연월일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안원기 의원 외 10명
발의연월일	2026. 8. 21.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45 호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안원기, 김혜림, 가충순, 이정수, 김기욱, 장갑순, 기양순, 김애란, 송치윤, 이경화, 이 만

1. 제정이유

○ 야간·공휴일 등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의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약사법」 제21조의3을 근거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문약사 복약지도 확대로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민 건강권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원금의 환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같은 법 시행규칙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야간·공휴일 등 심야시간대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약사의 전문 상담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절차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약국개설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약국 또는 그 개설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해당하여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약사법」

[시행 2025. 4. 8.]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 ·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보건복지부령 제1065호, 2024. 10. 18., 일부개정]

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2.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
3.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24. 7. 12.]

제11조의4(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

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법 제21조의3제5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비용 지급

   -「약사법」 제21조의3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해당 의안 제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며 추후 발생하더라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 서산시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최 영 주**

의사일정 제6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1.

나. 발 의 자 : 김애란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7.

2. 제안설명 요지

○ 지방의회의 현행 조례 제1조(목적)는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를 근거 규정으로 인용하고 있으나, 동법이 2023년 개정되면서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시설 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목적 규정 정비 (안 제1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중 “제9조 및”을 삭제함

나. 지원 대상 경비의 추가 (안 제3조제4호 신설)

– 시설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대상으로 신설함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된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노후된 문화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관람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임

나. 특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제1항에서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의 개수·보수는 안전한 시설 운영과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운영요소라 할 것임

다. 또한 춘천시, 화성시, 창원시, 신안군 등 다수의 시·군에서도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선, 노후시설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입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46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애란 의원 외 10명
발의연월일	2026. 8. 21.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애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46 호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김애란, 강석환, 기양순, 송치윤, 조동식, 이국찬, 안원기, 김혜림, 가충순 이정수, 장갑순

1.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 현행 조례 제1조(목적)는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를 근거 규정으로 인용하고 있으나, 동법이 2023년 개정되면서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시설 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목적 규정 정비 (안 제1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중 “제9조 및”을 삭제함

나. 지원 대상 경비의 추가 (안 제3조제4호 신설)

- 시설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대상으로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제13조, 제24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48조

나. 예산조치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로 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설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 ---------- ---------- ---------- ----------.
제3조(지원대상)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3조(지원대상)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시설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9조 삭제 <2023. 6. 20.>

제13조(설립과 육성)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수·보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 소요액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장 김 기 윤

의사일정 제7항



제31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1.

나. 발 의 자 : 이정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7.

2. 제안설명 요지

○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는 지역 내 다양한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 있음

○ 이에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도·감독 및 평가 (안 제5조)

라. 중복지원 제한 및 경과조치 (안 제6조 및 부칙)

4. 검토의견 요지

가. 지역 내 사회단체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에서 주민복지에 해당하므로 입법 목적과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 현재 동두천시와 삼척시 보성군 영암군등 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라.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절차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 보조금 지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심사와 절차를 거쳐 운영될 것으로 판단됨

마.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기존 유사한 보조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사업의 공익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47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정수 의원 외 10명
발의연월일	2026. 8. 21.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47 호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이정수, 가충순, 안원기, 이국찬, 조동식, 이 만, 송치윤, 김애란, 강석환, 기양순, 장갑순

1. 제정이유

○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는 지역 내 다양한 사회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 있음

○ 이에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도·감독 및 평가 (안 제5조)

라. 중복지원 제한 및 경과조치 (안 제6조 및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타 지자체 조례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협의회”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산시에 사무소를 둔 다수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로 조직된 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2. 시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
3.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4. 사회질서 및 안전 관련 사업
5. 문화, 예술, 체육 관련 행사
6.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7.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활동
8. 그 밖에 협의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에게 교부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하는 데에 있음

○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은 아래와 같이 소요비용이 발생하게 됨

구 분	항 목	산출기초	산출액	비고
	합 계		**10,000천원**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	10,000천원×1식	10,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다. 타 지자체 조례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335호, 2023. 4. 1., 제정]

경기도 동두천시(자치행정과), 031-860-21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협의회”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두천시에 사무소를 둔 다수의 법인 또는 단체로 조직된 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2. 시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
3.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4. 사회질서 및 안전 관련 사업
5. 문화, 예술, 체육관련 행사
6.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7. 그 밖에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교부를 결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3. 4. 1. 조례 제2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시행 2025. 4. 11.]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제1696호, 2025. 4. 11.,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총무과), 570-343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협의회”란 삼척시에 사무소 주소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단체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익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2. 시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
3.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4. 사회질서 유지 및 안전 관련 사업
5. 문화, 예술, 체육관련 행사
6.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사회단체협의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사회단체협의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8항



제31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1.

나. 발 의 자 : 이정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7.

2. 제안설명 요지

○ 현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위원의 경험 축적이 어렵고 업무 단절이 반복됨

○ 이에,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험 있는 위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원의 연임 전면제한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13조제1항)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연임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임

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도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구성·운영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위원의 임기나 연임 여부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본 개정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또한 충남 대다수의 시·군에서 위원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음 (참고자료1)

라. 현행 단임제로 인한 위원회의 전문성 축적 한계와 업무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충남 도내 시·군과의 제도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48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정수 의원 외 10명
발의연월일	2026. 8. 21.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48 호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이정수, 가충순, 안원기, 이국찬, 조동식, 이 만, 이경화, 송치윤, 강석환, 기양순, 장갑순

1. 개정이유

○ 현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위원의 경험 축적이 어렵고 업무 단절이 반복됨

○ 이에,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험 있는 위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연임 전면제한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1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충청남도 시군별 연임제한 현황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생 략)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 하되, 1회에 한하여 ----------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8. 3. 2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제목개정 2020. 3. 3.]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 요인 없어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거 생략

4.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신 현 우

다. 충청남도 시군별 연임제한 현황

연임제한	시군
연임 불가(1)	서산시
1회 연임 가능(10)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연임제한 없음(4)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의사일정 제9항



제31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8. 24.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자치행정과)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7.

2. 제안설명 요지

○ 상위 법령·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자기성찰휴가(장기재직휴가) 사용 분할 수 증가로 근무 여건 개선·사기 진작 및 안정적인 조직 정착 도모

3. 주요 내용

가. 특별휴가 육아시간 사용 범위 자녀 1인당 36개월로 확대(기존 24개월)

나. 특별휴가 재해구호 휴가 자원봉사 활동 공무원 5일 이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10일 이내 재해구호 휴가 부여

다. 자기성찰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사용 분할 수 증가

- 5년 이상 10년 미만 : 3회까지 분할 가능
- 10년 이상 : 8회까지 분할 가능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개정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와 재해구호휴가 기준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나.「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복무사항의 범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휴가 활용 편의성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 사항으로써

다. 충남도가 최대 8회까지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도내 다수 시·군에서도 6~7회까지 분할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라. 서산시의 복무제도를 충남도의 운영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33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08. 24.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33 호

제출연월일 : 2026. 08. 2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자기성찰휴가(장기재직휴가) 사용 분할 수 증가로 근무 여건 개선·사기 진작 및 안정적인 조직 정착 도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 육아시간 사용 범위 자녀 1인당 36개월로 확대(기존 24개월)

나. 특별휴가 재해구호 휴가 자원봉사 활동 공무원 5일 이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10일 이내 재해구호 휴가 부여

다. 자기성찰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사용 분할 수 증가

- 5년 이상 10년 미만 : 3회까지 분할 가능
- 10년 이상 : 8회까지 분할 가능

3. 단계별 추진사항

가. 입법계획 결재 : 자치행정과-23980(2026. 7. 16.)

나. 성별영향평가 : 가족지원과-23932(2026. 7. 23.)

다. 입법예고 : 자치행정과-23966(2026. 7. 16.)

라. 법제심사 : 기획예산담당관-26186(2026. 8. 6.)

마.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 자치행정과-26208(2026. 8. 6.)

바. 시의회 의결 : 2026. 9월 중

사. 공포 및 시행 : 2026. 9월 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라. 법제심사 결과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얻을”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로 인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2회”를 “3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4회”를 각각 “8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② ---------- 36개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 받을 수 있으며, 재해로 인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
⑥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 재직기간을 지나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⑥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회 까지 분할 사용 가능)	2.---------- ----------3회----------
3.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8회----------
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4.---------- ----------8회----------
5. 30년 이상 : 30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5. ----------8회----------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미첨부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에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유 건 규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해뜨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자치행정과-24477(2026. 7. 22.)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가 족 지 원 과 장

주무관 김지영 여성정책팀장 대결 2026. 7. 23. 김영석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23932 (2026. 7. 23.) 접수 자치행정과-24575 (2026. 7. 23.)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가족지원과 (읍내동)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coconut700@korea.kr / 대국민 공개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라. 법제심사 결과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사 결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비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 정
부칙 규정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관련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자기성찰휴가 사용 분할 수를 증가시켜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6. 8. 6.(제1317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주사 이인수

의사일정 제10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8. 25.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스마트정보과)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7.

2. 제안설명 요지

○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한 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탁사무 :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관제 사무

- 위탁예산 : 연간 12.5억원(전액시비)
- 운영인력 : 20명(현재와 동일) / 4조 3교대 24시간 운영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선정방법 : 수탁자 모집공고 ⇒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통해 선정

- 참가자격 :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 업체. 중소기업

○ 시설 현황

구 분	도시안전통합센터
위 치	서산시 석남동 122번지 (대지 1,615㎡, 청사 3층 726㎡)
규 모	580㎡ (1층, 사무실, 영상검색실. 2층 전산실, 관제실)
근무자현황	파견근무(공무직 1, 경찰관 1), 관제요원 20 (4조/3교대)
시설개소일	2017. 02. 01.

○ 위탁사무내용

- CCTV를 관제하며 특이사항 인지시 112, 119, 시청 등 관계기관에 접수

- CCTV 비상벨 호출 및 안심지기 등 대시민 서비스 대응 및 처리

○ 연도별 운영 사항

(단위 : 천원/ 건)

구 분	년 도	업 체 명	주 소	비 용	관제실적
용 역	2018	㈜광주통합관리	경기도 용인시	689,298	158
용 역	2019	에이엠영보(주)	서울 강남구	791,908	166
용 역	2020	원스탑	경남 창원시	813,789	430
민간위탁	2021	㈜이화실업	서산시 석남동	825,000/11개월	577
	2022			944,755	681
	2023			1,026,480	1,044
민간위탁	2024	㈜FS탄영	서산시 동문동	1,061,172	872
	2025			1,079,950	819
	2026			1,119,400	398

*** 연간 인건비 상승분 적용에 따른 예산 증가**

4. 검토의견 요지

가. 이 동의안은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본 사무는 24시간 상시 관제가 요구되는 전문적인 업무로서 CCTV 영상관제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긴급상황 대응, 관계기관 상황전파, 시민안전 서비스 제공 등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써 현재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 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 또한「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8조에서는 재위탁시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동의안에도 위탁사무, 추진근거, 위탁기간, 선정방식, 예산 등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36 호
의결연월일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8. 25.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36 호

제출연월일 : 2026. 8. 25.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한 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필요성

○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관제사무는 CCTV 관제 뿐 아니라 인력관리의 필요성도 있기에 전문업체가 위탁 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임.

○ 현재 민간위탁 중인 사업으로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관제 능률 개선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8조

○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제14조

- 위탁사무

가. CCTV 관제하며 특이상황 인지 시 112,119,시청 등 관계기관 접수

나. CCTV 비상벨 호출 및 안심지기 등 대시민 서비스 대응 및 처리

4. 위탁개요

○ 대상사무 :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관제 사무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탁예산 : 연간 12.5억원(전액시비) 예정/연단위 예산 편성

※ 원가산정 용역 또는 유사 자료 등 근거에 의거 산출

○ 운영인력 : 20명 (현재와 동일)

○ 선정방법 : 수탁자 모집공고 ⇒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통해 선정

○ 참가자격 : 경비업법 제4조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 업체, 중소기업

<연간위탁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비용	825,000 (11개월)	944,755	1,026,480	1,061,172	1,079,950	1,119,400
업체	㈜이화실업 (서산시 석남동)			㈜에프에스탄영 (서산시 동문동)		

※ 연간 인건비 상승분 적용에 따른 예산 증가

<관제실적>

(2026. 6. 30.기준)

연도	계	절도	폭행	교통	거 동 불가자	거 동 이상자	화재	아동·청소년	기타
2024	872	3	12	8	43	5	2	4	795
2025	819	5	5	21	97	13	5	3	670
2026	398	1	10	19	70	8	8	5	277

※ 기타 : 도로 굴착 상황관제 시 미래엔서해에너지에 상황전파, 주요 상황발생 시 관련 기관에 관제지원 등

5. 향후 추진계획

❍ 2026. 9. : 의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결

❍ 2026. 10~11. : 수탁기관 공고 및 접수,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수탁자 선정 및 통보, 위·수탁 협약 체결

❍ 2027. 1. : 민간위탁 운영 시행

6. 의회 동의 사항

❍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여부

참고 관련법령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7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14조(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공무원과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5.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해양수산과)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7.

2. 제안설명 요지

○ 바다낚시공원 사용료 조정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바다낚시공원 경영에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3. 주요 내용

○ 바다낚시공원 사용료 조정(안 제6조 관련 별표2)

4.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2018. 10. 18.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해상낚시터 및 해상휴게시설의 이용요금 체계를 현실화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료 및 이용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요금 적용기준 및 시설별 추가요금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령 기준, 평일·주말 구분, 시설 명칭 및 추가요금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용료 인상은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해당 시설이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경우 기존 예약자에 대한 요금 적용 및 이용자 안내 등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변경된 사용료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약시스템 등 운영체계의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의 안 번 호	제 34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08. 24.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34 호

제출연월일 : 2026. 08. 2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바다낚시공원 사용료 조정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바다낚시 공원 경영에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바다낚시공원 사용료 조정(안 제6조 관련 별표2)

3. 단계별 추진사항

가. 입법계획 결재 : 2026. 7. 6. (해양수산과-11942)

나. 성별영향평가 : 2026. 7. 10. (가족지원과-22702)

- 결 과 :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다.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6. 7. 6. ~ 2026. 7. 26. (20일간)
- 공공번호 : 서산시 공고 제2026-1880호
- 결 과 : 의견 없음

라. 법제심사 : 2026. 8. 4. (제1316호)

마. 조례・규칙심의회 : 2026. 8. 18.

바. 시의회 의결 : 2026. 하반기 중

사. 공포 및 시행 : 2026. 하반기 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56조

-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라. 법제심사 결과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해상 낚시터 주간 사용료

구 분		연령	요 금	비고
해상낚시터 이 용	입어식	만16세 ~ 성인	6만원	주간 이용시간 (07:00 ~ 16:00)
		만7세 ~ 15세	4만원	
	자연식	전 연령	3만원	

① 성인은 만19세 이상자, 만7세 미만의 자는 무료, 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만 출입 가능

② 10명 이상의 단체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10 ~ 19명 : 10%, 20명 이상 : 20%)

해상 낚시터 야간 사용료

구 분		연령	요 금	비고
해상낚시터 이 용	입어식	만16세 ~ 성인	7만원	야간 이용시간 (18:00 ~ 익일 06:00)
		만7세 ~ 15세	5만원	
	자연식	전 연령	4만원	

① 성인은 만19세 이상자, 만7세 미만의 자는 무료, 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만 출입 가능

② 10명 이상의 단체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10 ~ 19명 : 10%, 20명 이상 : 20%)

해상휴게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구 분	월요일 ~ 목요일	금 공휴일	비 고
해상휴게시설	돔 형	300,000원	350,000원	6명
	하우스형	400,000원	500,000원	12명

① 평일과 주말 · 공휴일 구분

- 평일 : 월요일 ~ 목요일

- 주말 · 공휴일 : 금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 전일 ~ 공휴일

※ 공휴일 기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 해상휴게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돔형 6명, 하우스형 12명)이며 기준정원을 초과하여 이용객을 받을 수 없다.

③ 퇴실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1시간 초과~3시간 까지는 일반형 20,000원, 단체동 40,000원

- 3시간 초과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2〕 <개정 2023.9.18.>

해상 낚시터 주간 사용료

구 분		연령	요 금	비고
해상낚시터 이 용	입어식	성인, 중학생고등학생	4만원	주간 이용시간 (07:00 ~ 16:00)
		6세 ~ 초등학생	2만원	
	자연식	전 연령	2만원	

① 성인은 19세 이상자, 6세 미만의 자는 무료, 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만 출입 가능

② 10명 이상의 단체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10 ~ 19명 : 10%, 20명 이상 : 20%)

해상 낚시터 야간 사용료

구 분		연령	요 금	비고
해상낚시터 이 용	입어식	성인, 중학생고등학생	5만원	야간 이용시간 (18:00 ~ 익일 06:00)
		6세 ~ 초등학생	3만원	
	자연식	전 연령	3만원	

① 성인은 19세 이상자, 6세 미만의 자는 무료, 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만 출입 가능

② 10명 이상의 단체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10 ~ 19명 : 10%, 20명 이상 : 20%)

해상휴게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구 분	월요일 ~ 목요일	금 공휴일	비 고
해상휴게시설	돔 형	250,000	300,000	6명
	하우스형	400,000원	450,000원	12명

① 평일과 주말 · 공휴일 구분

- 평일 : 월요일 ~ 목요일

- 주말 · 공휴일 : 금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 전일 ~ 공휴일

※ 공휴일 기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 해상휴게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돔형 6명, 하우스형 12명)이며 기준정원을 초과하여 이용객을 받을 수 없다.

③ 성수기는 7~8월 및 주말·공휴일이며 비수기는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④ 퇴실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1시간 초과~3시간 까지는 일반형 20,000원, 단체동 40,000원

- 3시간 초과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해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과장 윤 여 신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h colspan="5">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th></tr>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충남서산030</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충청남도 서산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해양수산과</td></tr>
<tr><td>담당자명</td><td>전소라</td><td>전화번호</td><td>041-660-2417</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7월 9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해양수산과)</td><td colspan="4">○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바다낚시공원 사용료 조정을 통한 물가상승률 반영
- 바다낚시공원 사용료 조정</td></tr>
<tr><td rowspan="2">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td></tr>
<tr><td colspan="4">’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td></tr>
<tr><td>검토의견
반영계획서</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r><td colspan="5">「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7월 09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해양수산과장 귀하</td></tr>
</table>

라. 법제심사 결과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사 결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비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 정
부칙 규정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해상낚시터 및 해상휴게시설의 사용료를 조정,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 마침	심사일	2026. 8. 4.(제1316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주사 이인수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별표 2］ (개정안)

해상 낚시터 주간 사용료

구 분		연령	요 금	비고
해상낚시터 이용	입어식	만16세 ~ 성인	6만원	주간 이용시간 (07:00 ~ 16:00)
		만7세 ~ 15세	4만원	
	자연식	전 연령	3만원	

① 성인은 만19세 이상자, 만7세 미만의 자는 무료, 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만 출입 가능

② 10명 이상의 단체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10 ~ 19명 : 10%, 20명 이상 : 20%)

해상 낚시터 야간 사용료

구 분		연령	요 금	비고
해상낚시터 이용	입어식	만16세 ~ 성인	7만원	야간 이용시간 (18:00 ~ 익일 06:00)
		만7세 ~ 15세	5만원	
	자연식	전 연령	4만원	

① 성인은 만19세 이상자, 만7세 미만의 자는 무료, 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만 출입 가능

② 10명 이상의 단체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10 ~ 19명 : 10%, 20명 이상 : 20%)

〔별표 2〕 (수정안)

해상 낚시터 주간 사용료

구 분		연령	요 금	비고
해상낚시터 이용	입어식	만16세 이상	6만원	주간 이용시간 (07:00 ~ 16:00)
		만7세 ~ 15세	4만원	
	자연식	전 연령	3만원	

① 만7세 미만의 자는 무료, 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만 출입 가능

② 10명 이상의 단체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10 ~ 19명 : 10%, 20명 이상 : 20%)

해상 낚시터 야간 사용료

구 분		연령	요 금	비고
해상낚시터 이용	입어식	만16세 이상	7만원	야간 이용시간 (18:00 ~ 익일 06:00)
		만7세 ~ 15세	5만원	
	자연식	전 연령	4만원	

① 만7세 미만의 자는 무료, 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만 출입 가능

② 10명 이상의 단체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10 ~ 19명 : 10%, 20명 이상 : 20%)

(개정안)

해상휴게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구 분	월요일 ~ 목요일	금 공휴일	비 고
해상휴게시설	돔 형	300,000원	350,000원	6명
	하우스형	400,000원	500,000원	12명

① 평일과 주말 · 공휴일 구분

- 평일 : 월요일 ~ 목요일

- 주말 · 공휴일 : 금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 전일 ~ 공휴일

※ 공휴일 기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 해상휴게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돔형 6명, 하우스형 12명)이며 기준정원을 초과하여 이용객을 받을 수 없다.

③ 퇴실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1시간 초과~3시간 까지는 일반형 20,000원, 단체동 40,000원

- 3시간 초과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수정안)

해상휴게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구 분	기본 요금	주말·공휴일 요금	비 고
해상휴게시설	돔 형	300,000원	350,000원	6명
	하우스형	400,000원	500,000원	12명

① 사용료 적용 구분

- 기본 요금 적용일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주말·공휴일 요금 적용일 :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및 공휴일 전일부터 해당 공휴일까지

※ 공휴일 기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 해상휴게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돔형 6명, 하우스형 12명)이며 기준정원을 초과하여 이용객을 받을 수 없다.

③ 퇴실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1시간 초과~3시간 까지는 돔형 20,000원, 하우스형 40,000원

- 3시간 초과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의사일정 제12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7.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0.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상하수도과 소관)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7.

2. 제안설명 요지

○ 현행 서산시 조례는 환경부에서 2007년 11월 확정·배포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를 바탕으로 함.

○ 제도적·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추세에 맞게 조례개정을 실시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액을 현실화하고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재산정하고 부과기준 및 대상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부담금 산정기준 개정(안 제5조제1항)

※ 별표 신설 및 기존 별표 내용개정 포함

4.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용수량 산정기준 및 누수·퇴수량 산정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과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설 유형별 용수량 및 누수·퇴수량 산정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실제 여건과 비용 변동 등을 반영하여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문에서 별표를 인용하는 용어와 실제 별표의 명칭이 일부 일치하지 않아 각 별표의 명칭과 본문의 인용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계량기 구경별 정액제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위 항목의 표기체계 및 누수·퇴수량 산정기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의 안 번 호	제35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08. 20.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5호

제출연월일 : 2026. 08. 20.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현행 서산시 조례는 환경부에서 2007년 11월 확정·배포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를 바탕으로 함

○ 제도적·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추세에 맞게 조례개정을 실시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액을 현실화하고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재산정하고 부과기준 및 대상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산정기준 개정(안 제5조제1항) ※ 별표 신설 및 기존 별표 내용개정 포함

3. 단계별 추진사항

가. 입법계획 결재 : 2025. 10. 22.(상하수도과-16177호)

나. 성별영향평가 : 2026. 1. 19.(가족지원과-2425호)

다. 입법예고(부칙 변경으로 인한 재공고)

- 기　　간: 2026. 6. 26. ~ 7. 16.

- 공고번호: 서산시 공고 제2026-1806호

- 공고결과: 의견 없음

라. 법제심사 : 2026. 7월 중

마. 조례 · 규칙심의회 : 2026. 10월 중

바. 시의회 의결 : 2026. 11월 중

사. 공포·시행 : 2026. 12월 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나. 예산조치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라. 법제심사 결과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산정 기준”을 “부과대상 기준”으로, “시설유형별”을 “시설 유형별”로, “용수량 산정은 별표 3과”를 “산정기준은 별표 3, 용수량 산정은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5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시행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 기준은 별표 1, 시설유형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2, 용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 ---------- ---------- ---------- ---------- ---------- 부과대상 기준---- 시설 유형별 --------- ---------- 산정기준은 별표 3, 용수량 산정은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5와 ---.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2. ---------- ---------- ---------- ---------- ---------- ---- 별표 5------.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대규모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목별 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물류시설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나.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 · 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등에 따른 항만건설 사업 등)
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개발사업 등)
마. 관광지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바.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사업(「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방 · 군사시설 사업 등)
사. 그 밖에 주거 · 숙박 · 판매 · 영업 · 교육 · 복지 · 의료 · 문화 · 체육시설 등 기본계획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계획 승인 · 인가를 받는 개발사업

□ 중규모 개발사업(일정 규모 이상의 톤당 원인자부담금 대상 사업)

○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의 분류는 별표 2와 같고, 부과 대상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시설유형	톤당 원인자부담금 적용 대상	비 고
주거시설	20세대 이상	
숙박시설	객실 15실 이상(600㎡ 이상)	
교육·연구·수련·복지시설	2,000㎡ 이상	
의료시설	1,000㎡ 이상	
판매·유통·업무시설	1,000㎡ 이상	
기타 시설	2,000㎡ 이상	
공 장	1,500㎡ 이상	

○ 증·개축시설: 기존 시설물 및 증·개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과 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부과 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나. 부과 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다. 기존 시설물이 부과 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 부과 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라. 기존 시설물이 부과 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증축 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 부과 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적용한다.

마.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만, 주차관리실의 주차장 면적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가)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비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원인자부담금 = 단위 사업비 ×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대규모 개발사업 단위 사업비 = 총자산 ÷ 시설용량
■ 총자산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기타가동설비자산액*
*기타가동설비자산 : 수용가가 부담한 급수공사비 누계액
■ 시설용량 = 정수장 용량 + 광역 배분 계획량

○ 나)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금 액
단위 사업비(㎥/일)	1,155천원

○ 다)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 사업비는 실소요 공사비를 적용

○ 라)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① 순자산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타가동설비자산+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고정부채)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시설용량 = 톤당 원인자부담금 = 874천원

■ 시설용량 = 정수장 용량 + 광역 배분 계획량

②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③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4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①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다. 순자산/시설용량 = 톤당 원인자부담금 = **874천원**

○ **■ 시설용량 = 정수장 용량 + 광역 배분 계획량**

②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4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④ 단, 계량기 구경이 **40mm 이하인 경우 정액제로 부과한다.**

가. 13mm - 285,000원

나. 20mm - 797,000원

다. 25mm - 1,281,000원

라. 32mm - 2,277,000원

마. 40mm - 3,838,000원

[별표 4]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table>
<tr><th>시설유형</th><th colspan="6">산정기준</th></tr>
<tr><td>주거시설</td><td colspan="6">세대수×2.11인(세대당)×0.204㎥(인・일)×1.30(첨두계수)</td></tr>
<tr><td>숙박시설</td><td colspan="6">건축연면적(㎡)×0.0203㎥/㎡・일)×1.30(첨두계수)</td></tr>
<tr><td>교육・연구・수련・복지시설</td><td colspan="6">건축연면적(㎡)×0.0089㎥/㎡・일)×1.30(첨두계수)</td></tr>
<tr><td>의료시설</td><td colspan="6">건축연면적(㎡)×0.0215㎥/㎡・일)×1.30(첨두계수)</td></tr>
<tr><td>판매・유통시설</td><td colspan="6">건축연면적(㎡)×0.0230㎥/㎡・일)×1.30(첨두계수)</td></tr>
<tr><td>기타시설</td><td colspan="6">건축연면적(㎡)×0.0124㎥/㎡・일)×1.30(첨두계수)</td></tr>
<tr><td rowspan="3">공장시설</td><td colspan="6">❍ 사업승인(허가시)시 실 소요량
❍ 건축연면적(㎡)× ㎥/㎡・일)×1.30(첨두계수)</td></tr>
<tr><td>음식물</td><td>섬유·의복·가죽</td><td>목재·나무·종이</td><td>인쇄출판</td><td>화합물·석유·고무·플라스틱</td><td>철,비금속</td></tr>
<tr><td>0.0244</td><td>0.0241</td><td>0.0429</td><td>0.0159</td><td>0.0135</td><td>0.0055</td></tr>
<tr><td>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기타 대단위 개발사업 등</td><td colspan="6">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시 용수수요량(첨두계수 반영)</td></tr>
</table>

※1.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 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용수량 산정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별표 5]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times 9.8\times 10p}\times 3600 = 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에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 ⑤: 생략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의안에 해당함

4. 작성자 :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장 홍 건 표

해뜨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상하수도과장
(경유)
제목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평가서 결과 통보

1. 상하수도과-666(2026. 1. 13.)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지 원 과 장

주무관 김지영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가족지원과장 2026. 1. 19. 심은주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2425 (2026. 1. 19.) 접수 상하수도과-1002 (2026. 1. 19.)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가족지원과 (읍내동)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coconut7006@korea.kr / 비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충남서산005			
정 책 명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담당자명	**오세규**	전화번호	**041-660-253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1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상하수도과)	○ 상수도 원인자부담 산정·징수액 현실화 및 규정상 미비 보완 - 부담금 산정기준 세부기준 명확화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상하수도과장 귀하

라. 법제심사 결과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사 결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비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 정
부칙 규정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2007년 표준조례를 토대로한 조례 내용을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 마침	심사일	2026. 8. 4.(제1315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주사 이인수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설 유형별”을 “유형별 부과대상”으로, “산정은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5”를 “산정기준은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정은 별표 5”를 “산정기준은 별표 5”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 기준은 별표 1, 시설유형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2, 용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① 제4조제1항------ ---------- ---------- ---------- ---------- ---------- ---------- ---------- ---------- ---------- ------- 부과대상 기준---- 시설 유형별 ---------- -- 산정기준은 별표 3, 용수량 산정은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5와 ---.	① ---------- ---------- ---------- ---------- ---------- ---------- ---------- ---------- ---------- ---------- -------- 유형별 부과대상 ---------- ---------- ---------- 산정기준은 별표 4---------- ---------- ---.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 ---------- ---------- ---------- -------.	②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2. ---------- ----------	2. ----------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산정은 별표 5------.	---------- 산정 기준은 별표 5--.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별표 3] (개정안)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가)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비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원인자부담금 = 단위 사업비 ×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대규모 개발사업 단위 사업비 = 총자산 ÷ 시설용량
■ 총자산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기타가동설비자산액*
  * 기타가동설비자산 : 수용가가 부담한 급수공사비 누계액
■ 시설용량 = 정수장 용량 + 광역 배분 계획량

○ 나)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금 액
단위 사업비(㎥/일)	1,155천원

○ 다)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 사업비는 실소요 공사비를 적용

○ 라)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① 순자산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타가동설비자산+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고정부채)

○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다. 순자산/시설용량 = 톤당 원인자부담금 = **874천원**

○ ■ **시설용량 = 정수장 용량 + 광역 배분 계획량**

■ [별표 3] (수정안)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①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비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원인자부담금 = 단위 사업비 ×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대규모 개발사업 단위 사업비 = 총자산 ÷ 시설용량
■ 총사업비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기타가동설비자산액*
*기타가동설비자산 : 수용가가 부담한 급수공사비 누계액
■ 시설용량 = 정수장 용량 + 광역 배분 계획량

○ ②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금 액
단위 사업비(㎥/일)	1,155천원

○ ③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 사업비는 실소요 공사비를 적용

○ ④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① 순자산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타가동설비자산+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고정부채)

○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다. 순자산/시설용량 = 톤당 원인자부담금 = **874천원**

○ ■ **시설용량 = 정수장 용량 + 광역 배분 계획량**

(개정안)

②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③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4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①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다. 순자산/시설용량 = 톤당 원인자부담금 = **874천원**

○ ■ **시설용량 = 정수장 용량 + 광역 배분 계획량**

②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4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④ 단, 계량기 구경이 **40mm 이하인 경우 정액제로 부과한다.**

가. 13mm - 285,000원

나. 20mm - 797,000원

다. 25mm - 1,281,000원

라. 32mm - 2,277,000원

마. 40mm - 3,838,000원

(수정안)

②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③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4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①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다. 순자산/시설용량 = 톤당 원인자부담금 = **874천원**

○ ■ **시설용량 = 정수장 용량 + 광역 배분 계획량**

②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4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④ 단, 계량기 구경이 40mm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경별 정액금액으로 부과한다.

가. 13mm - 285,000원

나. 20mm - 797,000원

다. 25mm - 1,281,000원

라. 32mm - 2,277,000원

마. 40mm - 3,838,000원

[별표 5] (개정안)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times9.8\times10p}\times3600 = 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 5] (수정안)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

- Q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times 9.8\times 10p}\times 3600 = 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의사일정 제13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5.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산림공원과 소관)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7.

2. 제안설명 요지

○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위탁기간이 2026. 11.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관리·운영 위탁 개요

○ 시 설 명: 유아숲체험원

-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성연 유아숲체험원 등 2개소

○ 위　　치

- 부춘산 유아숲체험원(서산시 읍내동 산 5-1번지 일원)
- 성연 유아숲체험원(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711번지 일원)

○ 위탁기간 : 2027. 3. ~ 2029. 11. (3년간)

※ 1년 단위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 예 산 액: 120,800천원 (국비 50%, 시비 50%)

○ 사 업 량: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 800회 운영

※ 유아숲지도사 전문인력 4명 상시 배치

○ 시설규모: 각 10,000㎡

○ 시설현황

시 설 명	개소		주요 내용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성연 유아숲체험원	
야외체험학습장	23	16	야외체험학습 시설 등
대피시설	2	1	임시대피소 및 대피소
화장실	1	1	직원화장실 겸 유아화장실
안전 및 편의시설	5	4	종합안내판, 시설안내판, 공간안내판 등

○ 위탁사무 내용

- 서산시 관내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 관내 유아 대상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아숲체험원(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o 소요예산

- 3년간 소요예산: 399,864천원(국비 50%, 시비 50%)

4.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부춘산 및 성연 유아숲체험원의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위탁내용 중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에 시설물 관리까지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위탁사무의 범위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서 3년간 총사업비 및 연도별 예산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위탁사무별 세부 산출근거가 부족하여 시설·환경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와 기존 위탁운영의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인력 4명 배치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용대상이 유아인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체계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의 책임 주체, 안전점검 및 사고 발생 시 조치·보고·책임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위·수탁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 안 가 결』

의 안 번 호	제 37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8. 25.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37 호

제출연월일 : 2026. 8. 25.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서산시 유아 숲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3. 위탁사무의 내용

○ 서산시 관내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 관내 유아 대상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아숲체험원(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유아숲체험원

-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성연 유아숲체험원(총 2개소)

○ 위　　치

- 부춘산 유아숲체험원(서산시 읍내동 산 5-1번지 일원)

- 성연 유아숲체험원(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711번지 일원)

○ 규　　모: 각 10,000m^2

○ 주요시설

시 설 명	개 소		주요 내용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성연 유아숲체험원	
야외체험학습장	23	16	야외체험학습 시설 등
대피시설	2	1	임시대피소 및 대피소
화장실	1	1	직원화장실 겸 유아화장실
안전 및 편의시설	5	4	종합안내판, 시설안내판, 공간안내판 등

5.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2027. 3. ~ 2029. 11. (3년간)

※ 1년 단위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

○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소요예산: 399,864천원(국비 50%, 시비 50%)

-2027년도 소요예산: 126,840천원

-2028년도 소요예산: 133,182천원

-2029년도 소요예산: 139,842천원

※ 전년도 예산 대비 매년 물가상승률(5%) 반영하여 예산 추계

※ 유아숲체험원 2개소 × 개소별 운영인력 2명 = 총 4명 기준

6. 위탁의 적정성 검토

○ 유아숲체험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적인 사고함양과 안정적인 정서(가치관 등) 확립

○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관련 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5.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6.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관리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관리
6.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서산시 유아 숲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7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1. 8.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의사일정 제14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6. 9.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4.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21.

2. 제안설명 요지

○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3. 주요 내용

【일반예비비】

(단위: 천원)

연번	승 인 일	부서명	사 업 명	승 인 액
계			1 건	160,000
1	2025-06-16	축 산 과	고북면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AI발생 처리비	160,00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천원)

연번	승 인 일	부서명	사 업 명	승 인 액
계			8 건	5,047,230
1	2025-07-23	산림공원과	성연면 평리 일원(229-12번지 일원) 땅밀림 피해지 복구	554,000
2	2025-07-31	산림공원과	2025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관내 산림지역 긴급복구	68,000
3	2025-08-01	문화예술과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wake-up 국제청소년센터 지하실 침수 복구	260,000
4	2025-08-13	도 로 과	도로시설사업소 침수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57,230
5	2025-08-19	문화예술과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진입로 등	272,000

연번	승 인 일	부서명	사 업 명	승 인 액
			긴급복구	
6	2025-08-24	일자리경제과	7. 16.~20.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호우피해 지원(재난지원금)	675,000
7	2025-09-16	일자리경제과	7. 16.~20. 집중호우에 따른 소상공인 호우피해 추가 지원	171,000
8	2025-09-26	안전총괄과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	2,990,000

▢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

(단위 : 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결정일	사용내용
계			5,207,230,000	4,750,570,690	0	456,659,310		
소 계 〈일반예비비〉			160,000,000	157,193,990	0	2,806,010		
축 산 과	가축 전염병 예방	사무관리비	140,000,000	137,200,000	0	2,800,000	2025-06-16	AI 살처분·랜더링 용역비
축 산 과	가축 전염병 예방	재료비	20,000,000	19,993,990	0	6,010	2025-06-18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 구입비
소 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47,230,000	4,593,376,700	0	453,853,300		
산림공원과	산 림 복 원 사 업	시설비	539,000,000	439,489,380	0	99,510,620	2025-07-23	성연면 평리 땅밀림 피해지 복구공사 (사면 보강 등)
산림공원과	산 림 복 원 사 업	감리비	15,000,000	8,422,000	0	6,578,000	2025-07-24	성연면 평리 땅밀림 피해지 복구공사 감리비
산림공원과	호우피해 긴급(응급) 복구	사무관리비	68,000,000	67,540,000	0	460,000	2025-07-31	호우피해 산사태 발생지 복구 장비 임차비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60,000,000	255,618,760	0	4,381,240	2025-08-01	wake-up 국제청소년센터 지하실 침수에 따른 전기 및 냉난방시설 긴급복구
도 로 과	도 로 시 설 물 유 지 보 수	사무관리비	8,920,000	8,920,000	0	0	2025-08-13	컨테이너 임대, 도배·장판

(단위 : 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결정일	사용내용
도 로 과	도 로 시 설 물 유 지 보 수	시설비	14,320,000	14,320,000	0	0	2025-08-13	도로시설사업소 전기공사, 판넬공사
도 로 과	도 로 시 설 물 유 지 보 수	자산및물품취득비	33,990,000	33,990,000	0	0	2025-08-13	침수피해 물품구입 (씽크대, 캐비닛 등)
문화예술과	지 방 문 화 유 산 보 수 정 비	시설비	272,000,000	271,728,400	0	271,600	2025-08-19	교량 지대석 보축, 관람로 계단 및 배수로 석축 공사
일자리경제과	소 상 공 인 지 원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675,000,000	675,000,000	0	0	2025-08-24	폭우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일자리경제과	소 상 공 인 지 원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71,000,000	171,000,000	0	0	2025-09-16	폭우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가 접수분 지원
안전총괄과	재해응급복구 지원 (자 체)	사무관리비	1,660,000,000	1,403,852,921	0	256,147,079	2025-09-26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안전총괄과	재해응급복구 지원 (자 체)	시설비	1,330,000,000	1,243,495,239	0	86,504,761	2025-09-26	호우피해 응급복구 공사

4. 검토의견 요지

○ 예비비는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7,073,629천원으로, 이 중 5,207,23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750,57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456,65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5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3개부서에서 총 6건 43억6,8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중 40억 2,069만 5,320원을 실제 집행하였으며,

○ 이번 예비비 지출은 국제청소년센터의 침수시설 긴급복구, 지방문화유산 피해복구, 호우피해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호우피해 응급복구 등 집중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확인됨

○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축산과, 산림공원과, 도로과 등 3개 부서 4건으로 총 839,23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29,87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109,35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주요 지출내역은 고북면 육용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및 처리비 160,000천원, 집중호우에 따른 성연면 평리 일원 땅밀림 피해지 복구 및 관내 산림지역 긴급복구비 622,000천원, 도로시설사업소 침수피해 응급복구비 57,230천원 등임.

○ 상기 사업은 고병원성 AI 발생과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 및 시설 피해 등 사전에 발생 시기와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의 목적과 필요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외적인 재정수단인 만큼,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피해 규모와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액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사일정 제15항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2025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의 건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6. 9.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5.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회계과 소관)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21.

2. 제안설명 요지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의 집행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개선함으로써 공정한 회계 질서 및 건전한 재정 운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 내용

1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회계	세 입	1,155,946,965	1,307,650,017	1,366,148,040	1,372,288,919	1,549,752,087
	세 출	970,941,673	1,074,159,549	1,099,254,748	1,119,100,954	1,304,629,653
	결산상 잉여금	185,005,292	233,490,468	266,893,292	253,187,965	245,122,434
특별회계	세 입	154,006,265	169,671,254	167,581,621	187,138,911	195,471,135
	세 출	112,529,265	107,217,650	112,670,527	131,905,679	129,644,816
	결산상 잉여금	41,477,000	62,453,604	54,911,094	55,233,232	65,826,319
기 금	수 입	127,727,094	141,957,108	101,432,184	124,879,709	146,420,059
	지 출	127,727,094	141,957,108	101,425,254	124,809,280	145,461,448
	결산상 잉여금	-	-	6,930	70,429	958,611
총 계	세입(수입)	1,437,680,324	1,619,278,379	1,635,161,845	1,684,307,539	1,891,643,281
	세출(지출)	1,211,198,032	1,323,334,307	1,313,350,529	1,375,815,913	1,579,735,917
	결산상 잉여금	226,482,292	295,944,072	321,811,316	308,491,626	311,907,364

○ 2025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177,463,16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332,224천원이 증감함.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185,528,699천원(16.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2,260,863천원(1.7%↓) 감소한 것으로 보임.

2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A-B)	현년도 채무상황
합 계	1,744,787,092	1,745,223,222	1,434,274,469	310,948,753	-
일 반 회 계	1,547,496,802	1,549,752,087	1,304,629,653	245,122,434	-
특 별 회 계	197,290,290	195,471,135	129,644,816	65,826,319	-
공 기 업	122,592,157	122,875,237	79,011,013	43,864,224	-
기 타	74,698,133	72,595,898	50,633,803	21,962,095	-

회 계 별	다음연도 이월액(D)				보조금 집행잔액 (E)	지정재원 잉여금 (F)	순세계 잉여금 (G=C-D-E-F)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227,703,293	59,283,477	9,516,309	158,903,507	13,579,293	1,836,000	67,830,167
	(1,240,000)	-	-	(1,240,000)			
일 반 회 계	188,760,080	49,387,215	7,168,998	132,203,867	11,407,654	1,836,000	43,118,700
	(1,240,000)	-	-	(1,240,000)			
특 별 회 계	38,943,213	9,896,262	2,347,311	26,699,640	2,171,639	-	24,711,467
	-	-	-	-			
공 기 업	22,408,909	4,597,340	2,030,811	15,780,758	1,836,747	-	19,618,568
	-	-	-	-			
기 타	16,534,304	5,298,922	316,500	10,918,882	334,892	-	5,092,899
	-	-	-	-			

※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함.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744,787,092천원으로,

- 세입 결산액은 1,745,223,222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82.2%인 1,434,274,469천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310,948,753천원이며

❍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27,703,293천원(명시이월 59,283,477천원, 사고이월 9,516,309천원 및 계속비이월 158,903,507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납예정액) 13,579,293천원 및 지정재원잉여금 1,836,000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830,167천원이고

❍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였으며,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기하였으며

- 자금없는 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1,240,000천원이 발생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과 자금없는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바 모두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67,830,167천원으로 판단됨.

3 세입 결산

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합 계		1,547,496,802	1,572,720,774	1,549,752,087	2,841,482	20,127,205
지방세	소 계	191,100,000	208,949,096	197,367,692	1,413,059	10,168,345
	보 통 세	187,100,000	198,119,071	193,385,732	318,511	4,414,828
	지난년도수입	4,000,000	10,830,025	3,981,960	1,094,548	5,753,517
세외수입	소 계	37,932,582	52,260,976	40,895,007	1,428,423	9,937,546
	경상적세외수입	17,643,150	18,674,985	18,545,965	-	129,020
	임시적세외수입	17,316,548	19,147,477	18,813,210	-	334,267
	지방행정재제·부과금	1,272,884	2,648,258	1,622,113	-	1,026,145
	지난년도수입	1,700,000	11,790,256	1,913,719	1,428,423	8,448,114
지방교부세		435,944,000	435,124,903	435,124,903	-	-
조정교부금등		57,495,500	56,321,324	56,321,324	-	-
보조금		555,956,437	552,876,348	552,876,348	-	-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69,068,283	267,188,127	267,166,813	-	21,314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수납액의 12.7%인 197,367,692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수납액의 2.6%인 40,895,007천원 수납되었으며,

○ 지방교부세는 28.1%인 435,124,903천원, 조정교부금등은 3.6%인 56,321,324천원, 보조금은 35.7%인 552,876,348천원이 수납된 것으로 판단됨.

나.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합 계	197,290,290	197,649,789	195,471,135	-	2,178,654
공기업특별회계	122,592,157	123,534,540	122,875,237	-	659,303
상 수 도	40,130,244	39,899,456	39,444,698	-	454,758
하 수 도	82,461,913	83,635,084	83,430,539	-	204,545
기타특별회계	74,698,133	74,115,249	72,595,898	-	1,519,351
공유재산관리	2,795,927	2,832,294	2,815,574	-	16,7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392,712	3,399,991	3,399,991	-	-
농공단지조성관리	119,979	183,229	183,229	-	-
산업단지조성	8,543,458	8,872,323	8,835,676	-	36,647
의 료 급 여	1,864,900	1,865,896	1,865,896	-	-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	485,489	484,619	484,619	-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654,707	660,041	660,041	-	-
공유임야관리	8,108,449	6,823,721	6,823,721	-	-
균 형 발 전	519,587	546,049	546,049	-	-
대 지 보 상	0	151	151	-	-
도시개발사업	1,885,202	1,888,818	1,888,818	-	-
서산수석지구도시개발사업	9,573,958	9,589,491	9,589,491	-	-
주차장운영	10,031,477	11,468,223	10,002,239	-	1,465,984
주 택 사 업	1,190,994	1,193,370	1,193,370	-	-
학교급식지원센터	25,531,294	24,307,033	24,307,033	-	-
결 산 확 인 액	197,290,290	197,649,789	195,471,135	-	2,178,654
차 액	-	-	-	-	-

○ 수납액 195,471,135천원은 예산현액의 99.08%이자 징수결정액의 98.9%로서 정리보류액은 0원이고, 2,178,654천원이 미수납 되었음

○ 이는 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 사용료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과태료 등의 미수납액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④ 세출 결산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 집행액	2025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금액	비율
합 계	1,119,100,954	1,547,496,802	1,304,629,653	84.3%	185,528,699	16.6%
일반공공행정	75,515,154	53,798,920	49,608,468	92.2%	△25,906,686	-34.3%
공공질서 및 안전	7,186,643	37,643,305	30,790,814	81.8%	23,604,171	328.4%
교 육	6,458,226	12,061,222	9,725,387	80.6%	3,267,161	50.6%
문화 및 관광	60,615,805	112,465,934	63,284,550	56.3%	2,668,745	4.4%
환 경	97,001,238	134,960,189	124,250,184	92.1%	27,248,946	28.1%
사회복지	345,127,824	387,070,473	368,292,084	95.1%	23,164,260	6.7%
보 건	23,501,148	21,804,359	20,553,676	94.3%	△2,947,472	-12.5%
농림해양수산	188,606,980	232,994,514	199,126,839	85.5%	10,519,859	5.6%
산업중소기업	29,593,060	126,258,852	113,802,832	90.1%	84,209,772	284.6%
교통 및 물류	53,534,209	86,718,254	64,931,422	74.9%	11,397,213	21.3%
국토 및 지역개발	101,035,753	200,992,322	124,582,846	62%	23,547,093	23.3%
기 타	130,924,914	140,728,458	135,680,551	96.4%	4,755,637	3.6%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집행액은 사회복지 368,292,084천원, 농림해양수산 199,126,839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증가 폭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

야(328.4%), 산업,중소기업분야(284.6%)이다. 한편, 전년대비 감소 폭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34.3%), 보건(-12.5%)이며

○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47,496,802천원이고 집행액 1,304,629,653천원으로 집행율 84.3% 임.

나.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합 계	197,290,290	129,644,816	38,943,213	28,702,261
공기업특별회계	122,592,157	79,011,013	22,408,909	21,172,235
상수도	40,130,244	25,834,328	3,611,736	10,684,180
하수도	82,461,913	53,176,685	18,797,173	10,488,055
기타특별회계	74,698,133	50,633,803	16,534,304	7,530,026
공유재산관리	2,795,927	-	2,656,400	139,5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392,712	3,083,135	-	309,577
농공단지조성관리	119,979	97,955	-	22,024
산업단지조성	8,543,458	5,750,957	1,937,477	855,024
의료급여	1,864,900	1,821,907	-	42,993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	485,489	17,116	-	468,373
폐기물처리시설사업	654,707	649,000	-	5,707
공유임야관리	8,108,449	2,848,013	3,934,924	1,325,512
균형발전	519,587	61,647	-	457,940
대지보상	-	-	-	-
도시개발사업	1,885,202	1,522,539	301,387	61,276
서산수석지구도시개발사업	9,573,958	3,569,842	6,004,116	-
주차장운영	10,031,477	9,467,586	-	563,891
주택사업	1,190,994	159,960	-	1,031,034
학교급식지원센터	25,531,294	21,584,146	1,700,000	2,247,148
결산확인액	197,290,290	129,644,816	38,943,213	28,702,261
차액	-	-	-	-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7,290,290천원이고, 지출액은 129,644,816천원 임.

⑤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결산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391	227,703,293	197	59,283,477	53	9,516,309	141	158,903,507
	(1)	(1,240,000)	-	-	-	-	(1)	(1,240,000)
일반회계	341	188,760,080	183	49,387,215	48	7,168,998	110	132,203,867
	(1)	(1,240,000)	-	-	-	-	(1)	(1,240,000)
특별회계	50	38,943,213	14	9,896,262	5	2,347,311	31	26,699,640
	-	-	-	-	-	-	-	-
공기업	32	22,408,909	6	4,597,340	3	2,030,811	23	15,780,758
	-	-	-	-	-	-	-	-
기 타	18	16,534,304	8	5,298,922	2	316,500	8	10,918,882
	-	-	-	-	-	-	-	-

※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건수는 사업이 아닌 이월 기준이며, 1개의 사업에 2개 이상의 이월도 가능함.

○ 2025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227,703,293천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13.1%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이월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6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120,404,188	△11,014,600	26,015,871	37,030,471	109,389,5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711	11,004,094	11,004,094	-	11,016,805
재난관리기금	11,048,950	△1,683,448	2,843,255	4,526,703	9,365,502
고향사랑기금	396,129	437,823	437,823	-	833,952
청사건립기금	94,917,585	△22,178,551	5,240,043	27,418,594	72,739,034
중소기업육성기금	400,000	△400,000	402	400,402	-
주민지원기금	23,089	810	320,810	320,000	23,899
자활기금	934,591	96,379	187,307	90,928	1,030,970
노인복지기금	2,236,148	181,339	181,339	-	2,417,487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31,048	437,511	3,306,337	2,868,826	568,559
양성평등기금	767,622	10,740	22,740	12,000	778,362
옥외광고발전기금	165,007	△46,450	11,696	58,146	118,557
농림어업발전기금	9,292,271	1,141,736	2,443,864	1,302,128	10,434,007
식품진흥기금	79,032	△16,582	16,162	32,744	62,450

○ 2025회계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120,404,188천원에 당해연도 26,015,871천원이 조성되고 37,030,471천원이 사용되어 109,389,588천원임.

⑦ 재무제표 결산

가.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2025	전년대비 증 감 액
자 산	**5,228,490**	**5,455,617**	**227,127**
Ⅰ. 유 동 자 산	498,254	494,701	△3,553
Ⅱ. 투 자 자 산	31,154	9,055	△22,099
Ⅲ. 일 반 유 형 자 산	322,177	371,185	49,008
Ⅳ. 주 민 편 의 시 설	670,192	711,652	41,460
Ⅴ. 사 회 기 반 시 설	3,698,025	3,861,334	163,309
Ⅵ. 기 타 비 유 동 자 산	8,688	7,690	△998
부 채	**140,964**	**137,749**	**△3,215**
Ⅰ. 유 동 부 채	88,567	89,259	692
Ⅱ. 장 기 차 입 부 채	-	-	-
Ⅲ. 기 타 비 유 동 부 채	52,397	48,490	△3,907
순 자 산	**5,087,526**	**5,317,868**	**230,342**
Ⅰ. 고 정 순 자 산	4,653,692	4,910,280	256,588
Ⅱ. 특 정 순 자 산	129,335	105,518	△23,817
Ⅲ. 일 반 순 자 산	304,499	302,070	△2,429

○ 2025회계연도말 서산시 자산은 5,455,617백만원으로 전년도 5,228,490백만원보다 227,127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 또한, 2025회계년도말 부채는 137,749백만원으로 전년도 140,964백만원보다 △3,215백만원 감소하였고, 순자산은 전년대비 230,342백만원 증가한 5,317,868백만원 임.

나.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2025	전년대비 증 감 액
Ⅰ. 사업순원가 (가-나)	398,235	455,210	56,975
가. 사업총원가	883,028	1,057,315	174,287
나. 사업 수익	484,793	602,105	117,312
Ⅱ. 관리운영비	140,159	144,057	3,898
Ⅲ. 비배분비용	34,471	37,216	2,745
Ⅳ. 비배분수익	27,806	25,121	△2,685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545,059	611,362	66,303
Ⅵ. 일반수익	643,617	716,984	73,367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98,558	△105,622	△7,064

○ 2025회계연도 서산시의 사업 순원가는 455,210백만원으로 이는 관리운영비 144,057백만원과 비배분비용 37,216백만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25,121백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611,362백만원 임.

○ 또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105,6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64백만원 감소 하였음.

⑧ 성과보고서

가.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달성수(B)	미달성수	달성률 (B/A)
합 계	13	120	298	255	43	86%
기획예산담당관실	1	6	13	12	1	92%
미래전략담당관실	1	3	6	6	0	100%
홍보담당관실	1	1	3	3	0	100%
감사담당관실	1	3	6	6	0	100%
자치행정국	1	15	38	34	4	89%
경제산업국	1	16	29	24	5	83%
복지문화국	1	16	68	49	19	72%
환경녹지국	1	12	22	18	4	82%
건설교통국	1	18	42	39	3	93%
의회사무국	1	1	2	0	2	0%
농업기술센터	1	17	35	32	3	91%
보건소	1	6	19	19	0	100%
사업소	1	6	15	13	2	87%

○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9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 성과지표를 100% 달성한 부서는 4개 부서이며, 미달성 부서는 9개 부서로 나타남.

⑨ 채권 및 채무

가.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0,198,065	1,449,603	169,243	11,478,425
일반회계	5,484,293	2,000	-	5,486,293
특별회계	916,589	170,717	169,243	918,063
의료급여특별회계	152,668	5,135	3,661	154,143
주택사업특별회계	763,920	165,582	165,582	763,920
기금	3,797,184	1,276,886	-	5,074,070
자활기금	191,990	20,000	-	211,990
양성평등기금	107,525	-	-	107,525
농림어업발전기금	3,497,669	1,256,886	-	4,754,555

○ 채권은 전년도말 10,198,065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449,603천원이 발생하였고 169,243천원이 상환·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11,478,425천원 임.

나. 채 무

○ 전년도말 0원에서 당해연도에 0원으로 확인되었음.

10 공유재산, 물품

가.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2,778,817,266	231,222,170	54,089,849	2,955,949,587
행정재산	소 계	2,614,115,574	223,272,247	53,791,946	2,783,595,875
	공용재산	476,263,392	159,214,861	5,676,960	629,801,293
	공공용재산	2,123,305,488	63,596,875	48,114,986	2,138,787,377
	기업용재산	38,671	-	-	38,671
	보존용재산	14,508,023	460,511	-	14,968,534
일반재산		20,070,507	1,650,241	297,903	21,422,845
건설중인재산		144,631,185	6,299,682	-	150,930,867

○ 공유재산의 결산액은 전년도 2,778,817,266천원보다 177,132,321천원이 증가한 2,955,949,587천원 임.

나.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1,575	85	13	1,647
금 액	17,561,853	1,268,252	156,947	18,673,158

○ 물품은 전년도 17,561,853천원보다 1,111,305천원이 증가한 18,673,158천원임.

4. 검토의견 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실시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등의 결산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됨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7,452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4,342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3,109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지정재정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8억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이 2,27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3.1%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지연등을 최소화하여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기금의 경우에도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조성 및 사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기금별 운용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금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성과보고서의 경우에도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점검하여 성과관리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실질적으로 연계될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및 집행 되었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산시 의회로부터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6년 4월 17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

❍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서산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서산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음.

❍ 결산검사 실시결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예비비의 지출결정 및 집행관리 내실화,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미흡, 정확한 세수추계 및 초과세입금 추가경정 예산 반영,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등 5

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지방자치법」및「지방회계법」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음.

❍ 건의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대책 강구, 서산야구장 조성 사업 신속 추진, 산업단지 조기 준공으로 인구증가 및 세수증대, 재가암환자 영양보충식 연간 지속 추진 등 4건이 있었으며,

❍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지속가능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 유치, 체납차량 맞춤형 영치 활동을 통한 지방세 징수,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국보지정, 서산시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 준공,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로 식량산업 종합평가 전국 1위 달성 등 5건이 있었음.

❍ 서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지방자치법」,「지방회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운영 및 집행되었다고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사일정 제16항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4.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21.

2. 제안설명 요지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서산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1,489,590,093	100.00	1,314,495,975	100.00	175,094,118	13.32
일 반 회 계	1,328,011,430	89.15	1,178,072,907	89.62	149,938,523	12.73
특 별 회 계	161,578,663	10.84	136,423,068	10.37	25,155,595	18.44
공 기 업	109,769,937	7.36	91,056,323	6.92	18,713,614	20.55
기 타	51,808,726	3.47	45,366,745	3.45	6,441,981	14.2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896억원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3,145억원 대비 1,751억원 증가(13.3%)한 규모임.

○ 이중 일반회계는 약 1조 3,28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9.1%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499억원 12.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1,615억원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51억원 18.4%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기정 예산액	%	증 감 액
총 계	1,489,590,093	100.00	1,314,495,975	100.00	175,094,118
지 방 세	188,900,000	12.68	188,900,000	14.37	0
세 외 수 입	98,895,890	6.64	89,822,679	6.83	9,073,211
경상적	78,579,132	5.28	73,116,143	5.56	5,462,989
임시적	16,358,822	1.10	12,936,260	0.98	3,422,56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43,636	0.16	2,255,976	0.17	187,660
지난연도수입	1,514,300	0.10	1,514,300	0.12	0
지방교부세	470,612,898	31.59	423,104,978	32.19	47,507,920
조정교부금	43,626,000	2.93	41,900,000	3.19	1,726,000
보 조 금	573,681,659	38.51	490,808,256	37.34	82,873,403
국고보조금	451,061,328	30.28	379,639,266	28.88	71,422,062
시도비보조금	122,620,331	8.23	111,168,990	8.46	11,451,34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13,873,646	7.64	79,960,062	6.08	33,913,584
보전수입등	77,967,797	5.23	43,958,256	3.34	34,009,541
내부거래	35,905,849	2.41	36,001,806	2.74	△95,957
지 방 채	0	0.00	0	0.00	0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1조 4,896억원로, 기정 예산액(1조 3,145억원) 대비 1,751억원 13.3%가 증액되었음.

○ 세입 구조 중 비중이 높은 순으로는 보조금 5,736억원(38.5%), 지방교부세 4,706억원(31.5%), 지방세 1,889억원(12.6%)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금(보조금, 지방교부세 합계 7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주요 증가된 항목은 보조금 828억원(16.8%) 증가, 지방교부세 475억원(11.2%), 보전수입등 340억원(77.3%), 세외수입 90억원(10.1%)임.

○ 주요 감소 항목으로는 내부거래 0.9억원(0.2%)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총괄(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1,489,590,093	1,314,495,975	175,094,118	13.32
일반공공행정	65,540,694	62,467,943	3,072,751	4.92
공공질서및안전	7,305,098	6,102,970	1,202,128	19.70
교 육	8,250,159	8,227,155	23,004	0.28
문화및관광	64,526,666	57,196,103	7,330,563	12.82
환 경	211,872,347	176,918,188	34,954,159	19.76
사회복지	392,267,052	386,204,074	6,062,978	1.57
보 건	22,976,882	22,194,849	782,033	3.52
농림해양수산	240,588,071	220,943,723	19,644,348	8.8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6,784,314	32,709,243	34,075,071	104.18
교통및물류	83,321,124	71,604,740	11,716,384	16.36
국토및지역개발	170,180,722	114,969,531	55,211,191	48.02
예 비 비	6,500,000	6,902,700	△402,700	△5.83
기 타	149,476,964	148,054,756	1,422,208	0.96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40억 원(104.1%) 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552억 원(48.0%), 환경 349억 원(19.7%),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 원(19%), 교통 및 물류 117억 원(16.3%), 문화 및 관광 73억 원(12.8%) 순으로 증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예비비 4억 원의(△5.8%)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부서별 세출 총괄(조직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률	%
총 계	1,489,590,093	100.00	1,314,495,975	100.00	175,094,118	13.32
기획예산담당관	40,536,653	2.72	38,792,527	2.95	1,744,126	4.50
미래전략담당관	7,159,912	0.48	5,793,504	0.44	1,366,408	23.59
홍보담당관	2,240,357	0.15	2,196,207	0.17	44,150	2.01
감사담당관	239,915	0.02	236,915	0.02	3,000	1.27
자치행정과	46,922,160	3.15	46,746,720	3.56	175,440	0.38
안전총괄과	7,404,050	0.50	6,201,922	0.47	1,202,128	19.38
회 계 과	100,652,717	6.76	100,013,962	7.61	638,755	0.64
평생교육과	8,640,817	0.58	8,571,755	0.65	69,062	0.81
스마트정보과	10,516,483	0.71	10,411,661	0.79	104,822	1.01
민원봉사과	4,990,653	0.34	4,590,210	0.35	400,443	8.72
일자리경제과	57,409,919	3.85	25,301,030	1.92	32,108,889	126.91
투자유치과	25,078,990	1.68	21,361,372	1.63	3,717,618	17.40
세 정 과	843,709	0.06	843,709	0.06	0	0.00
징 수 과	708,715	0.05	620,320	0.05	88,395	14.25
토지관리과	3,357,254	0.23	3,174,917	0.24	182,337	5.74
사회복지과	50,949,096	3.42	50,718,496	3.86	230,600	0.45
경로장애인과	216,452,491	14.53	213,671,979	16.26	2,780,512	1.30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률	%
가족지원과	112,939,031	7.58	111,563,490	8.49	1,375,541	1.23
문화예술과	26,272,187	1.76	24,094,513	1.83	2,177,674	9.04
관광과	7,732,131	0.52	7,004,662	0.53	727,469	10.39
체육진흥과	25,259,030	1.70	21,201,206	1.61	4,057,824	19.14
기후환경대기과	47,717,413	3.20	31,935,568	2.43	15,781,845	49.42
자원순환과	38,199,798	2.56	37,787,844	2.87	411,954	1.09
해양수산과	23,390,354	1.57	22,401,738	1.70	988,616	4.41
산림공원과	32,783,674	2.20	31,330,843	2.38	1,452,831	4.64
상하수도과	125,025,068	8.39	106,300,848	8.09	18,724,220	17.61
건설과	91,815,817	6.16	39,388,352	3.00	52,427,465	133.10
도시과	25,898,263	1.74	25,232,710	1.92	665,553	2.64
도로과	36,666,065	2.46	30,891,379	2.35	5,774,686	18.69
교통과	42,818,993	2.87	35,890,130	2.73	6,928,863	19.31
주택과	19,032,122	1.28	16,947,267	1.29	2,084,855	12.30
원스톱허가과	393,300	0.03	393,300	0.03	0	0.00
농업정책과	120,858,833	8.11	114,134,584	8.68	6,724,249	5.89
농식품유통과	34,273,535	2.30	29,572,054	2.25	4,701,481	15.90
농업지원과	4,206,505	0.28	4,043,426	0.31	163,079	4.03
축산과	11,807,159	0.79	9,962,122	0.76	1,845,037	18.52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률	%
기술보급과	5,335,098	0.36	5,254,756	0.40	80,342	1.53
보건정책과	6,665,550	0.45	6,326,499	0.48	339,051	5.36
정신보건위생과	3,334,189	0.22	3,107,364	0.24	226,825	7.30
건강증진과	6,119,050	0.41	5,907,529	0.45	211,521	3.58
감염병관리과	6,345,321	0.43	6,310,315	0.48	35,006	0.55
의회사무국	2,358,631	0.16	2,340,631	0.18	18,000	0.77
종합사회복지관	2,905,763	0.20	2,882,351	0.22	23,412	0.81
문화시설사업소	3,762,915	0.25	3,417,664	0.26	345,251	10.10
서산버드랜드사업소	3,661,825	0.25	3,620,887	0.28	40,938	1.13
시립도서관	2,768,300	0.19	2,803,843	0.21	△35,543	△1.27
읍면동사무소	35,140,282	2.36	33,200,894	2.53	1,939,388	5.84

■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총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기 정 액	%	비교증감	%
총 계	1,489,590,093	100.00	1,314,495,975	100.00	175,094,118	13.32
100 인 건 비	132,594,746	8.90	130,303,990	9.91	2,290,756	1.76
200 물 건 비	121,077,410	8.13	113,818,636	8.66	7,258,774	6.38
201 일 반 운 영 비	69,638,142	4.67	67,673,548	5.15	1,964,594	2.90
202 여 비	3,327,886	0.22	3,318,822	0.25	9,064	0.27
203 업 무 추 진 비	1,028,520	0.07	1,028,520	0.08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821,220	0.06	808,740	0.06	12,480	1.54
205 의 회 비	1,062,223	0.07	1,062,223	0.08	0	0.00
206 재 료 비	41,593,168	2.79	37,221,378	2.83	4,371,790	11.75
207 연 구 개 발 비	3,606,251	0.24	2,705,405	0.21	900,846	33.30
300 경 상 이 전	714,308,470	47.95	667,780,501	50.80	46,527,969	6.97
301 일 반 보 전 금	349,330,878	23.45	317,094,122	24.12	32,236,756	10.17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403,670	0.03	320,000	0.02	83,670	26.15
303 포 상 금	669,120	0.04	632,920	0.05	36,200	5.72
304 연금부담금등	28,334,914	1.90	28,342,979	2.16	△8,065	△0.03
305 배 상 금 등	209,909	0.01	171,409	0.01	38,500	22.46
306 출 연 금	11,165,956	0.75	9,811,039	0.75	1,354,917	13.81
307 민 간 이 전	199,440,516	13.39	191,866,789	14.60	7,573,727	3.95
308 자치단체등이전	99,111,995	6.65	96,301,695	7.33	2,810,300	2.92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	기 정 액	%	비교증감	%
309 전 출 금	25,640,712	1.72	23,238,748	1.77	2,401,964	10.34
310 국 외 이 전	800	0.00	800	0.00	0	0.00
400 자 본 지 출	449,615,536	30.18	353,066,783	26.86	96,548,753	27.35
401 시설비및부대비	329,244,736	22.10	250,078,985	19.02	79,165,751	31.66
402 민간자본이전	73,956,246	4.96	63,151,241	4.80	10,805,005	17.11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8,563,920	2.59	32,989,383	2.51	5,574,537	16.90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51,580	0.02	295,360	0.02	56,220	19.03
405 자 산 취 득 비	6,994,054	0.47	6,051,814	0.46	942,240	15.57
406 기타자본이전	505,000	0.03	500,000	0.04	5,000	1.00
500 융 자 및 출 자	514,000	0.03	514,000	0.04	0	0.00
502 출 자 금	514,000	0.03	514,000	0.04	0	0.00
700 내 부 거 래	39,189,645	2.63	39,285,602	2.99	△95,957	△0.24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35,521,645	2.38	35,617,602	2.71	△95,957	△0.27
702 기 금 전 출 금	3,668,000	0.25	3,668,000	0.28	0	0.00
800 예 비 비 및 기 타	32,290,286	2.17	9,726,463	0.74	22,563,823	231.98
801 예 비 비	22,632,725	1.52	9,688,563	0.74	12,944,162	133.60
802 반 환 금 기 타	9,657,561	0.65	37,900	0.00	9,619,661	25381.69

4. 검토의견 요지

○ 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재정수요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4,89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51억원(13.3%) 증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역시 7,072억원으로 1,248억원(21.4%) 증가하는 등 제1회 추경에 비해 비교적 큰 폭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중반 이후 편성되는 추경인 만큼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충분한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이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아닌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추경에 편성할 경우 연말 이월액 및 불용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관련 사전절차 대상인지 여부와 해당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이 필요함.

○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 신규 및 증액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사전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향후 재정부담 및 이월·불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예산의 주요 문제점

『없 음』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가. 총 요구액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합 계	175,094,118	175,094,118
일 반 회 계	149,938,523	149,938,523
특 별 회 계	25,155,595	25,155,595

나. 삭감액 : **343,170천원**

○ 일반회계 : **343,170천원** ※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

다. 총 승인액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합 계	175,094,118	175,094,118
일 반 회 계	149,938,523	149,938,523
특 별 회 계	25,155,595	25,155,595

라. 증·감액 조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 · 감액 조서

■ 일반회계(세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안 페이지	내 용	추경요구액	위원회 삭감액	조정 예산액
합 계			506,680	△343,170	163,510
기획예산담당관	271	시정 비전 현판 교체	12,000	△12,000	0
기획예산담당관	271	서산시 기본사회 정책 발굴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0	△50,000	0
미래전략담당관	517	기항 크루즈 지원 인부임 - 교통유도 및 주차관리원 - 안전 관리 요원	13,210	△6,605	6,605
미래전략담당관	517	기항크루즈 지원 인부 보험료	371	△186	185
미래전략담당관	518	기항 크루즈 지원	1,440	△720	720
미래전략담당관	518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프라 시설	20,000	△10,000	10,000
미래전략담당관	518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 지원	80,000	△40,000	40,000
미래전략담당관	518	서산 모항(기항) 크루즈선 활성화 지원금(시비추가)	82,500	△16,500	66,000
관광과	547	방송프로그램 제작	30,000	△30,000	0
기후환경대기과	559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 및 운영(시설관리공단)	72,159	△32,159	40,000
기후환경대기과	561	수소충전소 구축사업(확충) 토지 매입 계약	145,000	△145,000	0
					0
					0
					0

의사일정 제17항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4.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21.

2. 제안설명 요지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서산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5년	비교증감	증감율
12개	97,450,601	109,389,581	△11,938,980	△10.9%

■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단위: 천원, %)

기 금 별 (소관부서)	2025년도말 조성액(A)	2026년도 기금운용		2026년도 조성액 (D=A+B-C)	증 감 (E=D-A)	
		수입(B)	지출(C)			증감율
합 계	109,389,581	8,373,250	20,312,230	97,450,601	△11,938,980	△10.9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16,805	280	0	11,017,085	280	0.00
재난관리기금	9,365,502	2,221,210	904,430	10,682,282	1,316,780	14.06
청사건립기금	72,739,033	2,170,451	15,643,500	59,265,984	△13,473,049	△18.52
고향사랑기금	833,951	270,540	359,000	745,491	△88,460	△10.61
자활기금	1,030,970	22,400	194,100	859,270	△171,700	△16.65
노인복지기금	2,417,487	100,430	0	2,517,917	100,430	4.15
희망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568,559	1,505,000	1,200,000	873,559	305,000	53.64
양성평등기금	778,362	24,000	12,000	790,362	12,000	1.54
주민지원기금	23,899	402,139	400,000	26,038	26,038	8.95
옥외광고발전기금	118,557	91,350	0	209,907	91,350	77.05
농림어업발전기금	10,434,006	1,558,000	1,561,800	10,430,206	△3,800	△0.04
식품진흥기금	62,450	7,450	37,400	32,500	△29,950	△47.96

4. 검토의견 요지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 2026년 서산시 기금은 총 12개 계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 조성 규모는 974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093억 원) 대비 119억 원(△10.9%) 감소한 규모임.

○ 이러한 감소는 신청사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에 따라 청사관리기금의 지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임.

5. 예산의 주요 문제점

『없 음』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원안가결』

의사일정 제18항

의 안 번 호	제 56 호
의결(보고) 년 월 일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결 과 보 고 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제 56 호

2026. 9. 16.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감사목적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6. 9. 8.(화) ~ 9. 16(수)<9일간>

4. 감사장소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5. 감사반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 보조 직원
이 정 수	이 국 찬	김애란, 이경화, 이 만, 조동식	신 현 식	주무관 김 소 현 속기사 윤 희 도

6. 감사실시 대상기관

❍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의한 당해 자치단체

⇨ 시 본청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 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직속기관, 사업소

7. 일정별 감사부서 현황 및 감사방법

일 정 별	대 상 부 서	감 사 방 법	비 고
2026. 9. 8.(화) 10:00~	홍보담당관	○ 회의식 감사 ○ 행정사무감사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 필요시 현지확인 병행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강 평 ○감사종료
	감사담당관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2026. 9. 9.(수) 10:00~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스마트정보과		
2026. 9. 10.(목) 10:00~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2026. 9. 11.(금) 10:00~	경로장애인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2026. 9. 12.(토) ~ 9. 13.(일)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2026. 9. 14.(월) 10:00~	일자리경제과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026. 9. 15.(화) 10:00~	민원봉사과		
	감염병관리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2026. 9. 16.(수) 10:00~	감사결과 강평		

8.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총 평

<2026년도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들이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되었음.

○ 이번 감사를 통해 서산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고 열정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음.

○ 감사를 통해 서산시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시책의 추진 과정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앞으로 행정 개선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판단됨.

<감사 중 느낀 점은>

○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대부분의 부서가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에 충실하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

○ 특히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가족지원과는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모범적인 감사를 보여주었음.

○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감사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 감사 준비에 있어 수감 부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

<감사를 마무리하며>

○ 이번 감사는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음.

○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부분은 향후 시정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로 삼고, 잘된 사례는 적극 확산하여 행정 전반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감사 지적사항과 제안된 개선 방향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람.

○ 서산시의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길 바라며, 의회 또한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음.

나. 지적사항 및 보완·개선사항

[기획예산담당관]

1. 서산시 인구정책 현황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6년 답변서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및 집행액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자료가 변경된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안내하여 위원들이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정책은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기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 또한 7,453만 4천 원을 투입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차 중간보고회 미비로 과업기간이 연장되어 12월경 완료될 예정이며, 그 결과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임. 용역사와 수시로 접촉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 인구정책 사업은 2023년 65개에서 2026년 84개로 29.2% 증가하고 예산도 757억 원에서 820억 원으로 늘었으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인구는 2020년 대비 2025년 5월 기준으로 크게 줄어 전체 인구의 22.4% 수준임. 당진시는 인구정책 분류에 청년정착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고 2024년 순유입 인구 7,514명의 전입 사유 중 주택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서산시도 임신·출산·육아 중심의 6개 분야에 더하여 청년정착 분야를 인구정책 항목에 추가하여 설계해 주기 바람.
- 임신·출산 관련 사업이 13개 부서에 걸쳐 있고 사업 수가 2023년 65개에서 2026년 84개로 19개 증가하였으나,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늘리는 방식이 인구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의문이며 일부는 선심성으로 비칠 우려가 있음. 성과를 분석하여 통폐합할 사업은 통폐합하고,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 결과와 현재 추진 중인 84개 사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 정리해 주기 바람. 아울러 7,453만 4천 원의 용역이 중간보고 단계에서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과업관리를 철저

히 해 주기 바람.

- 84개 사업에 8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사업 시행 여부만 확인할 뿐 청년 유출 감소, 전입자 정착 여부 등 실제 효과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존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람.
- 또한 제2회 추경에 별도로 편성한 기본사회 정책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천만 원은 현재 추진 중인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과 일자리·주거·교육·돌봄·정주여건 등에서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됨. 인구정책 기본계획 최종보고 이후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 뒤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출산지원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계속 추진해 주기 바라며,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내용이 미흡했던 만큼 담당관실에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2.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191건 중 선정은 3건에 그쳤으며, 위원회에서 선정된 8건 중 국·도비 보조사업 중복, 실과 기존 계획과 유사, 1회 추경 기반영 등을 이유로 5건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됨. 주민 입장에서는 제안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중요한 만큼 탈락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다음 제안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또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휠체어 비상벨 설치 1천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었고 고북면 국화 황토공원 사업은 5천만 원 중 1,392만 원만 집행되어 약 72.2%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사업 집행은 실과에서 담당하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주민참여 만족도와 사업 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선정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 방식을 실과에 제시해 주기 바람.

- 아울러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명이 남성 16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제도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음 위원 모집 시 여성·청년 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모집 홍보와 추천 방식을 보완해 주기 바람.

3. 운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현황 및 진행 현황

- 제출된 자료에 절차 진행사항만 기재되어 있어 사업의 변경 과정과 재원 부담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움. 대규모 시설사업인 만큼 준공 이후 시설 유지보수비와 관리비 부족분까지 감안한 생애주기 계획을 포함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단순 경유형이 아닌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 2026년 9월 운산면 한우목장 단지 내에서 가축질병 관련 항체가 발견되어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목장길 출입이 통제된 사례가 있었음.
  동일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관광휴양단지 운영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용역 과정에 반영해 주기 바람.

4. TIA 영어캠프

- 학교별 참가인원 현황에서 특정 학교에 인원이 편중되어 선발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서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선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 바람.
- 또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전 레벨테스트 없이 동일한 수업이 2주간 진행되었고 만족도 조사도 흥미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사전·사후 평가 등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 및 주최 측과 협의하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대기자를 추가 선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바람.
- 아울러 서산교육지원청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참가학생을 모집하였다고 하나 사업 자체를 알지 못한 학교와 학부모가 있는 만큼, 관내 초등학교 전체에 고르게 안내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5. 서산시 예산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

- 10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자료와 계속비 조서, 전년도 제출자료 간에 사업이 서로 누락되거나 불일치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대형 사업 전체의 중장기 재정수요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도서관 193억 원, 예술의전당 1,415억 원, 문학관 140억 원, 미술관 191억 원 등 후속 대형 사업이 계속 예정되어 있고 시청사와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만으로도 3,400억 원 규모가 2027년부터 2028년 사이에 집중되며 2028년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임.
- 연도별 재정소요와 시비 부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각 부서가 공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형 사업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관리하고, 건립비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운영비까지 포함한 재정 검토를 병행해 주기 바람.

6. 서산시 도서관 신규 추진 현황

- 중앙도서관 건립 취소 이후 추진되는 도서관 사업이 시립도서관이 아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며, 19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100만 원을 별도 예산이 아닌 풀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그 과정을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해 주기 바람.

7. 청년정책 현황

- 청년학교 6개 과정 103명, 청년커뮤니티 7개 팀 438명 등 다수의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료 이후 취업 여부나 정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전시성으로 그칠 우려가 있음. 개인별 관리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연 1회 이상 프로그램별 성과를 점검하여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11개 부서에 분산된 청년정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청년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

여 유사 사업은 통폐합해 주기 바람.

- 또한 가족지원과에서 추진한 탄소중립 자동차부품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2025년 수료자 34명 전원 취업이라는 성과를 낸 사례와 같이, 부서 간 정보교환과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기 바람.
- 서산시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이 21%를 넘고 청년정책이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음에도 인구청년정책팀의 인력은 2022년 이후 변화가 없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청년정책 담당 조직의 인력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부서 및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기 바람.
- 청년정책도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전체 참여자를 개인별로 관리하기 어렵다면 표본을 정하여 성과를 산출하거나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시 통보를 요청하는 등 계획 단계에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여 정책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8.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관련

- 주차면수가 445면에서 430면으로 변경되고 총사업비가 274억 원, 480억 원, 291억 원, 306억 원, 336억 원 등으로 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증액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사업비 변동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움. 특히 계속비 조서에 336억 원으로 기재된 부분은 현재 예산액 306억 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업비 관리와 자료 작성에 정확을 기해 주기 바람.
- 또한 초록광장 조성에 따라 잔디 식재와 토양 조성이 이루어지면 준공 이후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작은도서관・청소년전용카페・애견놀이터 등 부대시설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사업 기획 단계에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 주기 바람.

9.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변경 사항 관련

- 설계변경 자료와 건설사업관리단 기술검토 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타워크레인 설치는 부지 3면이 공원·하천·조경구역으로 둘러싸여 인양장비 접근이 제한된다는 사유로 추가되었으나 이는 설계 당시에 이미 알 수 있었던 조건이며, 발전기실은 당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 누락되었고, 시스템 동바리도 콘크리트 타설 하중에 따른 붕괴 우려를 이유로 공사 중에 추가되었음. 필수시설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를 증액하여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주기 바람.
-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는 시스템 동바리·비계 누락 및 추가분이 3억 4,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6호 기술검토 의견서의 증감 내역을 합산하면 2억 원 수준으로 약 1억 4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확인하여 별도로 보고 바람.
- 아울러 설계VE 용역이 실시설계 완료 이후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완료 시점과 최종 설계 반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조경비가 당초 21억 원에서 30억 원 내외로, 총 설계변경 규모가 약 4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비가 무리하게 증액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 초록광장은 주차장 외에 작은도서관, 청소년전용카페, AI 체험관, 청년창업지원센터, 애견놀이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다수의 시설이 함께 조성되어 관리 부서가 각 과로 분산될 예정임. 시설 이용 중 불편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초록광장 통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괄 관리 부서를 명확히 해 주기 바람.
- 또한 준공 이후 주차장 이용률, 불법주차 감소율, 초록광장 이용객 수, 시민 만족도, 행사 활용 실적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투입된 예산에 상응하는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 고발, 행정소송 등이 이어진 것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없이 절

차가 진행되면서 시민과의 갈등이 발생한 데에도 원인이 있음. 향후 다른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시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10. 2026년도 정책자문위원단 운영 현황 및 결과

- 2026년도 정책자문위원단은 위원 48명과 정책특별보좌관 2명 등 50명 규모에 예산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자체 문제 진단에서도 외부 전문가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자문 활동이 위축된 측면이 있는 만큼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여론을 수렴한 뒤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람.

11. 교육연수 및 배낭연수

- 배낭연수 결과가 공무원 열람용 게시판에 공지되고 있으나 연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연수 과정에서 도출된 제안이 소관 부서로 전달되어 검토·시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목적을 명확히 한 정책연수를 확대하여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2.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민간협력추진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잠흥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2021년 9월 최초 이장 공고 이후 장기간 지연되었고, 민간협력추진단 구성 이후 무연분묘 343기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사전 실태 파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임. 관계 부서와 사전에 현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 또한 추진단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5명 내외의 기관·단체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시민 대다수는 사업 추진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의견수렴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기 바람.

- 아울러 동문1동에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어 우천·강설 시 이용이 어려운 만큼, 가칭 아이행복타운 조성 시 도입시설 검토 과정에서 게이트볼장 유치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13. 시설관리공단 관리

-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나 6개 부서 9개 사업, 119억 원 규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리방안으로 제출된 내용은 조직진단 용역을 통한 적정 인력과 예산 책정 검토가 전부임. 공단 관리는 인력과 예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설립 목적인 전문성과 경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전문성·경제성·서비스·안전성 등을 직영 체제와 비교·평가하여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어 주기 바람.

14.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와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확인된 사례의 내용과 환수 등 조치 결과를 별도 자료로 제출 바람.

15. 청년마당 및 청년네트워크

- 청년마당은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나 현재 시설에 상당한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되었고 임차 건물 특성상 맞춤 제작된 시설은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 타 지역의 청년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전 시설을 준비해 주기 바람.
- 또한 청년의 날 행사가 폭염 시기에 개최되어 참가자들의 불편이 있었고 시장·의장·국회의원의 인사말 순서가 없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므로, 다음 행사 준비 시 시기와 진행 구성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16. 민간인 국외연수 관련 지원 현황

- 민간인 국외연수 예산은 2023년 2천만 원 중 239만 800원만 집행되었고 2024년에는 2천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으며 2025년과 2026년에도 각각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사실상 매년 불용되고 있음. 실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실태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주기 바람.

17.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현황

- 자원봉사센터가 성연으로 이전하기 전 임차하여 사용한 건물에 보증금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액 투입되었으나, 임차기간, 월 임차료, 계약기간 이전 이전(移轉)에 따른 임차료 반환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계약 내용과 정산 결과를 별도 자료로 제출 바람.

18.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반

- 공무원 일직·숙직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이 근무시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별도 예산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초과근무 시간 상한 조정 등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협의가 있을 경우 예산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이 청년, 지방 양극화 대응, AI 성장동력 등 서산시와 관련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모계획과 지침이 발표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주기 바람.
- 지방채 역시 시민이 부담해야 할 채무인 만큼 재원 조달 방법보다 다수의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서산시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함.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다 엄격하게 정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홍보담당관]

1. 시정홍보 광고수수료(광고비) 집행내역 및 배분 기준 관련

- 행정광고 집행에 관한 객관적인 배점 기준표(보도 실적, 매체 도달·이용도, 시정정보 전달 성과, 지역성·공익성, 취재활동의 정기성 등)를 마련하여 집행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논조에 따른 광고 배분이라는 오해가 반복될 수 있음.
-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처리한 사례가 있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바람.
- 용인특례시의 홈페이지 공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집행 기준을 우선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바람. 또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바람.
- 작년 행감 이후 변화가 없는 듯함. 문제점 정리 단계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도록 노력 바람.
- 광고대행 계약 및 대행 수수료 지급 내역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집행 구조와 위탁사업비 편성 근거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 바람.
- 매체 수는 증가하는데 예산 총액은 고정되어 있어 매체당 배분에 어려움이 있음. 기준 확립과 함께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 바람.

2. 어르신을 위한 「큰 글자 서산소식」 발행 관련

- 경로당에 일반 서산소식지와 큰 글자 소식지가 중복 배부되고 있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로당별 선호 여부를 파악한 후 배부 방식을 조정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 바람.
- 큰 글자 소식지 만족도 조사를 읍면동 의뢰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 현장 의견과 차이가 있음. 시행 1년을 기준으로 효용성을 판단하여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 바람.

- 세대별 배부 명단에 사망자가 포함되거나 한 세대에 중복 배부되는 사례가 있음. 명단 정비로 효율적인 배부가 이루어지도록 바람.
- 서산시의회 관련 지면이 월에 따라 1면으로 축소되고 있음. 2면 고정 게재를 검토 바람.

3. 다큐멘터리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관련

-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하여 시청률, 조회수, 도달 인원, 재방송 횟수, SNS 확산 및 2차 활용 실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성과 자료를 관리하여 제출 바람.
-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 등에서 다시 볼 수 없어 시민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음. 2차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방송사 및 제작사 선정이 특정 업체로 반복되고 있음. 선정 사유와 계약 조건(송출 횟수 등)을 명확히 관리 바람.

4. SNS 홍보 운영 및 성과 관련

- 채널별 좋아요·댓글·공유 등 세부 반응 데이터의 집계·관리 주기와 활용 방향을 체계화 바람.
- 인스타그램 구독자·조회수 증가 원인을 릴스·숏폼 확대 등 운영 방식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콘텐츠 제작과 홍보 전략에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 바람.
- 이용률이 낮아지는 채널(다음 블로그 등)에 대한 정책 목표와 운영 계획을 정리 바람.

5. 부서별 소관 위원회 운영 관련(공통)

- 서산시 소식지 편찬(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보관하지 않고 편집안 보관으로 대체하고 있음.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바람.
- 소식지 편집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찬위원회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1. 부서별 감사원·충남도·자체 감사 결과 및 처분 내역 관련

- 동일한 사안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음. 감사사례집 발간·배부에 그치지 말고, 신규 임용자와 전보자가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 바람.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사안별로 최종 처리 시점까지 관리 바람.
- 보조금 관련 비위는 자수나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별이 어려운 구조임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2. 특별사법경찰 단속 활동 관련

- 적발 건수와 조치 건수가 일치하지 않고, 중복 처리 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자료 작성 시 정확히 기재 바람.
- 행정처분 이후 유관 업소 재점검 결과와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자료에 표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바람. 이행 확인이 이루어져야 행정력의 실효성과 공신력이 확보됨.
- 청소년 분야 단속·계도 실적이 3년간 1,178건임에도 적발 건수가 0건임. 단속 방식과 대상 선정을 점검 바람.
-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각 소관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감사담당관이 세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총괄 부서로서 6대 민생 분야 전반의 현황을 파악 바람.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인 만큼, 각 부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적절성을 정기감사 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바람.

3. 반부패 · 청렴 워크숍 관련

- 만족도 조사와 함께 교육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청렴·보조금 등 분야별 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바람.

4. 수의계약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퇴직공직자가 관련 업체를 운영한다는 언론보도 관련 사항

- 설계용역 수의계약이 2개 업체에 집중되었다는 언론보도와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에 대하여 감사나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여부에 대하여, 위법 여부와 별개로 계약 형태에 대한 표본조사 등 최소한의 확인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언론보도도 시민의 목소리인 만큼 감사 착수 판단의 근거로 활용 바람.
- 관행적 관계로 인해 자체 감사가 어려운 분야에 대비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감사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 바람.

5. 자체감사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 관련

-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집합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반복 지적 유형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사례 중심의 집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6. 공무원 복무 위반 실태 및 조치 현황 관련

- 개인정보처리자가 부서별 1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연가·출장 등으로 부재 시 민원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부처리자 지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 바람.
-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주의 처분) 건과 관련하여 피해 확산 방지 조치 계획을 마련 바람.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유연근무 중 이탈, 시건장치 불량 등 복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징계 강화보다는 계도와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주의·계도 조치 바람.
- 시스템상의 정보뿐 아니라 출력물 형태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음. 각 부서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서류 처리 교육을 실시 바람.

7.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자 비위 관리 현황 관련

- 사전 고지 방식의 점검은 고지된 시기에만 기강이 유지될 우려가 있음. 연간 불시점검 횟수와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 바람.

8. 부서별 소관 위원회 운영 관련(공통)

- 청원 처리 결과가 연도별로 인용·불인용·기각·각하 구분 없이 처리 건수만 기재되어 있음. 처리 결과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자료에 명시 바람.
  청원은 시민의 권리인 만큼 단순 민원과 구분하여 처리 바람.
- 용현리 계곡 불법건축물 관련 청원의 비공개 결정 사유를 제출 바람.

9. 기타사항

-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 없음',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반복되었음. 요구 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답변 바람.

[자치행정과]

1. 직원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 직원 복지시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수요 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공무원 노조를 통한 건의 사항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시행 중인 복지시책을 직원들이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예방접종비 지원 등 검토 중인 시책도 함께 살펴봐 주기 바람.

2. 서산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및 이행률

- 장애인 의무고용률 3.8%에 미달하여 2025년 고용부담금 약 2억 2,5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됨. 응시자가 적고 시험 과정에서 탈락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채용 인원 요구를 지속하고, 근무 중인 장애인 공무원 36명의 편의시설과 근무 여건을 계속 살펴주기 바람.

3.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관리 업무

- 당직 수당은 행정안전부 보수 지침에 따라 6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인상이 어렵더라도, 당직에 따른 대체휴무 사용 기간이 본청 5일, 읍면동 10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근무 인원 총량제 등을 통해 사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노조 및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우 개선 주무부서로서 먼저 제안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4. 공무원 교육 현황

- 전화 외국어 교육 참여 인원이 2023년 232명에서 2025년 15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사유가 학습 방식 변경에 따른 수강 시간 제한과 미이수 시 수강비 본인 부담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보완해 주기 바람.
- 또한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은 2026년 신청자가 없어 실적이 없는 상태이므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5. 민간단체 보조금 및 주유비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

- 자치행정과 소관 28개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과거 부정 사용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급이 제한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정산 검사가 전산 시스템과 서류 검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조금 규모가 큰 단체에 대해서는 전문 회계사를 통한 검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소관 부서에 건의하여 검토해 주기 바람.

6. 새마을회 지원 및 새마을사업 추진 현황

- 새마을회 구성원 748명 가운데 동 지역을 중심으로 부녀회장 등 공석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연령대도 읍면 60~70대, 동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연령별 현황은 관리되지 않고 있음. 신규 가입자와 인력 유지 현황을 파악하여 공석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또한 2025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7월 집중호우로 취소되어 예산 4천만 원 중 2,725만 원이 미집행되었으므로 행사 취소 시 기집행 내역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7.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

- 시민혁신 아이디어 공모 선정 건수에 비해 실제 반영 건수가 낮고, 반영으로 분류된 사례 중에도 제안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부서 의견과 반영 결과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재하고, 장기 검토로 분류된 제안은 비고란에 그 사실이 표시되도록 해 주기 바람.
- 또한 2023년 홈페이지 큰 글씨 기능 도입, 2024년 국가금연상담전화 추가 등 반영 또는 장기 검토로 처리된 제안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담당 부서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람.
- 아울러 과거에 선정되었으나 당시 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제안 가운데 현재 도입이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람.

8. 임용 후 3년 내 공무원 퇴직 현황 및 대책

- 임용 후 3년 이내 퇴직자가 2023년 11명, 2024년 6명, 2025년 8명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음. 전국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8~9급 저연차 직원들이 적응 과정에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인사 상담과 부서 조정 등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서산시 공무원 중 관내에 연고가 없는 직원이 약 40%에 이르는 만큼 주

거 문제가 정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임대형 복지주택 등 직원 주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회계과와 협의하여 복지 주무 부서로서 함께 챙겨주기 바람.

- 2026년 채용은 140명을 요구하였으나 84명이 임용될 예정이며 특히 시설직은 15명 요구에 최종 합격자가 1명에 그쳐 경력경쟁채용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음. 부서별 결원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주기 바람.

9.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

- 등록 자원봉사자는 6만 2,800여 명이나 실제 활동 인원은 약 1만 3천 명 수준임. 등록자 수보다 실제 활동 인원과 신규 참여자의 재참여율, 수요처 매칭 등을 함께 관리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실질적인 활동 지표를 높여 주기 바람.

10. 주민 만족도 조사 현황

- 주민 만족도 조사 응답률이 2026년 상반기 11% 수준으로 낮은 반면 점수는 90점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수 체계가 60점부터 100점까지로 설정되어 있음.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설정이라 하더라도 객관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용역기관과 협의하여 조사 방식을 보완해 주기 바람.

11. 서산시 민간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 내역

- 민주평통 통일기반 조성 및 통일무지개운동 사업은 2024년 예산 3,500만원 중 31%, 2025년 47%가 불용되었음에도 2026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3년간 집행 내역과 불용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고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기 바람. 라오스 새마을 국제협력사업과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도 함께 자료로 제출 바람.

12.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중 단체보험 가입비 현황

- 단체보험 1인당 계약금액이 2024년 대비 2026년 약 30% 인상된 사유가 보장 항목 추가와 가입 인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장 항목 조정 시 보험료 변동 내역이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13.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 자원봉사센터 이전 관련 예산이 2025년 제4회 정리추경에 편성된 뒤 곧바로 명시이월된 사례가 있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14. 서산시 임대건물 현황

- 자원봉사센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6년 7월 18일까지였으나 2026년 4월 1일 공공서비스센터로 이전하여 잔여 기간의 임차료가 발생하였으며, 당초 입주 시 리모델링 기간에 대한 임차료와 퇴거 시 원상복구비 2,2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되었음. 임차 건물에 대한 시설 투자와 계약 조건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15.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 자치행정과에서 28개 단체의 보조금 정산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큰 만큼 정산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또한 2025년 취소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의 기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 자료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자료를 제출 바람.

16.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

- 새마을회는 어버이날 행사, 숨은 자원 찾기 등 지역 봉사활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자와 부녀회장 결원이 많은 상황임. 회의 수당이 4만 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지도자와 부녀회장의 처우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시민과의 대화가 사전에 준비된 순서 위주로 진행되어 시민이 직접 의견을 말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준비되지 않은 참석자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진행 방식을 개선해 주기 바람.

[안전총괄과]

1. 물놀이 안전관리

-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이 9월 13일까지 2주간 연장되어 벌천포와 용현계곡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이용객이 거의 없는 날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또한 안전요원 24명 중 수상안전교육 이수 실적이 12명이며 읍면동장 추천을 통해 선발된 인원 상당수가 4시간 교육으로 배치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자격 요건과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 아울러 용현계곡은 장비 보관시설이 없어 관리 주체의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컨테이너 임차에 연간 450만 원이 소요되고 있음. 황락계곡과 같이 산불감시초소 등과 병행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2.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호우·폭설·한파 대응방안

- 2026년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본예산이 최소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반영된 1억 1천만 원도 폭염 저감시설인 스마트 버스승강장 특별교부세에 따른 것으로, 2025년 집중호우와 같은 피해가 재발할 경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임. 자연재해와 재난이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 대응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주기 바람.

3. 폭염 및 한파 대응 계획 및 저감시설물 현황

- 그늘막,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저감시설은 경로장애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등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어 안전총괄과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없는 상황임. 고장·이상 발생 시 관련 부서와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점검 체계를 유지해 주기 바람.
- 또한 재난문자가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수신되면서 서산시 외 인근 시군의 문자가 다수 수신되어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선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민에게 안내해 주기 바람.

4. 재난안전 정책 관련

- 재난 취약시설 전수조사 결과 조치사항이 대부분 현장조치와 공문 발송에 의한 조치 권고에 그치고 있어 안전 우려가 실질적으로 해소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급경사지·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 자연재난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져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2023년 읍내동 가스폭발 사고 이후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별도 자료로 제출 바람.
- 집중안전점검 결과 2025년 63개소 중 18건이 조치 중이었으나 2026년에는 89개소 중 40건이 조치 중으로 증가하였음. 점검 대상과 지적사항의 증가보다 조치 완료 시점이 중요한 만큼 시설별 조치 기한과 진행 상황을 명확히 관리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 또한 점검 대상이 광범위하여 현재 인력으로 모든 대상을 동일한 수준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만큼, 위험도에 따른 점검 우선순위와 외부 전문기관과의 역할 분담 기준을 정비하고 위험도별 관리 대상과 점검 주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 주기 바람.
- 제출된 재해예방 정책 자료에 서산시가 어떤 재해에 취약한지에 대한 분석과 위험도에 따른 예방 전략, 위험 저감 성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2025년도 추경에 편성된 폭염 저감시설 그린 통합

쉼터 설치사업과 한파쉼터 스마트 승강장 설치사업이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되어 2026년 10월 완료 예정으로, 정작 폭염이 심했던 올해 활용되지 못하였음. 재해예방 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해 주기 바람.

- 청지천 남원교 구간은 하천 범람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CCTV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세무소 방면 도로의 높이가 낮아 침수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하천 정비사업과는 별개로 도로 높이 조정 방안을 도로과·건설과와 협의해 주기 바람.
- 또한 동문1동 급경사지 상시계측기기 유지관리비 2,200만 원 중 약 2천만 원이 외부 업체에 지급되고 있으므로 계측기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기 바라며, 폭염 대응 양심우산 770개가 배부된 만큼 회수율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해 주기 바람.
- 폭염 대응 양심우산이 여름이 지난 시점에 배부된 것은 명시이월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집행되지 못한 사례임. 사업이 실제 필요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을 추진해 주기 바람.

5. 서해안 안전체험관

- 최근 이용객이 2025년 3,700여 명으로 감소하였고 이용객이 어린이집·유치원 위주로 구성되어 초등학생 비율이 낮은 상황임. 시설 리모델링과 함께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초등학생의 안전체험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6.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최저적립 준수와 운용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이 2022년 53억 원, 2023년 8억 원, 2024년 20억 원, 2025년 45억 원, 2026년 계획 9억 원으로 연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법정 최저적립액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도별 지출 계획의 편차 사유를 명확히 관리해 주기 바람.

7. 중대재해 예방 및 민방위 운영 실태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2023년 81%, 2024년 60%, 2025년 70%로 변동하고 있으며 1인당 소요량 기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비상급수는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산출 기준과 부족분 30%에 대한 연차별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자료로 제출 바람.

8. 2025년 7월 극한호우 당시 재난대응 관련

- 2025년 7월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토사가 정비되지 않은 구간이 남아 있고 해미천에서 추가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재난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시민의 접근이 많은 하천 구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과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여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9. 최근 3년간 15개 읍면동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 및 성과

- 서산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의 조직·인원·활동 실적·시설 현황을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음. 서산소방서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용소방대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읍면동 의용소방대 가운데 결원율이 높은 대가 다수 있으며 해미 대곡리의 경우 정원 20명 대비 현원이 1명에 그치고 있음. 지역 여건상 정원 확보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인근 대와의 통합 운영 등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또한 서산소방서의 진출입 여건이 좋지 않아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 충청남도에서 청사 예정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소방서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람.

10.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회의 대부분이 서면심의로 운영되어 총 3,832만 원의 수당이 지출되고 있으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음. 법정위원회로서 유지가 필요하다면 본래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회계과]

1. 수의계약 관련

- 공사·용역·물품관리·차량관리 등 수의계약에서 소수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연도에 따라 상위 5개 업체가 82건, 51%를 차지하거나 2025년 43%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수의계약 업체 수와 편중 현황을 확인하여 별도 자료로 제출 바람.
- 행정안전부의 총량제 개선안과 별개로 서산시 실정에 맞는 총량제와 편중 방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사업을 금액을 낮추어 분할 발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함. 계약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의도적인 특혜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설계용역 업체 등 선정 시 참여 가능한 업체를 폭넓게 검토하고 견적 비교와 계약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설계용역 수의계약 업체 상위 3개 업체 관련

- 서산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10개소 중 관내 소재 업체 4개소를 우선 계약하고 있으나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신속성과 기술력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나머지 업체에도 계약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3. 신청사 건립

- 신청사 의회동 설계에서 운영위원회실은 약 4평, 산업건설위원회실은 약 5평, 행정문화복지위원회실은 약 8평이 현재보다 축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현재도 위원회실이 협소하여 회의 진행에 불편이 있는 상황이므로 설계를 재조정하고, 의장실・부의장실・의원실・사무국장실・전문위원실 등 현재 면적과 신청사 계획 면적을 비교한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바람.
- 신청사 입지 선정은 총 7차 회의를 거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례 개정과 위원 교체 이후 실제로는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약 6개월 만에 2,000억 원이 넘는 사업의 입지가 결정되었음. 이러한 절차가 반복될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 주기 바람.
- 신청사 부지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우천 시에도 현장 관리・감독과 근로자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함.
  다만 폐기물 처리와 해체공사에 관내 업체 참여가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주기 바람.

4. 공유재산 관리 관련

- 미사용 방치 공유재산이 제출자료에서 281필지에서 257필지로 정정되는 등 수치 관리가 정확하지 않으며, 활용계획도 대부분 대부 또는 활용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음. 필지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유형화하여 처리 목표연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 또한 일반재산 805필지에 대한 최근 4년간 실태조사량이 매년 크게 달라 전체 공유재산이 빠짐없이 조사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조사 대상 필지의 중복・누락 여부를 분석하고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무단점유 사례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고 조치가 지연된 경우가 확인됨. 임

대 종료 이후 계속 경작하는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람.

5. 직원 임대형 복지주택 매입 및 관리 현황

- 2026년 업무계획상 직원 임대형 복지주택 매입 예산 7억 원 중 6억 원을 집행하여 8호를 매입하였음. 관내에 연고가 없는 직원이 약 40%에 이르는 만큼 직원이 서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기에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잔여 예산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35년 이상 경과한 기존 관사 11호에 대해서도 신축 또는 매각 후 대체 매입 등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6. 청사 관리

- 의회동 입구 주차구역에서 제초작업 중 차량 유리가 파손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제초 등 청사 관리 용역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유의해 주기 바람.
- 또한 시설관리비가 2023년 대비 2024년 46%, 2024년 대비 2025년 30% 증가하는 등 청사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용이 계속 늘고 있음. 신청사 이전 시기를 감안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편성하되 직원 안전과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7.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료

- 2024년부터 공용차량 271대에 대한 통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만큼 사고율 관리를 계속 유지해 주기 바라며, 부서별 차량 보유 편차로 출장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 보유 차량의 공동 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8.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

- 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사업은 기금으로 관리되어 현재까지 102억 원이 확보되었고 2030년 준공까지 매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임. 대산공단 관련 재원이 감소하고 지방채 발행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연도별 재원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 또한 물가 상승 반영과 보상액 증가로 사업비가 1,952억 원에서 2,045억 원으로 조정된 경위를 명확히 관리하고, 사업 착수가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9. 회계과 소관 전반

- 본청 계약전력은 900킬로와트, 제2청사는 400킬로와트로 유지되고 있으나 최대전력은 각각 487킬로와트, 141킬로와트 수준으로 계약전력이 최대전력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음. 태양광 설치에 따른 발전량을 감안하여 계약전력 조정 여부와 전기요금 절감 가능성을 검토해 주기 바람.

[평생교육과]

1. 교육발전특구 사업 관련

- 다함께돌봄 해봄센터의 이용자 현황이 등록 인원 70명, 일평균 이용자 39명으로 제출되었음. 평일·주말·방학 이용자를 구분한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여 향후 평가와 대책 수립에 활용 바람.

- AI 디지털 교육센터 구축이 우선협상 결렬과 가처분 신청으로 지연되고 있음. 제안서 평가 용역과 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이용 기회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 바람.

- 해외 탐방 사업(2024년 미국 아이비리그, 2025년 싱가포르, 2026년 필리핀 어학연수)의 선발 기준과 참여 인원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 바람.

- 고비용 기자재 지원 물품의 학교별 활용 실태 점검을 지속 바람.

- 특구센터 위탁 운영 사업비(한서대학교) 집행 내역을 AI 센터 관련 부분과 구분하여 자료로 제출 바람.

- 2026년 9월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특구센터 운영과 관련 사업의 유지 방안을 사전에 마련 바람.
- 감사 요구 자료로 제출된 연차별 사업계획서가 사업비 항목을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편철되어 있음. 변경된 부분 위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자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바람.

2.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관련

- 읍면동별 주민자치 사업 건수와 공공운영비 편성에 편차가 있으나 그 사유가 자료에 드러나지 않음. 복합청사 운영 등 편차 발생 사유를 자료에 반영 바람.

3. 각급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 관련

- 대학입시상담센터에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음. 상담 실적 외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교육청 지원 규모의 변화도 함께 점검 바람.
- 상주 교육연구사 2명으로 야간 상담까지 운영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함. 서산시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 바람.
- 강남인강 수강료 지원 사업이 일몰 후 재추진된 사업인 만큼, 학생·학부모 대상 사전 홍보 계획을 보완하고 실제 수강률과 학습 효과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바람.
-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21개 사업, 연간 약 48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유사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서산의 산업과 학생의 진로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개발하여 예산에 반영 바람.

4.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관련

- 도 단위 일괄 예산 편성으로 선정 인원 대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탈락자의 90% 이상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중복되는 구조에 대한 자료와 충청남도 건의 내용을 제출 바람.

5. 성인 문해교육 마을학교 운영 현황 및 성과 관련

- 한글 과정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노인 돌봄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 교육 내용을 실생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6.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투자 사업 관련(공통)

- 특구센터 건물 임차(보증금 2천만원, 월 350만원, 한서대학교)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2027년 이후 사업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시설 투자분(약 38억원)의 유지 방안을 검토 바람.

7. 부서별 소관 위원회 운영 관련(공통)

- 연도별 소관 위원회 현황 기재가 일관되지 않음. 변동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람.
- 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제13조·제14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발전특구 혁신위원회와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음.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필요적 위원회를 임의적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조례를 정비 바람.

8. 기타사항

- 고등학교 교복(생활지원금) 구입처 지정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학교에 권고하는 등 개선 노력 바람.

[문화예술과]

1. 서산시 문화에술관련 지원사업 현황 관련

- 도비 매칭 사업이 도비가 있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유지되지 않도록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비 바람.
- 시비 100%로 지원되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114개 단체)은 현장 점검과 정산 확인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반복적이거나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
- 총액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바람.
- 선황제·산신제 등 일회성 행사 위주의 지원에서 나아가 서산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지역 전통을 이어가는 소규모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함께 유지 바람.
- 사업 명칭만 변경하여 신청하거나 구성원을 중복 편성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2027년 개선계획대로 추진 바람.
- 단체가 1년 참여 후 중단하였다가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정비 바람.
-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사업 유형에 따라 0%에서 30% 이상까지 편차가 큼. 전통 계승 단체 등 자부담이 참여 저해 요인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 바람.

2. 문화예술타운 자료 일체 관련

- 시민추진위원회 위원 16명(기관·단체장 14명, 시의원 2명)의 선정 절차와, 후보지 10개소에서 3개소로 압축되는 과정의 지역별 평가 점수 자료를 제출 바람.
- 2024년 타당성 연구용역이 문화시설 집적화를 전제로 수행되어, 집적형과 생

활권 분산형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의 문화 향유 접근성 측면에서 분산 배치 가능성에 대한 정책 대안 검토 바람.

- 총사업비가 토지비를 제외하고 2,420억원 규모임. 국·도비 확보 여부에 따라 6개 시설의 규모와 순차 추진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산시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시비 한도와 연도별 재정 부담을 명확히 산정 바람.
- 재원 마련 방안이 '국비 확보 추진', '도비 확보 추진' 등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시설별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화 바람.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신청사 건립 기금 등 시 전체의 대규모 사업 재정 소요를 함께 고려하여 검토 바람.
- 2001년 이전한 문화원과 2018년 개관한 영상미디어센터(31억원)를 철거하게 되는 등 기존 시설 투자분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향후 사업 추진 시 철거보다 신축이 선행되는 방향으로 단계 계획을 수립 바람.
- 문화원을 '문화원 기능을 포함한 확대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문화원의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재원 확보를 이유로 사업의 성격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검토 바람.
- 집적화·분산 배치에 대하여 집적화 추진 의견 및비교 검토 선행을 요구하였음. 기재 방향 확정 필요.

3. 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방재지원 관련

- 개심사 대웅전 경비관제소 사업비(3억 2천만원)가 설계비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임. 자료 작성 시 정확히 기재 바람.
- 개심사 대웅전 뒤편 토사 유출 구간의 배수로 정비가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음.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 바람.
- 서산향교 대성전 공사 마무리와 함께 주변 우수관 정비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바람.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중복 집행으로 인한 낭비 요인이 있는지 점검 바람.
-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예산의 연도별 편차가 큼.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 바람.
- 명종대왕 태실 등 문화유산의 상시 방재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 바람.
- 문화유산 방재시설 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훈련이 해미읍성 진남문 배부름 현상 등 실제 지적사항 예방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점검 바람.

4. 서산예총 지원 사업 관련

- 성과 분석표에 '문화 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의 실적으로 축제 연계 공연이 기재되어 있어 사업 목적과 실적이 부합하지 않음.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성과 분석표를 사실에 맞게 작성 바람.
- 참여 예술인 증감, 사업별 만족도, 관람객 수 등 전년 대비 비교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성과 관리 바람.
-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증액되는 폭이 큼(2024년 42.5%, 2025년 7.3%). 본예산 편성 시 소요액 산정에 정확을 기하고, 최근 3년간 사업비 변동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람.
- 문화거리 공연 사업의 집행률이 2년 연속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음.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바람.
- 서산예총 지회의 조직 및 운영 규정 중 징계 조항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검토 바람.

5. 보원사지 장경각 건립 사업 관련

- 총사업비 80억원 외에 야외 소화전 5개소, 장경각 외부 CCTV, 경판 보존실 전시 시설, 주변 석축·배수로·바닥 포장 등 약 12억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됨. 국가유산청 협의 등을 통해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 바람.
-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비·도비·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바람.

- 보원사가 전통사찰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륙재의 충남 무형유산 등록 추진도 함께 검토 바람.

6.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 관련

- 2022년 국비 확보 이후 2026년까지 4년간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 발굴조사, 공공건축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상설 전시 구성안에 스토리 구성과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함. 최근의 박물관 운영 추세를 반영하여 보완 바람.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철불좌상의 환지본처가 방문자센터 준공 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시 공간의 규격과 높이를 사전에 확보 바람.

7. 문화시설 운영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관련

- 문화원, 번화로 문화이슈, 생활문화센터 등 일부 시설에서 체감 이용률이 낮거나 유휴 공간이 발생하고 있음. 시설별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운영 바람.
- 대관이 문화예술 단체 발표회에 편중되지 않고 일반 시민도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현황 관리와 접근성 확대에 힘써 주기 바람.

8. 부장리 고분군 기반시설 정비 사업 관련

- 미매입 8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수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8년 준공 계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시비 부담 비중이 17%에서 59%로 상승하였음. 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노력 바람.
- 음암 지역은 해미·운산과 달리 관광 기반시설이 부족함. 지역 발전과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 바람.

9. 공공조형물 관리 관련

-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 미술, 사업비 4억원) 조형물의 철거・유실・이동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리 철저 바람.
- 서산・해미 톨게이트 캐노피 조형물과 같이 심의 대상 여부가 모호한 경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근거와 자료를 남기고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 마련을 검토 바람.

10. 시립합창단 운영 관련

- 시립합창단원의 처우가 타 시군 시립・군립 합창단에 비해 열악함. 노사 협상으로 결정된 인상안이 평균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 노력 바람.
- 단원의 상당수가 수도권 거주자임. 조례 취지에 맞게 지역 인재가 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에 노력 바람.
- 지하에 위치한 연습실은 합창단 활동 여건상 적절하지 않음. 계획하고 있는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 바람.

11.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관련(공통)

- 국가유산청 설계 승인, 전문가 자문, 하반기 국・도비 추가 교부 등을 사유로 한 이월이 최근 3년간 반복되고 있음. 본예산 편성 시 관계기관 협의 기간과 설계 변경 가능성을 반영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한 연차별 예산으로 편성 바람.

12.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 관련(공통)

- 국비 미확보 사업 10건이 우선순위 조정으로 미선정되었음. 국가 정책 방향과 심사 기준을 분석하여 재신청 바람.
-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법면 보호공 및 낙석방지망 설치 사업 등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안전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우선 추진 바람.

13.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 관련(공통)

- 대부료 자료의 단위가 제곱미터 및 천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
  자료 작성 시 정확히 기재 바람.

14. 기타사항

- 충남도립박물관 유치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타당성 조사 등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추진 로드맵을 마련 바람.
- 같은 날에 다수의 보조금 지원 행사가 중복 개최되고 있음. 행사 일정 조정을 검토 바람.

[사회복지과]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복지 지원 강화 위기가구 현황

- 밤새안녕 모바일 안심서비스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취약계층이나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택한 대상자에게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3년 이후 발굴 인원 1만 9,283명 가운데 공적급여 연계는 10.1%인 1,957명에 그치고 있음. 2025년 11월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만족도는 86.3%인 반면 안부전화 만족도는 45.2%, 통화시간 만족도는 52.1%로 항목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여 운영방식을 보완하고, 이통장·명예사회복지사 등 읍면동 인적안전망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 아울러 택배·배달원, 슈퍼마켓 등 생활밀접업종 종사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편물·택배 적체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 현장에 반영해 주기 바람.
- 발굴 대상자의 약 89%가 민간서비스로 연계되고 있으나 TV수신료·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신청 이후 실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통합사례관리 실적이 2023년 279건에서 2025년 12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위기가구 감소에 따른 것인지, 담당인력 부족이나 업무방식 변화에 따른 것인지 원인 분석이 필요함. 정책이 단순 안부확인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과 관계망 회복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이후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례 발굴이 누락되는 원인을 재점검하여 보완해 주기 바람.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가운데 제외되거나 새로 편입되는 대상자의 교체 비율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발굴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며, 2024년과 2025년에 통합사례관리 실적이 전혀 없는 동이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주기 바람. 대상자 교체 현황과 공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지원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 바람.

-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행복이음을 통해 단전·단수·보험료 체납 등 19개 기관 47종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상징후 확인 이후의 현장 대응이 출근 이후 주간 시간대 위주로 이루어질 경우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점과 어긋날 수 있음. 야간·주말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취합·연계하는 능동적 발굴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 고독사 위험군 관리 대상이 45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으로 설정되어 있어 자살·질환 등으로 위험에 처한 청년 1인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청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 밤새안녕 만족도 조사 결과가 복수응답 방식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사서 원본을 제출하고, 조사 결과가 정확한 자료인지 자체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람.

2.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적정성 및 맞춤형 복지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 사유 가운데 소득인정액 초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인정액을 소폭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가구가 자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 중지 가구에 대한 별도의 사후조사 없이 본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한해 긴급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2025년 실제 지원 사례도 4건에 그치고 있음. 수급 중지를 종결이 아닌 다음 단계 복지서비스로의 전환 시점으로 보고 차상위계층 확인, 긴급복지,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를 함께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복지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기 바람.

3. 서산시 기초생활수급 1인가구 현황

- 1인가구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등 부서별로 관리 범위가 달라 통합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며, 기초생활수급 1인가구 2,845명 가운데 밤새안녕 서비스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신청주의로 운영되어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

하지 않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초생활수급 1인가구 명단과 고독사 예방·밤새안녕·사례관리 대상자 명단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주기 바람.

4.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은 담당자의 적극적인 발굴로 신청 인원이 매년 증가하여 2026년 예산이 이미 대부분 집행된 상황임. 추가 신청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족분 1,9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저소득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5.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원사업 현황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2024년 795명인 반면 같은 해 생일축하금 지급대상자는 801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본인에게만 지급하는 생일축하금 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보다 많게 나타나는 등 자료 간 수치가 맞지 않음. 일부 항목은 연평균 인원으로, 일부 항목은 실제 대상자 수로 산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출 기준을 통일하고 해당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자료를 제출 바람. 참전유공자 예우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정착된 만큼 앞으로도 대상자 관리에 정확을 기해 주기 바람.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및 추진 현황

-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늘고 있음에도 푸드뱅크·푸드마켓의 식품이 이들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경로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마켓 2개소 중 1개소가 내부 방침에 따라 폐쇄되어 현재는 뱅크 1개소, 마켓 1개소만 운영되고 있음. 에너지바우처 등 각종 바우처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마켓·배달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아울러 푸드마켓 제공률이 2024년 37.8%에서 2025년 121.4%로 급등한 사유와 이월 물품 현황을 명확히 관리하고,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그냥 드

림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부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바람.

- 푸드마켓의 낮은 제공률과 이월 물품 문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호 물품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광역 푸드뱅크로부터 묶음 단위로 인수하는 물량이 90%에 이르러 유통기한과 선호도에 맞게 배분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광역 및 자체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제공기준, 모집·제공 공개 등 행정절차 미흡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고,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7.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업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산시 복지재단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달라진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또한 성금 모금액은 39억 원 수준에서 2025년 48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긴급지원 인원은 112명에서 88명으로 감소하여, 위기가구가 실제로 줄어든 것인지 민간지원 연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공동모금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재단이 직접 모금할 수 있는 방안과 2025년 지정기탁 29억 3천만 원 중 기관·단체에 지원된 25억 6,200만 원의 최종 사용처를 파악하여, 서산시가 어느 분야에 집중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주기 바람.

8.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

- 2024년 특정감사에서 채용서류 반환, 채용계획 사전협의, 응시원서 접수방법, 면접 동점자 처리방안 등 채용 관련 4건이 지적되어 모두 종결처리되었으나,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채용 절차 체크리스트 등 사후 점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영평가 결과도 2024년 88.72점에서 2025년 89.41점으로 상승하여 가등급에 근접한 만큼 복지재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복지욕구조사 결과가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기 바람.

9. 부서별 불용액 현황

-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사업은 예산 2억 1천만 원 중 1억 2,700여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사유가 신규사업 홍보 부족에 따른 이용실적 저조로 제시되어 있음. 복지사업의 불용액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혜택을 받지 못한 잠재적 미수혜자가 있었다는 의미인 만큼, 대상자가 비교적 특정되는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개별 안내와 미이용자 재안내를 실시하여 미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0. 서산시 임대건물 현황

- 보훈회관은 현재 9개 단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아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2030년 4월 신청사 완공 이후 제2청사가 유휴 공간으로 남게 되는 만큼, 별도 부지를 조성하여 보훈회관을 신축하기보다 터미널·전통시장과 가까워 어르신 접근성과 주차 여건이 양호한 제2청사를 보훈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회계과와 협의하여 준비해 주기 바람.

11.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경작하고 있는 지산리 농지 5필지는 계약기간이 2026년 말 종료되어 갱신이 검토되고 있으나, 해당 농지의 염도가 높아 작물 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과 일부 복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파악되어 있지 않음. 재계약에 앞서 토양 상태와 복토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자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2.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은 2026년 인건비 상승분과 기간제 1명 채용으로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충원된 인력이 실무분과·읍면동 협의체 업무지원과 회의 운영 등 행정지원에 머물러 위기가구 발굴 현장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증액된 예산이 복지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방향을 점검해 주기 바람.

[가족지원과]

1.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사업

-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책임 부서가 가족지원과임에도 2026년 관련 사업은 가족센터의 중장년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한 건에 그치고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도 아직 시행된 바 없음.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령·성별 등 기초 실태가 파악되어야 인구정책과 1인가구 정책 수립이 가능한 만큼,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 사업 시행이 하나의 단계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갖춰 주기 바람.

2. 돌봄 사업 현황 및 돌봄 공백 해소 방안

-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온종일돌봄센터 1개소, 해봄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봄센터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구 사업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가족지원과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임. 시·교육청·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돌봄이 분산되어 있는 만큼 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고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이 2개소에 그치고 시내권에 편중되어 있어 대산읍·성연면 등 산업단지 주변과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물리적 거리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기존 어린이집의 여유 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임시 돌봄을 확대하되, 출생아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우선 고려해 주기 바람.
- 아울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돌봄사업 컨트롤타워 지정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조에 머무르지 않고 중복과 공백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계를 마련해 주기 바람.
- 지도점검 결과 대산·부석 등에서 안전관리계획서가 확인되지 않아 사전 수립 지도가 이루어졌고 해봄센터에서도 안전관리계획서 누락이 재차

확인되었음. 개별 센터의 단순 실수로 보지 말고 사전 체크리스트를 각 센터에 배포하여 점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기 바람.

3.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대응 체계

- 아동학대 예방에서 가장 선제적인 조치는 보호자와 지인에 대한 교육임에도 보호자 대상 교육의 이수율과 성과가 행정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보호조치의 80~90%를 차지하는 원가정 보호에 대해서도 사례관리 이후의 재신고 여부 등 성과지표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 프로그램 기획에서 실행,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을 보완해 주기 바람.
- 상담 조치가 거부되는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거부·중도 포기 사례를 관리하고, 원가정 상담이 종료된 가정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과 재학대 여부 확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 신고 접수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2024년 학대 판단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그 원인이 분석되어 있지 않으며, 원가정 보호 비율이 2023년 93.8%, 2024년 91.6%, 2025~2026년 82.9% 수준으로 여전히 높음. 인근 지역에서 원가정 복귀 후 아동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원가정 조치 판단 기준과 고위험군 분류·관리 기준을 재점검하고, 현재 실시 중인 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해 주기 바람.
- 또한 해당 팀은 사례관리와 현장 출동을 함께 수행하는 부서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전문 인력 확보와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대상자별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참여·이수 인원 자료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시 행정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위탁기관이 보유한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유받아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시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 성연·해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용률과 시설 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으나, 해미의 경우 진입로 안내표지판이 수목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위치와 크기를 조정해 주기 바람.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천동 등 청소년이 많은 지역과 대산읍 청소년 카페 조성, 성연 청소년 카페 확장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되, 신축뿐 아니라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 청소년 상담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처우 문제로 전문 상담인력이 채용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이직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심층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을 아산·대전 등 외부 기관에 연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인건비 실태 용역 등을 통해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신규 상담에 비해 재상담 비율이 낮고, 2025년 사례관리 대상자 328명 중 직접 발굴은 1명, 2026년에는 0명으로 나타나 학교 체계 밖 청소년이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발굴하는 경로가 제한적임. 거리 상담과 온라인·화상 상담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상담 등 새로운 방식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6.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성장 지원

- 사이버 도박, 학교폭력, 자살 예방, 디지털 미디어 피해 등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 분야임에도 상당 부분을 센터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학교별로 학년과 회기가 달라 교육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음. 전문 강사 투입 비율을 높이고 교육 내용을 세분화하는 한편, 예방교육의 결과지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기 바람.

7.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운영

- 청소년 e스포츠 대회는 5천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예산이 전액 집행되었고 참여 만족도와 재참여 의향이 95%에 이르는 등 첫 회임에도 성과가 높게 나타났음. 전국 단위 참여로 이어진 만큼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장비・운영 등 전문 영역은 위탁 방식을 유지하되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람.

8. 여성 경력이음 사업

- 경력이음 직업교육 과정이 그동안 자동차 변속기 등 지역 주력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기차 전환에 따라 해당 분야 채용이 줄어 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음. 올해 신규로 개설한 온돌봄 방과후 지도사 양성처럼 실제 수요가 있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취업 프로그램의 낮은 취업률에 대해서도 원인을 정리하여 관리해 주기 바람.

9.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현황 및 관리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다문화・장애 프로그램, 토요돌봄 운영 등을 기준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되고 있으나 연도별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센터별 선정 유형과 미선정 사유를 기록・관리하여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액이 2023년 대비 약 66% 증가하였고 그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센터장은 월 170만 원, 직원은 월 100만 원 수준이 상향되었음. 인건비 지원 확대가 종사자 처우 개선과 근속 인정을 넘어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아동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기 바람.
- 아울러 타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허위 출석 처리 사례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출결 카드 관리와 불시 지도점검을 지속하여 실제 출석 여부가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10.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운영 및 추진 현황

- 2026년 6월 말 기준 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족은 1,548가구 4,644명으로 과거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음. 결혼이민자 한 사람에게 한국어 습득과 자녀 양육, 한국사회 적응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국인 배우자가 배우자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보완하고, 특히 영유아기부터 가정 내 언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1.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

- 고립·은둔 청소년 관련 제출 자료가 지원 건수 위주로 되어 있어 서산시에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는 파악되어 있지 않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발굴 방법을 마련하고, 청소년 1명의 고립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안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춰 주기 바람. 2026년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2027년 재신청을 준비하되, 공모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위기청소년 관리체계 안에서도 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 바람.

12.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 관련

-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이 시, 충청남도, 국가로 나뉘어 30여 가지로 분산 지급되고 있어 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지원 규모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원 항목을 정리하여 통합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기 바람. 이러한 지원에도 출생아 수가 2023년 866명, 2024년 858명, 2025년 818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민간어린이집 6개소와 가정어린이집 16개소가 폐원하는 등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청년 유입과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도 관계 부서와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람.

13. 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 현황

-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 이용자 수가 연인원 기준으로 집계되어 있어 실제 몇 퍼센트의 청소년이 한 번이라도 시설을 이용했는지,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어떤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 거리·교통 등 이용 제약 요인과 연령별 이용 편차를 분석하여 시설과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고, 청소년 정책과 시설을 전문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14.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현황

-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무상 임대라는 이유로 제출 자료에서 누락되어 있으나 다른 무상 사용 건은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만큼, 계약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함께 기재해 주기 바람. 또한 꼬마대장 어린이집의 새벽 시간대 운영 현황과 배치 인력에 대해서도 실제 이용 아동 수와 함께 관리해 주기 바람.

15.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 다오름 젠더교육센터의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지원 사업은 수년간 2천만 원 규모로 유지되어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되면서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예산 증액이나 교육청 예산 확보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6. 부서별 소관 위원회 현황

- 연도별 소관 위원회 기재에 오기가 있어 2024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여 정정 바람. 또한 청소년기본법이 2026년 4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10월 29일 시행되면서 제11조에 따라 시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된 만큼, 조례 개정과 위원회 설치 준비에 참고해 주기 바람.

[스마트정보과]

1. AI 민원 플랫폼 구축 사업 현황

- AI 챗봇은 7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 중이나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응답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9월 대시민 서비스 개시가 예정되어 있어, 어느 수준의 정확도가 확보되면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함.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시민이 신뢰하고 따르는 만큼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자료의 즉시 현행화와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부서별로 명확히 하는 지침을 갖춰 주기 바람.
- 아울러 AI 보이스봇은 보안성 검토가 지연되어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 구축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현황 및 관리

- AI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18억 2,400만 원이 투입되어 관제 효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관제사가 화면을 확대하거나 회전 카메라 방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조작 기록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남도록 관리하는 한편, 수탁업체의 관제사 채용 시 관련 자격증 소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탁업체에 건의해 주기 바람.
- 관제사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과 월 1회 이상 직무·개인정보·보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CCTV가 2017년 개소 당시 1,000여 대에서 현재 4,237대로 늘고 관제 권역도 3개로 확대된 만큼 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상 보관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있어 유관기관의 장기 자료 요청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저장장치 확충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 주기 바람.
- 지중에 매설된 회선 선로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장애 발생 시 선로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유지보수 과정에서 확인되는 선로 정보를 기록·축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람. 아울러 선별관제 실적 중 상당수가 도시가스 굴착 관련 기타 항목으로 집계되어 범죄예방·실종자 발견 실적과 차이가 큰 만큼 실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선별관제가 적용되지 않은 536대에 대해서도 학교 등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연동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CCTV 설치 및 정기점검·유지보수 관리

- 2025년 남부권에서 낙뢰로 인한 카메라 고장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 기상 이변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폭우·낙뢰 시기에 오히려 CCTV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복구 체계를 유지해 주기 바람. 또한 방범시설 지원 예산이 2023년 28억 2,600만 원에서 2024년 17억 1,000만 원으로 39.5% 감소하였다가 2026년 20억 1,900만 원으로 회복되는 등 변동이 큰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 최근 회전 카메라보다 고정 카메라 설치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사각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설치 지점의 특성에 맞게 계속 검토해 주기 바람. 유지보수 계약에서 단일 품목 50만 원 이상만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품 단가의 적정성을 시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단가표 확인 등 검증 절차를 갖춰 주기 바람. 아울러 읍면동별 설치 편차가 큰 만큼 인구 수와 면적을 함께 고려하여 지역 간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4. 정보보안 및 스마트 행정서비스 추진 실태

- 2025년 PC 내 개인정보 검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업무상 개인정보 취급 업무가 늘고 검출 프로그램 성능이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보유·관리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만큼 점검 방식과 사전 관리 기준을 함께 개선해 주기 바람.

- 또한 2026년 정보보안 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미실시가 지적된 만큼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산하기관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현재 테이프 방식으로 10일 이상 소요되는 백업 복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디스크형 원격지 백업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람.

5. AI·IoT 센서 기반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 사업 현황

- 총사업비 6억 9,200만 원(국비 4억 8,0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2026년 12월까지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을 완료할 계획이나, 정보 수집 대상인 예천지구와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광판 등 시설물을 먼저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특히 동부전통시장 주변은 공사 차단막으로 인도까지 점용된 상태여서 설치 위치 자체가 불분명한 만큼 실시설계 도면을 제출하고 설치 시기와 위치를 재검토해 주기 바람.
- 또한 3월 발주와 5월 착수 이후인 6월에야 관련 부서 협의가 이루어져 절차상 순서가 맞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는 시점은 주차장 준공 이후가 되는 만큼 국비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충실히 진행해 주기 바람.

6. 드론 보험 및 통신 비용

- 보유 드론 7대 중 2대를 군 부대와 산업단지 예찰용으로 외부에 대여하고 있으면서 보험료와 수리비는 서산시가 부담하고 있음. 업무협약에 따른 상호 협조 관계인 점은 이해하나 대여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을 정리해 두기 바람. 아울러 드론 통신료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5대분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요금제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7. 유지보수 관리 용역 업체 현황

- 유지보수 관리 용역에 지역업체와 외부업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전

문 기술과 계약 금액 기준에 따라 외부업체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다만 단가 차이로 지역업체가 수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업체가 경쟁력 있는 단가를 제시할 수 있게 안내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스마트정보과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8.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 부춘산 등산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총사업비 5억 9천만 원 규모로 2025년 12월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나 추진 경과와 설계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이 지연되었음. 요구 자료가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9. 서산시 임대건물 현황

- 통계상황실로 사용 중인 임차 사무실에 대하여 종전 사무실 위치와 이전 사유, 임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10. 부서별 소관 위원회 현황

- 연도별 소관 위원회 명칭 기재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확인하여 정정 바람. 또한 CCTV 설치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범죄 유형과 생활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방범용 CCTV 설치는 민원 접수 순서보다 지역의 위험도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람.
- 아울러 2023년 3회, 2024년 1회 전기공사에 따른 정전으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이 정지되어 영상 저장을 포함한 전체 업무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무정전 대책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체육진흥과]

1. 서산시 체육회 및 각 종목단체 지원 관련

- 체육회 이사가 2024년 대비 2026년에 17명 증가하여 현재 이사 64명, 임원진 전체 7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증원 사유와 종목단체 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관리해 주기 바람. 또한 체육회에 가입하지 않은 신생·소규모 종목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정식으로 구성된 종목단체는 체육회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2026년 7월 기준 배드민턴 3억 4,700여만 원(46.7%)과 축구 2억 8,200여만 원(38%) 두 종목이 종목단체 지원액의 약 84.8%를 차지하는 반면 검도·보디빌딩·복싱 등은 지원액이 급감하거나 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대회 개최·출전 실적에 따른 지원이라는 설명과 별개로 종목별 지원액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배점 근거를 정비하여 종목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2. 서산 코스모스 황금들녘 마라톤대회 개최

- 참가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주차와 교통 혼잡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년 임시 주차장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셔틀버스 이용률도 저조한 상황임. 참가 규모에 맞는 주차·셔틀·교통통제를 포함한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람.
- 또한 코스모스길 조성사업비가 2023년 4,500만 원에서 2026년 1억 3천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대회 개최비 외에 코스모스길 조성, 주차장 임차, 셔틀 운영 등 부대비용이 함께 투입되고 있으므로 총사업비를 산출하여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효과를 포함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3.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

- 축구장과 야구장, 수영장 등 주요 체육시설이 생활체육 규모로 조성되어 규격이 맞지 않아 전국단위 대회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도민체전 개최 시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시설 규격 확보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또한 육쪽마늘 테니스대회가 마늘 축제 시기와 맞지 않게 개최되고 있고 육쪽마늘 축제도 주 생산지가 아닌 곳에서 개최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 주기 바람. 아울러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숙박·음식업 등 지역경제 효과를 파악하고 숙박요금 과다 청구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기 종목단체가 다수 있는 만큼 협회의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종목단체에 유치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4. 시설별 유지보수 예산 집행 내용 관련

- 서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시설의 안전관리와 청소 상태가 미흡하다는 언론 보도와 민원이 제기되었고 현장 확인 결과에서도 정돈이 필요한 상태가 확인됨. 위탁 청소 인력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 또한 성연 국민생활체육센터 주차장 입구 분리수거 장소의 정비와 주차장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며, 1층 도서관이 2층 시설의 소음에 노출되는 문제와 에어로빅실 조명 개선 요구 등 이용자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주기 바람.
- 서산 국민체육센터는 2025년 이용자 중 60대 이상이 5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영 강습 접수가 2020년부터 100% 인터넷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연령별 신청 성공률이나 관련 민원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고령 이용자가 접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5. 체육시설 확충 관련

- 체육시설 확충 17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1,314억 원이며 이 중 시비 비중이 83.9%로 국비 11.4%, 도비 4.6%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만 10개에 이름.
-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라며, 파크골프장이 지역별로 계속 확충되고 있는 만큼 세대 간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 구성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축구장을 다수 조성하고 있음에도 규격이 맞지 않아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야구장 역시 같은 상황임. 서산시 체육시설의 부족 정도와 이용 실태, 지역 간·세대 간 이용 균형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마련하여 시설 확충 계획에 반영하고, 신규 시설은 전국단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을 갖추어 조성해 주기 바람.

6.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단체 육성

- 청소년 체험교실이 2024년 4종목 205회 2,706명에서 2025년 3종목 155회 1,570명으로 감소하였고, 국·도비 축소로 2027년 이후 사업 축소가 예상되고 있음. 감소 원인을 수요·종목·장소·지도자 등 운영 여건별로 분석하고, 청소년 대상 생활체육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보완해 주기 바람.

7. 서산 야구장 조성사업

- 야구장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2024년 11월 중간보고회가 시장실에서 내부 인원 중심으로 개최되었고 야구협회 협의 과정에서도 의견수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2024년 12월 입지가 선정되었음. 또한 야구장 195억 원, 축구장 285억 원 등 총 48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야구장보다 축구장 사업비가 더 크게 산정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음. 사업비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야구 동호인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 바람.

8. 읍면동별 야외 체육시설 점검 및 실태조사

- 읍면동 야외 체육시설은 설치 이후 이용률이 낮고 옥외에 설치되어 부식이 빨라 보수 요구가 반복되고 있음. 재배정 예산의 신규 설치분과 보수분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해 주기 바람.
- 또한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동기구의 내용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야외 체육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실내 운동기구 보강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9. 클라이밍장 건립사업

- 클라이밍장은 2022년 건립계획 수립 이후 2025년 12월 준공되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지도사 배치와 안전요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 개시 예정 시점인 내년 7월까지 약 20개월간 30억 원 규모의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임. 사전 시장조사와 운영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준공이 이루어진 데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직영·체육회 위탁·민간위탁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여 개장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 관내 민간 클라이밍장 2개소와 산악연맹 등에 자문과 인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인건비 문제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식 개장 이전이라도 안전요원을 포함한 인력을 확보하여 주말 임시 개장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히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0.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임차료 현황

- 착륙장은 매입하였으나 이륙장은 토지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동호인 이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토지주와 협의를 계속하여 매입 가능 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기 바람.

11.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

- 인지초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서 2026년 2월 기본설계 완료, 2027년 9월 준공을 제시하였음에도 착수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 문화유적 시굴조사와 도 건설기술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제시한 계획대로 연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12. 국비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

- 국비를 확보한 체육시설 사업은 반다비 체육관, 인지초 생활SOC, 팔봉 국민체육센터 3건에 그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임. 대형 사업이 다수 예정되어 있어 시비 부담이 큰 만큼 특별회계, 체육기금, 도비 공모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기 바람.

[경로장애인과]

1.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및 예산

-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2023년 약 16억 원에서 2026년 약 19억 원으로 17% 증가한 반면 배정 인원은 118명에서 127명으로 7.6% 증가에 그쳐 예산 증가율과 인원 배정 비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 바람. 또한 2023년과 2026년 모두 배정 인원과 채용 인원이 서로 맞지 않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정리하여 제출 바람.
- 아울러 장애인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은 2025년 지원 인원 46명, 2026년 37명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예산액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인원 변동에 따른 사업 운영 내용이 함께 조정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기 바람.
-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업무 강도가 높음에도 보수와 근로조건이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자차 이용에 따른 차량비 지원 문제로 이용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또한 활동지원사는 감정노동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통한 심리상담과 전문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지적·지체장애인을 위한 체육·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기 바람.
- 2026년 배정 인원 127명 중 2명은 수요처 미확보로 미배치 상태임에도 자료에는 참여자 127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사업 실적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채용 인원 수치도 일치하지 않음. 전년도 제출자료와 대조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정확한 실적이 제시되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장애 유형과 능력에 맞는 적합 직종 발굴,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로의 연계, 2년 참여 후 지속 근무를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 건의 등 세 가지 사항이 1년이 지나도록 진

행되지 않았음.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2.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환경정화 활동이 도로변에서 이루어지면서 안전사고가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음.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경증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실내 중심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장애인 일자리 대기자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 또한 어르신들이 원거리에서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마을 단위 환경지킴이 운영 등 근무 형태를 세분화하여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보상 승인 건수가 상당한 만큼 안전교육을 보다 충실히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줄여 주기 바라며, 노인 일자리 배상책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로 알려주기 바람.
- 노인 일자리 대기자가 2025년 615명, 2026년 68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 노무 위주의 사업 구성으로는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움. 내년도 역량 활용형 일자리 확대와 국·도비 확보를 통해 참여 기회를 넓혀 주기 바람.
- 서산시 노인 인구가 4만 2,099명으로 전체 인구의 23.7%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향후 증가할 수요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규모와 안전사고 대책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람.
- 요구자료에는 대기자 현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시 자체사업 부분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전체 대기자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움. 수행기관별 대기자 현황을 포함한 자료를 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 바람.

3. 최근 3년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안전사고 적발 및 조치 현황

- 2026년 7월 말 기준 노인학대 신고 6건 가운데 자료상 판정이 확인된 것은 2건에 그치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와 심의, 재조사 등으로 통상 3~4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1~2월 접수 건도 아직 판정되지 않은 상태임. 신고 접수부터 조사·판정·피해자 보호조치까지의 진행 단계를 관리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시설 내 분리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확인해 주기 바람.

4.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지도 관리 관련

- 장애인 단체는 지도·점검 규정이 없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상시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 운영 실태와 안전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은 실시되지 않고 있음.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 조치와 이행 결과를 자료로 제출 바람.
- 또한 인권지킴이단 회의가 일부 시설에서만 개최되고 있으므로 정기회의가 시설별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인권침해 신고·상담 사례를 지속적으로 살펴주기 바람.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시정 3건 가운데 서산시장애인이동지원센터의 피난기구는 2027년에야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또한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단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현황에 포함되어 있어 점검 대상으로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식과 위원회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주기 바람.
- 지적 사항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점검 횟수를 늘리기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므로 그 관점에서 점검 체계를 관리해 주기 바람.

5. 장애인 지원사업 관련

- 장애인 단체가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프리마켓은 비장애인 행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 참여가 어려운 여건이 있어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올해 행사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람.
- 또한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어 회의 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체 운영비로도 충당이 어려워 불편 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완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람.

6.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이전 계획

- 장애인복지관은 당초 216억 원 규모의 신축 계획에서 공공서비스센터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 절감과 조기 이전이 주요 사유였음. 그러나 사업비 69억 6,500만 원(설계비 4억 9,600만 원 포함)으로 예산은 절감되었으나 이전 시기는 2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데 그쳐 당초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 시설 특성상 설계와 인증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남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이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기 바람.

7.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자립 지원

- 활동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활동지원사 부재나 매칭 문제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기자와는 다른 서비스 공백 지표임에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기관별 미매칭과 서비스 중단 사례를 파악하고 활동지원사 부재 시 대체 인력 연계와 기관 간 협조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관리해 주기 바람.
- 또한 활동지원사의 자차 이용에 따른 근거리 이동 유류비가 지원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8. 서산시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 만족도 조사 결과가 3년 연속 100%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우울증 프로그램 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정량 조사 결과임. 조사 대상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정성적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여 주기 바라며, 운영 인력이 3년간 2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만큼 상담 건수와 소요 시간, 타 시 운영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규모를 검토해 주기 바람.
- 2026년 개인상담 실적이 1,170건으로 2024년과 2025년 연간 실적보다 많게 나타난 것은 경로당 방문을 통한 기초상담이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됨. 상담 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적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기 바람.

9.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지원사업 현황

- 통합 돌봄 전담 인력은 당초 21명 배치 계획이었으나 임용시험 미달로 충원이 지연되어 현재 7명이 추가 채용 확정된 상태임. 사업 확대와 대상자 증가에 맞추어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기 바람.
- 또한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통상 30일이 소요되고 읍면동별 대상자 발굴 실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전담팀이 함께 발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주기 바람.
- 본인부담률 확대 요청이 즉시 시행된 점은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제출자료에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기 바람.

10.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 두리사랑 단기보호시설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정산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사유가 시설 위치 여건에 따른 종사자 미채용으로

확인됨. 종사자 채용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11.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 노인 인구 4만 2,099명 가운데 경로당 회원은 1만 7,877명으로 42.5% 수준이어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정책과 현장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등과 협조하여 회원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또한 경로당 운영비가 회원 수와 관계없이 연 300만 원으로 일률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수선비 등 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경로당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소통해 주기 바람.
- 아울러 한국전쟁참전자 경로당과 주공3단지 경로당의 냉난방비 제외 사유는 각각 보훈회관과 석림사회복지관에서 관리·지원하는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료에 그 사유가 함께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경로당별 대상 인원과 지원 현황이 제출자료에 제시되지 않았고 운영비 총액도 경로당 수와 정액 지급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해 주기 바람. 경로당별 이용 인원과 면적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운영비 차이가 큰 만큼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주기 바람.
- 프로그램 미운영 경로당이 2024년 33개소에서 2026년 42개소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서지역과 강사 미배치 등 사유별로 관리하여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살펴주기 바람.
- 또한 동문 51·53통, 수석 4·6통 등 경로당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타 지역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5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임차 건물이나 상가 리모델링 등을 포함하여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12. 서산시 임대건물 현황

- 중증장애인 직업자활지원센터는 보증금 3억 5천만 원 외에 월 임차료 200만 원을 시설 자체 수입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부담 수준이 적정한지 확인하여 관리해 주기 바람.

13.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

- 서산희망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119억 1천만 원에서 약 180억 원 규모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회와 도 심사를 추가로 거친 것으로 확인됨. 사업 계획 단계에서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14.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 제출자료에 석림 단기보호시설 보조금 집행액과 잔액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오기가 확인되므로 자료 작성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해 주기 바람.
- 또한 노인 고용장려금은 2025년 예산 1,700만 원 중 377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22%에 그쳤음에도 2026년 예산이 증액되어 있음. 기업의 고령자 채용 기피 등 집행 부진 사유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정산 시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함께 확인해 주기 바람.

15.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소관 위원회 현황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자료로 제출 바람. 또한 서산시 노인일자리창출지원협의회는 수행기관 평가를 위해 연 1회만 개최되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방향과 필요 분야를 심의할 수 있도록 연 2회 정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6. 경로장애인과 소관 전반

-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의 응답률이 2.2%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독거노인 공동생활 제도가 도 지정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확대가 가능하도록 도에 건의해 주기 바람.

[세정과]

1. 감면 후 추징 대상 조치 여부

- 제출자료에 완료된 추징 결과만 제시되어 있어 최근 3년간 추징 대상으로 확인된 전체 건수와 세액, 미완료 건수를 함께 확인하기 어려움. 감면 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자료에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2. 신규 세원 발굴 실적

- 신증축과 개발행위 미신고에 따른 일반조사 추징액이 2024년과 2025년 모두 10억 원 내외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음. 부과 규모보다 확정 징수 실적과 잘못된 부과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실과와의 소통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 주기 바람.

3.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진행 현황

- 공동주택 수가 2025년 5만 3,097호에서 2026년 5만 3,037호로 감소한 사유가 읍내동 아파트 멸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또한 검증 수수료 확정 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 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기 바람.

4. 최근 3년 세수 확보

- 도세 징수율이 시세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사유가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행위 감소와 취득세 감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세수 추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5. 법인 세무조사 추진 현황

- 2024년과 2025년 모두 40개 법인을 조사하였으나 추징액이 2억 4,400만 원에서 4억 4,7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특정 법인이 아닌 미신고·과소신고가 전반적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임. 추징 실적뿐만 아니라 정확한 과세와 성실신고 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활용해 주기 바람.

[징수과]

1.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현황

- 답례품이 18개에서 30개로 확대되었음에도 타 지자체와의 모금 격차가 계속되고 있음. SNS·지하철 광고와 실과별·단체별 교차기부 등 현재 추진 중인 활동을 지속하면서 모금 방식을 보완하고, 기금이 지역 발전과 농특산물 홍보라는 제도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논산시는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에서 담당하며 서울사무소와 향우회를 활용해 높은 실적을 내고 있는 반면, 서산시는 징수 업무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 기업체 방문 시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등 홍보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조직진단 과정에서 소관 부서 조정 필요성을 충분히 제기해 주기 바람.

2. 과오납금 발생 건수·사유 및 환급 현황

- 과오납 사유 중 국세 경정 외에 착오 신고와 이중 납부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하여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하거나 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자동차세의 경우 선납 이후 소유권 이전이나 사망 등으로 환급이 발생하

는 구조이므로 환급 사유가 신고 오류와 구분되어 제시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기 바람.

3. 고향사랑 기금 사업 추진 관련

- 기금 사업이 선정된 이후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유소년 드론축구대회와 같이 소관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청소년 분야 사업이 업무량이 많은 가족지원과에 집중되고 있음.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연계와 배치를 조정해 주기 바람.
- 2026년 기금 사업비 약 2억 4,800만 원이 청소년 배틀댄스, 퓨전국악, 해외연수, 드론축구대회 등 청소년 육성 사업에 집행되고 있음.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기 바라며, 2026년 6회 개최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 바람.

4.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징수율 제고

- 체납액이 120억 원 내외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는 연 10세대 미만에 그치고 있음. 2027년 기동징수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직이 구성되면 실질적인 징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 바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 체납은 장기화되면 징수가 어려워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징수 전략을 강화해 주기 바라며, 2026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이 역량을 갖추어 실태조사와 영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5.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

- 답례품 지급액이 2024년 4,200만 원에서 2025년 1억 3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수불대장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주문과 발송, 정산이

시스템 내에서만 확인되고 있음. 실제 주문량과 업체 발송량, 지급액을 교차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갖추어 관리해 주기 바람.

-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누리집의 사업 소개와 답례품 안내가 타 지자체에 비해 가독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화면 구성을 점검하여 개선해 주기 바람.

6.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현황 관련

- 논산시 등 모금 실적이 높은 지자체의 운영 방식과 답례품 구성을 벤치마킹하여 서산시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7.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체계 강화

- 2025년 정리보류액 중 소멸시효 완성이 6억 7,500만 원에 이르고 있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와 재산조회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사전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정리보류 이후에도 재산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주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1. 공공청사 계약전력 및 월 전기료·평균 사용전력

- 공공청사의 계약전력은 각 소관 부서가 개별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계약·관리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계약전력의 적정성을 점검할 체계가 없는 상황임. 최대전력이 계약전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사가 다수 확인되므로 청사 관리 부서 및 에너지 절약 부서와 협의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정 가능한 부분은 개선해 주기 바람.

- 또한 제출자료 중 성남동과 농산물 공동가공센터의 사용량 감소, 버드랜드사업소의 연도별 월평균 사용량 편차, 2025년 4월 수치의 과다 기재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 부서별로 취합한 자료도 수치와 사유를 확인한 뒤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2. 서산 동부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로 제시된 지하 매설 고압전력 선로, 한성필하우스 경계부 L형 옹벽 저판, 다량의 지중 폐기물은 모두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인되었어야 할 사항임. 설계 과정에서 지하 시설물과 인접 구조물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사전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 또한 2025년 9월 공사계약 이후 2026년 4월까지 주요 공정 진척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음. 조기집행을 이유로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공정 관리를 강화하여 2027년 5월 31일 이전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 아울러 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포기에 따라 도면 변경이 별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포기 사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바라며, 총사업비 100억 원 외에 방수 누락, 철골 안전난간 누락, 소방 노무비 누락 등으로 약 13억 원의 증액이 예상되는 만큼 감사 부서의 컨설팅을 통해 과다 산정 여부를 엄정하게 검토해 주기 바람.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및 부정유통·판매대행 수수료·가맹점 관리

-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발행액의 최대 0.9%에 이르러 발행사업비 부담이 크므로 조폐공사 수수료 인하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기 바람.
- 또한 지류 판매 시 판매대행점별 잔여 판매액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없어 헛걸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판매대행점별 잔여 금액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혹서기·혹한기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판매대행점에 협조를 요청해 주기 바람.
- 아울러 공적 지위에 있는 판매대행점 관계자나 개인사업자의 지인 명의 구매 등 부정 유통 사례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례를 수집하여 판매대행점과 가맹점에 안내·지도해 주기 바람.

- 서산사랑상품권이 발행 직후 수 시간 만에 소진되고 있으며 발행액은 2023년 1,075억 원에서 2024년 803억 원, 2025년 715억 원으로 조정되어 왔음. 1인 구매한도 축소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되 수요를 반영한 발행 규모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4.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 동부전통시장 240개 점포 중 도시가스 공급은 86개 점포에 그치고 있으므로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점포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라며, 해미전통시장 비가림 시설은 당초 정비사업 단계에서 함께 추진되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향후 사업 계획 시 참고해 주기 바람.
- 또한 전통시장 화재보험은 가입 점포에만 지원되고 있어 미가입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시장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상인회를 통해 전 점포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신규 입점 시 준수사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기 바람.
- 아울러 2026년 설치한 동부시장 전광판의 송출이 일정하지 않다는 상인 의견이 있으므로 작동 실태를 점검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해 주기 바라며, 점포별 홍보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도 공모사업 등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담당자 1명이 수행하고 있어 현장 실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업무 여건을 살펴주기 바람.
- 전통시장 지원 사업비가 2025년 55.4%, 2026년 46% 등 점포 수가 적은 해미전통시장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시장 규모를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 또한 동부시장 수산시장 구역에서 우천 시 누수가 계속된다는 상인 의견이 있으므로 아케이드 코킹 부위 등을 상인회와 함께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라며, 수산물 외 업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판로 개척과 디지털 전환 공모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5.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사용자 단체인 서산상공회의소가 수탁 운영하고 있어 임금체불 등 근로자 권익 사안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탁기간 종료 후 운영 주체의 적정성을 행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람.
- 수탁기관 선정 시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AI 챗봇 개발·운영, 분기별 시설·직원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자유건의함 운영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제안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상담 내용을 체류·임금체불·산업재해·근로계약 등 유형별로 분류·관리하여 향후 평가와 재수탁 심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람.
- 또한 문화행사 소모임 지원이 연도별로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만족도 조사 참여 인원이 연인원인지 실인원인지 구분하여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만족도 조사가 한국어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역·노무·법률 상담 등 센터의 핵심 기능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포함하여 조사해 주기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 유치와 정착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 주기 바람.

6.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추진 성과 제고

- 청년 일자리 참여 기업이 2023년 63개소에서 2025년 48개소로, 고용 인원도 110명에서 79명으로 감소하였고 중도 퇴사 28명, 지원 종료 후 퇴사 28명이 발생하였음에도 퇴사 원인에 대한 기업별·업종별·근로조건별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퇴사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고용 유지율이 높은 기업 선정과 지원 요건 개선에 반영해 주기 바람.
- 또한 참여 기업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의 희망 직종과 기업의 채용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만큼, 추진 중인 종합 고용대책 용역에 청년 선호 직종과 업종별 퇴사율 분석을 포함하여 사업 방향을 조정해 주기 바람.

7. 공설시장 및 전통시장 운영

- 시장별 실태조사 결과 점포 수가 연도별로 변동하는 사유가 빈 점포 발생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료에 그 사유가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빈 점포가 발생하는 즉시 공개 추첨을 통해 입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관리해 주기 바람.
- 신규 입점 점포 수가 제출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여 정리해 주기 바라며, 빈 점포를 채울 때 하수 설비 등 시설 요건 외에 시장 전체의 업종 구성과 고객 유입을 고려한 기준이 없는 상황임. 상인회와 협의하여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업종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점포 관리 자료가 업종 변화와 취약 구역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축적해 주기 바람.

8.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 지원 신청이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서류 작성이 어려운 고령 소상공인이나 노포는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통장협의회 등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9.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관련

-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산 내역에 시비가 자부담으로 표기되고,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의 총사업비가 자료마다 42억 2,400만 원과 38억 200만 원으로 다르게 기재되는 등 오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해 주기 바라며, 소상공인 브랜드 지원사업 60개 업체의 업체별 지원 금액을 자료로 제출 바람.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그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홍보 부족인지 수요 감소인지 분석하여 다음 연도 사업 설계와 홍보 방식에 반영해 주기 바람.
- 또한 2025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은 예산 1억 원 중 2,582만 원만

집행되었으며 이는 당해연도 신규·갱신 가입자만 지원 대상이 되고 건물 등급 1·2등급으로 한정되는 데 따른 것임. 기존 가입자와 3·4등급 건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에 계속 건의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예산 규모를 검토해 주기 바람.

10. 서산시 비정규직센터 운영

- 2026년 5월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97개 공동주택 휴게시설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경비실 휴게시설 문제는 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이미 제기된 사항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비 시설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기 바람.
-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노동단체와의 협력과 현장 접근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된 이후 직영으로 전환된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음. 센터 이용 실적과 무료 노동상담을 통한 체불임금 해결 실적 등 관련 자료를 2024년부터 연도별로 제출 바람.
- 비정규직센터는 상담과 권리구제에 그치지 않고 고용 형태와 업종별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분석하여 고용 안정 방안을 연구하는 역할이 필요함.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과 소통하여 서산시 고용구조 개선에 활용해 주기 바람.
- 또한 권리구제 실적이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접근성 문제인지 다른 기관으로 연계된 것인지 원인을 파악해 주기 바람.

11.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 2025년 제4회 추경에 편성된 주민 수익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이 명시이월된 만큼 2026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12. 서산시 임대건물 현황

- 비정규직센터로 사용하던 문화회관 앞 건물은 2025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기류 보관 용도로 계속 임차하며 월 50만 원의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음. 보관 장소를 확보하여 조속히 정리해 주기 바람.

13. 국비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

- 20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의 국비·도비·시비 내역과 국비 집행액·확보액이 서로 맞지 않게 기재되어 있고, 2026년 착한가격업소 관련 사업이 자료에서 누락되어 있음. 자료 작성 시 확인 절차를 거쳐 제출해 주기 바람.

14.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 소관 위원회 현황에 서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가 누락되어 있으며 연도별 위원회 수도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관련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누락된 위원회 자료를 제출하고 제도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기 바람.

15.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반

- 서산사랑상품권이 지류 30%, 모바일 70%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매월 1일 지류 구매를 위한 장시간 대기와 번호표 관련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모바일 사용처가 당초 취지인 전통시장·소상공인 외로 확대되는 측면도 있음. 선할인 방식 외에 적립(캐시백)형·카드형 도입을 검토하여 대기 불편과 부정 사용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월별 구매 인원 자료를 제출 바람.

[보건정책과]

1.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지원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강화

- 공중보건의사가 22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하고 의과는 1명에 그쳐 순회진료가 팔봉·부석 2개 지역으로 축소되었음. 제한된 인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가 중요한 만큼 보건지소별 수요와 배치 기준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공백에 대비한 보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람.
- 또한 2026년 4월 변경된 진료활동 장려금이 공중보건의 확보와 근무 만족도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확인하여 다음 연도 지원 기준 조정의 근거가 남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 한의과 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은 본소와 지소의 업무량 차이를 반영한 것이나, 의료취약지 지소는 진료 건수가 적더라도 진료에 소요되는 부담이 클 수 있어 지역 여건 차이가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공중보건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상황을 지켜봐 주기 바람.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현황

-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2023년과 2026년 각 1회 개최에 그치고 있어 공중보건의 감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 지역 현안이 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어르신 인구 증가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람.

3.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 공중보건의가 3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면서 원격협진 모형이 지소 모형에서 진료소 모형으로 변경되고 대상자도 축소되었음. 기존 대상자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원으로 연계되도록 조치한 점은 확인되나, 고령자의 청

력·시력 저하에 따른 음향·화면 보강 등 운영상 문제점은 장비 교체를 통해 조속히 개선해 주기 바람.

4. 응급의료 기반 구축 및 대응체계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대상이 2023년 265대에서 2026년 348대로 늘고 점검 완료율은 100%로 관리되고 있으나, 시민이 응급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기기의 위치를 실제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위치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위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5.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 2026년 6월까지 네 차례 정기 하자검사에서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나 한 달 뒤인 7월 우천 시 창틀과 천장 누수가 발견되었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027년 7월 17일 종료되는 만큼 방수·창호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기간 만료 전에 종합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기 바람.

6. 의약행정 관리

- 닥터헬기 이송 건수가 2019년 181건에서 2025년 11건으로 감소한 것은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운영 등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헬기장 제초는 타 부서와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주변 오염물질 등 상태 점검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람.

7. 보건지소 및 진료소 노후시설 보수공사

- 대산지소는 1998년, 가강진료소는 1997년 준공되어 30년 가까이 경과하였고 누수 등 반복적인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노후 시설의 보수 비용이 계속 증가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 계획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보건지소 결원 인력도 신규 배치를 통해 보강해 주기 바람.

8. 마약 중독 예방 계획 및 관련 현황

-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사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안전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현황도 관리되지 않고 있음. 의료용 마약 관리와 별개로 가족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9. 보건정책과 소관 전반

- 공용차량 16대 가운데 장기 임차 차량은 차량 배치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수기로 관리되고 있음. 1년 이상 장기 임차 차량도 공용차량에 해당하므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배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해 주기 바람.

[정신보건위생과]

1. 식품접객업 시설조사 및 위생관리

- 배달 전문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으나 배달 취급 업소의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인허가 단계의 시설 기준 지도와 시기별 점검을 계속하면서 배달 영업의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비자 민원 처리 결과가 신고인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해 주기 바람.

2. 최근 3년 자살예방 사업 현황

- 우울척도 고위험군 365명 중 사례관리 등록은 221명으로, 발굴된 대상자가 실제 서비스로 연결되지 않은 사유가 유형별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미연계와 서비스 이탈 사유를 유형화하여 재접촉과 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자살예방 교육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경로당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고위험군 발굴에는 한계가 있음. 적십

자봉사회 등 멘토링 참여 단체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은둔 상태의 대상자 발굴에 더 힘써 주기 바람.

- 자살 고위험군이 고령층뿐만 아니라 청년·중장년층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전 세대에 걸친 발굴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 주기 바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추진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보·퇴사·휴직이 반복되어 담당자 1인당 26명을 관리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 정신건강 사례관리는 담당자와의 관계와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담당자 변경 시에도 고위험군 사례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별 공백 대응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람.

4.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및 산후우울증 사업

- 심리상담 바우처는 1인당 8회로 종료되며 이후 등록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음. 상담 종료 이후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주기 바라며, 산후우울 상담은 원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산부인과·보건소·의료원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 또한 임상심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 채용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람.

5.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 2025년 지도점검 건수가 자료마다 2,115건과 1,384건·786건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행정처분 업소 455개소와 위반 유형별 건수도 서로 맞지 않으므로 확인하여 자료로 제출 바람.

- 또한 과태료를 부담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람.

- 무신고 영업 적발이 2025년 65건에서 2026년 11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행사 증가와 푸드트럭 영업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됨. 계도 이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조치와 함께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안내해 주기 바람.
- 동일 업소의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재적발 시 처분이 가중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반복 위반 사례가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운영해 주기 바람.

6.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 정신재활시설 2개소의 사회복귀 실적과 직업 프로그램 참여 현황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도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예산 증액이 시설 환경과 프로그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기 바람.
- 또한 지도점검 결과가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권진정함 운영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접수된 민원 내용과 조치 결과가 자료에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 위치한 아파트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설명도 계속해 주기 바람.

7. 치매 예방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사업

- 치매안심센터는 14명 정원에 출산휴가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등록 관리 대상이 3천 명을 넘고 있음. 국·도비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총액인건비에 묶여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력 확보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가족교실·자조모임·힐링 프로그램이 소규모에 그치지 않도록 장소와 인력을 보강해 주기 바람.
-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소진이 큰 질환이므로 가족 대상 프로그램과 상담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확보된 국비 예산 범위에서 외부 전문 상담 인력이나 집단상담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발굴하여 자체 인력 부족을 보완해 주기 바람.
- GPS 배회감지기 보급이 2025년 17명 등 등록 치매환자 3천여 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임. 배회 가능성이 있는 중증 치매환자에게 충분히 보급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과 협의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8. 마약 중독 예방 계획 및 관련 현황

- 마약 중독 관련 사례관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실제로는 2025년 이후 교도소 출소 통보 4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됨. 본인 동의가 없어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이 자료에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현황 관리는 계속해 주기 바람.
- 마약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사법기관 검거 외에는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청소년과 청장년층의 노출도 우려되는 상황임. 연계와 교육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9.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은 국·도비 감소로 2026년 사업량이 크게 축소되었음. 사업 성과가 확인된 사업인 만큼 참여 단체와 멘티 감소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보완해 주기 바람.

10.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 소관 위원회 현황에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여 자료로 제출 바람.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활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기 바람.

[건강증진과]

1. 희귀난치병 질환자 지원사업

- 서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실태조사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질병관리청 조사를 이유로 자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례 제7조의 지원 대상자 발굴도 홍보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읍면동·의료기관을 통한 의뢰는 없는 상황임. 대상자가 1,400여 명으로 파악되는 데 비해 지원자는 63명에 그치고 있는 만큼 조례에 근거한 실태조사와 발굴 체계를 마련해 주기 바람.

2.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현황

- 방문건강관리사 6명이 1인당 약 300명을 관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큰 상황임. 관리군 분류에 따라 운영되고 있더라도 상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찾아가는 건강버스 등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이 의료기관 연계와 등록 관리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기 바람.
- 만성질환 등록 관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연 100명에 한정되어 있음.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고위험군이 예산 소진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주기 바람.
- 또한 심뇌혈관질환은 발병 후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조기 증상 인지와 심폐소생술 등 실습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기 바람.

3.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 현황

- 2025년 통합건강증진 사업 집행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가 공무직 휴직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으로 확인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률을 면밀히 관리해 주기 바라며, 혈압·혈당 인지율과 걷기

실천율 등 감소한 건강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이 실제 행태 변화로 이어지는지 관리해 주기 바람.

4. 우리 동네 건강 지키기

- 우리 동네 건강 지키기 사업이 연 1회 걷기 행사 중심의 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명칭과 목적에 비해 내용이 제한적임. 예산을 나누어 연중 여러 차례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사업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5. 모자보건 사업 추진 현황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이 2024년 457명에서 2025년 380명으로 감소하였고 난임 한방 지원도 지침 변경으로 감소하였음.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주기 바람.
- 또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은 관내 이용 시 100만 원, 관외·미이용 시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관내 이용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관내 산후조리원 2개소의 시설 노후화로 확인됨. 추진 중인 서산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을 통해 시설과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서산형 안심 산후조리원 지원이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례가 타 시군에서 제기된 바 있으므로, 지원금이 이용자 부담 경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6. 금연 지원 서비스

- 24주 금연 성공률이 2024년 37%에서 2025년 33%로 낮아졌고 재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한으로 실제 지급 인원과 성공자 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라며, 연령대별·성별 흡연율과 금연 성공률 추이를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청소년과 청년층 대상 캠페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 주기 바람.

- 또한 금연지도원 10명이 점검 대상 7,556개소를 담당하고 있어 민원이 반복되는 구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예산 규모와 배치 인원이 점검 대상에 비추어 적정한지 점검해 주기 바람.

7. 국비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

- 국비 사업 자료의 금액 단위가 100만 원 단위로 기재되어 소액 사업이 건수처럼 보이는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자료 작성 시 단위를 조정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민원봉사과]

1. 민원처리 현황

-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가 89.3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평가 지표와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자료에 함께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또한 상습 민원인과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고 담당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음. 향후 분쟁이나 소송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공식 내부 기록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 아울러 2026년 8월 14일 시행된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점심시간 민원실 운영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인근 시군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야간 민원 운영 등 대안을 함께 마련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조례 취지에 맞게 시행해 주기 바람.

2. 생활불편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주민만족도 제고

- 성연 테크노밸리 단지 인근은 면사무소와 거리가 멀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청소년문화의집 등 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판단해 주기 바람.

- 또한 불편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건수 위주로 제출되어 미처리 사항의 사유와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어려움. 법령·조례 근거 부족, 예산 부족 등 사유별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충분히 안내해 주기 바라며, 행정안전부의 민원행정 및 제도 운영 지침 개정사항도 계속 검토하여 반영해 주기 바람.

3. 소규모 생활불편사업 추진 현황

- 소규모 생활불편사업 예산이 본예산 9억 원에 추경 3억 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편성되고 있어 읍면동 배정과 집행이 지연되고 집행 잔액도 발생하고 있음.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본예산 편성 규모를 재검토하고, 읍면동별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4. 보안등 및 가로등 관련

- 보안등·가로등 민원 접수가 2023년 4,953건에서 2026년 6,158건으로 증가하였고 그 대부분이 노후에 따른 점등 불량으로 확인됨. 원격제어 시스템 74.1%, LED 교체 약 60% 수준인 만큼 노후 기자재 교체와 시스템 확대를 계속 추진해 주기 바라며, 2026년 보안등 설치계획에서 제외된 동문2동도 하반기 신청 수요를 반영해 주기 바람.
- 태양광을 이용한 소형 보안등이 일조량이 부족한 날에는 작동하지 않아 설치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소관 부서를 확인하여 실태를 점검해 주기 바람.

5.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조치와 민원처리 기간 유형분석에 따른 개선책

- 민원 지연처리 사유가 퇴근 이후 결재, 행복이음·새올행정시스템 연계 오류 등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시스템 문제에 따른 지연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또한 최근 5년간 폭언·협박 등 악성민원이 700건 이상 발생한 만큼 웨어러블캠 70대, CCTV, 비상벨 등 보호장비가 모든 직원이 필요한 순간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점검을 계속해 주기 바라며, 온통서산 신고 포상제 도입 시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악성민원의 답변서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게 되어 있어 이중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인근 시군의 전문 민원상담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를 조직개편 과정에서 구체화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

6.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행정 개선

- 민원처리 기한 연장 건수가 2024년 868건, 2025년 1,106건에서 2026년 상반기에만 2,64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중 사회복지과가 1,992건을 차지하고 있음. 특정 부서에 연장이 집중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전 부서에 통보해 주기 바람.
- 또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다등급을 받았고 특히 고충민원 부문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민원서비스인 만큼 개별 시책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7.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 담당 부서를 찾지 못해 여러 부서로 전화가 이관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직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됨. 자주 발생하는 민원의 담당 부서를 정리한 간단한 매뉴얼을 배부하고, 스마트정보과가 추진 중인 챗봇과 업무 협의하여 근무시간 중에도 담당 부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기 바람.
- 또한 온통서산은 민원 접수와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임에도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내년 활성화 계획과 함께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악한 개선사항이 민원봉사과뿐 아니라 각 실과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8.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 2026년 8월 14일부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면서 이용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연간 약 2천만 원의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임. 시민 편의가 확대된 만큼 이용 추이를 지켜보며 설치 장소를 검토해 주기 바람.

9. 저지대 침수위험지역 조명시설 개선공사 현황

- 안심2길 굴다리 사업은 당초 업무 성격과 맞지 않는 부서에서 추진되면서 기본적인 환경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가 증가하고 9,300만 원을 들여 분전함 상향과 원격 전력차단 기능을 다시 시공하게 되었음. 사업 설계 단계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내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추어 주기 바람.

[감염병관리과]

1. 한센인촌 관리현황 및 의료지원 현황

- 운산 한센인촌 거주자가 12가구 15명이며 연령이 80대로 고령화되어 있음. 격월 진료와 재가 한센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고령화에 따른 의료·생활 지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펴주기 바람.

2. 방역 현황

- 성충 구제 중심에서 미꾸라지 방류 등 친환경 유충 구제로 방역 방식을 전환하고 있으나 효과가 데이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음. 구제 방식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여 예산 편성 근거로 활용해 주기 바람.

- 구매 약품이 모기 유충·성충 외 여러 해충에도 사용 가능한 제품임에도 민원 응대 과정에서 대상이 제한적으로 안내된 사례가 있었음. 사적 시설은 민간 소독업체 이용을 안내하더라도 민원전담반을 통한 신속한 처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약품의 용도와 유효기간 관리에도 유의해 주기 바람.

3. 감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 관련

- 초미립자살포기가 노후 폐기로 2025년 16대에서 2026년 11대로 감소하였음에도 신규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재확산에 대비하여 필요한 장비는 추가 구입해 주기 바람.
- 또한 2025년 수해 지역 특별방역이 주택 222가구, 상가 279개소, 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자연재해 발생 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해 주기 바라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을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불안 요소를 해소해 주기 바람.

4.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추진실적

- 2025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6건에 대상자 2,354명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관리되었으며 군부대, 초등학교, 축제 등에서 집단 발생이 확인됨. 군부대와 무료급식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해 주기 바라며, 방역 약품은 유효기간 내에 소진될 수 있도록 구매량을 관리해 주기 바람.
-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도비 감액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방식에서 보건소 직접 접종으로 변경되면서 대상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졌음에도 자료에 그 경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음. 조례상 지정 위탁이 가능한 만큼 내년 사업계획과 함께 접종 방식에 따른 대상자와 부담금 차이를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 바람.

5. 감염병 관리현황

- 방역장비 보유 대수가 37대에서 27대로 감소한 사유가 코로나19 실내방역 축소와 노후 장비 폐기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료에 그 사유가 함께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 추석 연휴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에 대비한 접종 계획을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해 주기 바람.

6.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예방의료서비스 확대

- 코로나19 백신의 폐기 비율이 2026년 수급량 대비 5.35%로 나타나고 있음. 일정 물량 확보가 불가피하더라도 폐기량을 줄일 수 있도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접종 홍보를 강화하고 재배분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7. 국비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

- 국비 사업은 국가 시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방접종 등이 대부분인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여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람.

8. 감염병관리과 소관 전반

- 우천 시 방역소독 불용액이 연도별로 8천만 원, 5천만 원 등 상당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방식과 산출 기초를 점검하여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 또한 결핵 환자가 2025년 이후 증가하여 2026년 8월 기준 59명에 이르고 쯔쯔가무시증 발생도 줄지 않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음. 발생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산이 우려되는 분야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편성 방식을 조정해 주기 바람.
-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생백신과 사백신의 접종 기준이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접종 이력 확인 방법과 재접종 권고 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해 주기 바람.

- 건강취약계층 60세 이상 대상자가 1만 1천여 명인 데 비해 2024년 이후 대상포진 무료접종 인원은 766명에 그치고 있음. 백신 종류에 따른 예방 효과와 단가 차이를 고려하여 보건소 직접 접종과 의료기관 위탁 중 어느 방식이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비교·검토해 주기 바람.

[종합사회복지관]

1. 조기특수심리교육 운영

- 1995년 준공된 건물 특성상 3층 교육실에 학부모 대기실이 없어 복도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건축물 안전등급상 증축이 어렵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주기 바람.
- 또한 수강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되고 대상 연령도 확대되면서 매년 60명에서 90명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음. 초기 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부여와 중간 평가를 통한 연장·종료 결정 체계를 구체화하여 신규 아동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라며, 수강료 자료는 면제 대상 인원이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기 바람.

2.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 취미기능 프로그램의 외국인·다문화 참여가 2023년 15명에서 2024년 5명, 2025년 1명, 2026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음. 문화 차이와 언어 소통 등 참여 저조 사유를 분석하여 별도로 보고해 주기 바람.
- 라인댄스 등 일부 프로그램은 신청 인원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요일별·시간대별로 수요를 분산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세밀히 검토해 주기 바라며,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도 관리 방식을 점검해 주기 바람.
- 강사료가 수년간 동결되어 있다가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간당 5천

원 인상될 예정이므로 차질 없이 반영해 주기 바람.

3. 종합사회복지관 청사 유지관리

- 본관이 1995년 준공되어 방수와 냉난방 설비 노후로 유지보수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으며 건축물 안전등급에 따라 연 2회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임. 장기적인 시설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유지보수 공사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 또한 종합사회복지관·노인회관·장애인복지관 3개 기관이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직원과 이용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임. 인근 아파트와 협의 중인 주차면 임차가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장애인복지관 이전 이후의 공간 활용 계획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4.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관리 강화

-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명에서 2026년 1명으로 감소하여 담당자 1인당 관리 가구 수가 늘어난 상황임. 종결 이후 3개월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인력 감소가 사례관리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살펴주기 바람.

5.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현황

- 장애인복지관 이전 이후의 시설 활용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인근 아파트 주차면 임차는 산정 단가를 제시한 만큼 입주자 협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람.
- 또한 슬라브 구조인 본관은 옥상 방수를 반복해도 누수가 재발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붕 설치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문화시설사업소]

1.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관련 사업 추진 현황

- 해미읍성 활성화 전통문화프로그램이 공연 중심의 볼거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요소가 부족함. 전통악기 체험, 체험 부스 운영 등을 추가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의 참여를 높여 주기 바람.
- 9천만 원의 보조금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15회 내외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병마절도사 행렬에 2,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음. 관람 중심에서 무예 체험 등 참여형 콘텐츠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예산 확대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라며, 10회째를 맞은 연날리기대회도 콘텐츠를 개발하여 참여를 확대해 주기 바람.

2. 해미읍성 내 사회적기업 영업행위 및 보조금 집행 관련

- 국가유산청 화기사용 및 현상변경 허가서가 부존재하는 상태에서 주막 시설이 운영되다가 합동점검 지적에 따라 도비·시비 6천만 원으로 인덕션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됨. 국가지정 사적 내 시설인 만큼 당시 협의 문서를 확인하여 자료로 제출 바람.
- 또한 매장별 매출에서 기념품 판매액이 매우 낮으므로 해미읍성의 특성을 살린 기념품을 다양화하고, 성 안팎 상인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중재해 주기 바람.
- 아울러 보조금 사업계획서가 출연진·스텝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 없이 작성되고, 보조금 2천만 원 사업의 정산 총괄표와 집행 내역에 410만 원의 차이가 있으며, 음향 견적서도 장비 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되어 있음. 보조금 교부와 정산 단계에서 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시정해 주기 바람.
- 2026년 자체감사에서 처분요구 11건과 주의 7건이 지적되었고 그 상당수가 비교견적과 허가 관련 사항임. 사무처리 기준을 정비하여 비교견적서

와 필수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 절차를 갖추어 주기 바람.

3. 류방택천문과학관 운영

- 천문과학관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류방택 선생 문중 및 기념사업회와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인하여 별도로 알려주기 바라며, 고가 장비가 설치된 시설인 만큼 화재보험과 소방시설 점검이 월 1회 이상 이루어지고 점검 일지가 관리되도록 계속 확인해 주기 바람.
- 천문과학관 주차장이 협소한 상황이므로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밤하늘산책원 사업과 연계하여 주차 공간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기 바람.

4. 류방택 별축제 추진

- 별축제 관람객이 늘지 않는 원인이 매년 동일한 주제와 한정된 예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추진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문화시설사업소가 새로운 기획을 제안하고, 별을 관측하는 축제 성격에 맞게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주기 바람.

5. 문화회관 기획공연 티켓 판매 현황

- 좌석 점유율이 2024년 90.07%에서 2025년 70.38%, 2026년 70.77%로 하락하고 있으며 시민이 기다릴 만한 대표 기획공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공연장 규모와 예산의 제약이 있더라도 횟수를 줄이더라도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또한 일부 제작사와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해당 공연의 점유율이 낮게 나타난 사례가 있으므로, 공연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제작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여 기획 역량을 높여 주기 바람.

6.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활성화

- 공공 문화시설의 성과를 판매율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에도 판매율이 낮았던 공연에 대한 별도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설문조사 외에 공연별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함께 고려하여 공연을 기획해 주기 바람.

7. 문화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 문화회관 외벽·무대 방수공사가 2024년과 2025년 각각 다른 부위에서 시행되는 등 누수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시설 전반의 방수 상태를 점검해 주기 바람.
- 또한 2025년 무대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적된 91건 중 75건은 처리되고 16건은 주의 사용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미처리 사항의 위험도 관리와 후속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해 주기 바람.

8.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 류방택 별축제는 핵심 프로그램 운영비가 3년 내내 1,750만 원으로 동일한 반면 식당 운영비는 2024년 900만 원에서 2026년 1,24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프로그램·시설물·무대 보수 등이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반복되고 있음. 동일 업체가 계속 수행하면서 축제 내용이 답습되고 있는 만큼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문화시설사업소가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람.
- 또한 식당 운영 수익금의 정산 방식, 종친회 협찬금과 사무실 임대료·시상금 등 행사 관련 수입·지출의 성격 구분, 드론 공연 등 별도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을 포함한 축제 총 투입 재원을 정리하여 확인해 주기 바람.
-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다량 복사되어 제출되고 동일 자료가 중복 편철된 사례가 있었음. 자료 제출 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하고, 방대한 자료는 열람이나 발췌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기 바람.

[시립도서관]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현황

- 공립작은도서관 6개소가 공무직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시니어클럽 인력이 주 16시간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립작은도서관 지원금의 사용 항목별 집행 내역도 계속 점검해 주기 바람.

2. 도서관 운영 내실화 및 이용환경·서비스 향상

- 성연작은도서관은 개관 초기에 비해 이용자가 감소하고 고북작은도서관은 일일 이용자가 매우 저조한 상황임에도 지역 인구 대비 이용률과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역별 특성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과 장서를 보완하고 탄력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람.
- 면 소재지 작은도서관은 학생 수가 적어 이용률이 낮으므로 도서 열람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문화공간·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검토해 주기 바람.

3.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예천동 공영주차장 내 작은도서관 설치는 시립도서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확인됨. 향후 도서관 신설은 수요와 운영 계획을 검토한 뒤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4. 도서관 이용현황

-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낮고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는 방식이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주말과 가족 단위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과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청소년문화의집처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람.

- 또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유아·초등 대상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성인 대상 프로그램과 야간 프로그램의 비율을 높여 주기 바라며, 예천동 공영주차장 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에 더하여 문화시설 측면까지 고려하여 조성해 주기 바람.
- 작은도서관이 일요일에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 등과 연계한 시니어 인력을 검증 절차를 거쳐 채용하여 주말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5. 독서동아리 현황 및 성과

- 독서동아리 지원 예산이 매년 2,400만 원으로 고정되어 40개소 규모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기 바람.

6. 독서문화 확산 및 장서 확충

- 최근 3년간 대출되지 않은 도서가 17만 5,836권으로 전체 장서의 36%에 이르고 일부 도서관은 미대출률이 50%에서 66%에 달하고 있음. 도서관 간 이동과 폐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장서 선정 단계에서 이용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구입한 도서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7. 도서 구입

- 연간 약 3억 원의 도서 구입 예산 중 지역서점 구매 비중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4개 지역서점 순번제 운영을 유지하면서 지역서점 구매 실적을 계속 관리해 주기 바람.

8. 폐기도서 나눔행사

- 폐기도서 나눔은 조례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본청 실과, 어린이집, 일반 시민 대상 순차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9.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현황

- 시립도서관 지하 매점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연도별 사용료가 달라지고 분기별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정 근거와 납부 현황이 자료에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의 안 번 호	제 56 호
의결(보고) 년 월 일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결 과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제 56 호

2026. 9. 16.
산업건설위원회

1. 감사목적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실태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건의를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6. 9. 8.(화) ~ 9. 16.(수)<9일간>

4. 감사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5. 감사반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 보조 직원
강 석 환	송 치 윤	가충순, 기양순, 김기욱, 김혜림, 안원기	이 희 광	주 무 관 박 태 현 주 무 관 최 은 진

6. 감사 대상기관

❍ 시 본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 15개 부서

❍ 서산시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 6개 부서

7. 일정별 감사부서 현황 및 감사방법

<table>
<tr><th>일 정 별</th><th>대 상 부 서</th><th>감 사 방 법</th><th>비 고</th></tr>
<tr><td rowspan="4">2026. 9. 8.(화)
10:00~</td><td>미래전략담당관</td><td rowspan="17">○ 회의식 감사
○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 필요시 현지확인 병행</td><td rowspan="17">○ 감사선언
○ 위원장인사
○ 증인선서
○ 강 평
○ 감사종료</td></tr>
<tr><td>투자유치과</td></tr>
<tr><td>토지관리과</td></tr>
<tr><td>기후환경대기과</td></tr>
<tr><td rowspan="4">2026. 9. 9.(수)
10:00~</td><td>자원순환과</td></tr>
<tr><td>산림공원과</td></tr>
<tr><td>상하수도과</td></tr>
<tr><td>도시과</td></tr>
<tr><td rowspan="4">2026. 9. 10.(목)
10:00~</td><td>주택과</td></tr>
<tr><td>원스톱허가과</td></tr>
<tr><td>농업정책과</td></tr>
<tr><td>농식품유통과</td></tr>
<tr><td rowspan="5">2026. 9. 11.(금)
10:00~</td><td>도로과</td></tr>
<tr><td>교통과</td></tr>
<tr><td>해양수산과</td></tr>
<tr><td>건설과</td></tr>
<tr><td>관광과</td></tr>
<tr><td>2026. 9. 12.(토)
~ 9. 13.(일)</td><td>토요휴무일
및 공휴일</td></tr>
<tr><td rowspan="3">2026. 9. 14.(월)
10:00~</td><td>농업지원과</td></tr>
<tr><td>축산과</td></tr>
<tr><td>기술보급과</td></tr>
<tr><td>2026. 9. 15.(화)
10:00~</td><td>서산버드랜드사업소</td></tr>
<tr><td>2026. 9. 16.(수)
10:00~</td><td>감사결과 강평</td><td colspan="2"></td></tr>
</table>

8.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총 평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 감사위원들의 감사자료에 대한 충실한 자료준비와 철저한 분석으로 시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음.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보완 요구와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음.

○ 또한, 핵심 사항 위주의 명확한 감사로 지켜보는 시민과 감사받는 집행부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시책추진에 새롭고 적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였다고 판단됨.

<감사 중 느낀 점은>

○ 미래전략담당관실, 해양수산과, 농업정책과의 경우 충실한 자료준비와 부서장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모범적인 감사가 이루어짐.

○ 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또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함.

<감사를 마무리하며>

○ 그동안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과 검토 약속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는 등 개선하여야 함.

○ 감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과 개선 사항들은 더 나은 행정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함.

나. 지적사항 및 보완·개선사항

[미래전략담당관]

1. 대산공단 현안 대응 및 미래산업 전환 추진 현황

- SAF 종합실증센터,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기반 구축, 한국화학연구원 지역조직 유치 등 대산공단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세입 악화와 경제침체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사업별 성과지표(KPI)를 설정해 기업유치 수, 채용률 등 핵심성과지표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협력업체 지원과 객관적인 경제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위기에 처한 유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더욱 집중하며, 국가산업단지 추진사항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SAF 종합실증센터 건립사업 부지를 미매립부지를 활용하여 시가 직접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한 만큼, 국가 R&D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면밀히 추진하기 바람. 또한, 대산 매립장 내 매립 폐기물 및 침출수 관리 현황을 소관 부서와 확인하고, 환경상 문제 발생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 대산 안산공원 추진 현황

- 대산 안산공원 조성사업은 오랜 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어 왔음. 이는 사업을 일관되게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단계별 착수가 반복적으로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조경공사, 컨벤션센터·체육시설

건립 등 남은 단계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국가해양생태공원 및 서산시 국가(지방)정원

-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및 서산시 국가(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이와 별개로 서산시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도 함께 발굴하여 개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천수만, 가로림만, 대산항 등 해양생태자원과 정원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광벨트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4.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분담금 관련

-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사업은 분담금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등재 이후 서산시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관광객 유치·일자리 창출 효과와 세계유산 지역센터 유치 등 후속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전망과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관련 조사용역을 통해 서산시 실정에 맞는 성과 전망치를 산출하고 지역센터 유치도 조속히 준비해 나가는 한편, 가로림만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타 지자체를 뛰어넘는 서산시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5. 컨테이너 화물 관련

-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인센티브 지원 규모가 매년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다수의

정기항로가 잇따라 중단되는 등 항만 경쟁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인센티브 확대만으로는 물동량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운 만큼 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서산 고속도로 등 배후 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원활한 수출입 물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6. 국제크루즈선 취항 추진 현황

- 대산항이 크루즈 기항지로 자리 잡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나, 최근 3년간 준모항과 기항 지원금으로 약 9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객의 실제 하선율, 체류시간, 서산지역 소비액 등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임. 26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용역 수행 시기를 두 차례의 크루즈 기항 이후로 설정한 것은, 사전 전략 마련보다 사후평가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됨. 타 지역 평균 지출액을 적용한 추정치만으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실제 소비액과 참여 상가 매출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업성과를 검증하고, 다음 기항 전까지 CIQ 인력 및 관광과 소비콘텐츠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보여주기식 크루즈 유치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함.

7. 대산공단의 고분자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은 대산 석유화학단지 및 KCL 입지를 사업 유치 근거로 반복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사업계획서상 연계 대상으로 언급된 주요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용 의사나 사업선정 이후 사업계획 재검토 여부는 불분명하여 대산 입지의 실효성과 고용유발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용 기업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 사업을 통해 서산시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고용창출 규모 등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조성 및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현황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는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총사업비 623억 원 규모의 사업임에도 향후 5개년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비·도비 확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일정이 다시 지연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투입 예산 대비 경제성 검증과 성과관리지표(KPI)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연구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성과관리 방향을 전환하고 사업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며,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청년일자리 창출과 장기재정계획에 기반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주기 바람

9. 한국화학연구원 지역조직 유치를 위해서 서산시가 노력하는 것

- 한국화학연구원 지역조직 유치는 2023년부터 관계기관 협의와 연구용역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치가 확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한 서산시가 화학 분야 연구 인프라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서산시만의 특화 연구 기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주기 바람.

[투자유치과]

1.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관련

-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총 28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센터 준공 이후 고용유발효과 257명 등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이러한 성과가 실제 지역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특히 센터 운영 및 관련 기업 유치 과정에서 서산시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화학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사업 추진 현황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2026년 사업비가 전년 대비 대폭 확대(38억 원)되었음에도 실제 집행실적은 여전히 저조하여, 확대된 예산만큼 기업들의 신청·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세미나 등 홍보 노력에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과 조건을 현장 수요에 맞게 재검토하여, 실제 필요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남부산업단지 관련 사업의 개요 및 추진 현황

- 남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4년째 표류되어 온 사업으로, 최근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산단 개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업일 뿐 정작 핵심인 사업시행자 모집과 실제 투자 유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임. 그동안 시행사 모집 시도와 취소가 반복되어 온 만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람. 또한 장동 공동묘지

분묘작업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부산단 구역에 남부산단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대안 사업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게 필요함.

4.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2년 넘게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률이 70%에 달해 재정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보임.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착공·준공을 추진하고, 향후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5. 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 현황

- 서산시는 현재 산업단지 11개소, 특구 1개소, 경제자유구역 1개소 등 총 13개 단지를 개발 중이나, 상당수가 아직 산단계획서 준비, 재검토, 지정심사 등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별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분양·기업유치 실적 역시 유치기업 수, 투자액, 고용인원 등 단순 현황 나열에 그치고 있는 만큼, 단지별 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분양 촉진 및 기반시설 지원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6.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 산업단지 내 재직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우수 청년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입주 대상은 산단 내 재직자로 한정되어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시민 입주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당초 일정이 미뤄지면서 착공기한과 사업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되는 협약서 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우려되며, 건축자재 단가 상승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연면적까지 15.4%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향후 계획 변경이 반복되어 사업기간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연면적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람.

7. 지곡면 화천2리 행복 마을 주변에 입주할 아스콘 공장 관련

- 지곡면 화천2리에 입주 예정인 공장은 인근에 주택단지와 서일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분진·소음 발생, 대형화물차량 통행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학생 통학 안전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크며,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도 무산되는 등 기업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기업활동은 존중하되 분진·소음 저감대책과 교통안전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주기 바람.

8. 바이오웰빙특구 추진 현황

- 바이오웰빙특구는 나인팜, 스마트팜 콤플렉스 등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민간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펀드 방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아울러 특구 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갈수기 용수 부족, 부남호·간월호 연결 등 근본적인 물 문제 해결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안정적인 용수 공급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9. 최근 5년간 기업유치 현황

- 최근 5년간 기업유치 MOU 체결 현황을 보면, 일부 기업의 투자 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다수 기업이 아직 투자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산업단지 내 미착공 부지도 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유치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독려해 주기 바람.

- 유치기업의 총 고용인원 449명 중 지역주민 고용은 229명으로 약 51%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역주민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되, 채용 분야나 방식 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0. 서산시 주요 입주 기업들이 관내 소상공인 및 용역 업체 활용을 위한 서산시의 활성화 노력 및 대책

- 관내 소상공인 및 지역업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기업 간담회와 지역업체 이용 권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시된 향후 대책은 적극 권고·협조 요청·홍보 등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격경쟁력 열위, 사후관리 한계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토지관리과]

1. 토지분할 시 통합위임장 공동활용 추진 현황

- 토지분할 시 통합위임장 공동활용 추진사업은 위임장 양식을 3종에서 1종으로 통합하고 민원처리 방문 횟수를 최대 3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킨 우수사례로 평가됨. 이와 같이 시민 편의를 크게 높인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를 다른 민원업무 분야로도 적극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 해미읍성 일원에 문화관광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LED 건물번호판 310개소가 설치되어 지역의 경관과 안내 기능을 함께 갖춘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이러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안착되고, 나아가 다른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된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서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함.

3. 찾아가는 유소년 드론 체험 교실 관련 운영(주민참여) 사업 관련

- 찾아가는 유소년 드론 체험교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으로 평가되는 만큼, 남은 교육예정 학교까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주기 바람.
- 찾아가는 유소년 드론 체험교실은 학교별로 교육 횟수가 2회 또는 5회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질적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학교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학교별 교육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균일하게 담보해 주기 바람.

4.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 실거래신고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한 시민 홍보가 미흡한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반 및 조치 현황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5. 조상 땅 찾기 및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운영 현황

- 조상 땅 찾기·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구비서류 간소화와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앞으로도 SNS·QR코드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홍보를 지속 확대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 바람.

6. 최근 5년간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 지적재조사사업은 여러 지구에서 순조롭게 완료되고 있으나, 경계 분쟁 미해결 사례가 남아 있고 조정금 미수금 문제도 발생하는 등 주민 간 갈등과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람.

[관광과]

1. 서산 한우목장길 진출입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관광객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진출입로 개선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최근 설치된 황소 동상이 목장길 산책로 안쪽에 위치해 도로를 오가는 차량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치 선정에 아쉬움이 제기됨. 아울러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일시 폐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점,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공간이나 주변 관광지 연계 홍보판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함께 논의됨.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 향후 유사 시설물 설치 시 가시성을 함께 고려하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공간 및 주변 관광지 연계 홍보판 설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중왕리 벚꽃 산책길 유지보수 현황

- 사업명은 '왕산로 둘레길 조성사업'이나 실제 조성된 구간은 데크로드 90m에 불과해 사업명과 규모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담당부서는 주변이 어촌체험 지역과 연계되어 있어 추가 연장에 소요될 여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하였으나, 해당 구간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호평받는 지역인 만큼 연장 가능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장 방문을 통해 왕산포·중리 방면으로의 연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람.

3. 버드랜드 · 간월도 · 창리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

- 2025년 수립된 「천수만 권역별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따라 창리 빛 어울림 공간, 천수만 워터 익스플로러 등 5개 세부사업이 2027~2030년 사이 순차 추진될 예정이나, 현재까지는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간월도~창리를 잇는 바닷길·바다광장 조성 등 작은 단위의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너지를 만들어 갈 필요성이 제기됨. 충남 관광개발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만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소규모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4. 체류형 관광 사업 활성화 계획

- 실제 온라인 홍보 콘텐츠 노출 사례를 검색한 결과 노출된 후기가 2~3건에 불과해 필수 과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아울러 장기 체류 조건임에도 교통비·식비·체험활동비 등 부대비까지 폭넓게 지원되고 있어, 예능 프로그램의 '자급자족' 콘셉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체류 기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홍보 콘텐츠 노출 총량을 늘릴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됨. 지원조건과 과제 구성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해 주시기 바람. 또한 도비 예산 지원에 대한 정보가 답변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었음.(전액 시비 부분으로만 기재) 도비 지원이 30%라고 했는데, 30% 지원에 비해 도에 관련된 내용이 과하게 많음.

5. 제5차 서산시 관광종합개발 계획 관련 사업 추진 사항

- 서산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에 비해 단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숙박시설이 부족해, 다수 인원이 방문하는 행사·모임이 1박을 하루로 단축하거나 인근 태안·당진 등지로 숙박을 옮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아울러 최근 빛들마을·솔마당마을·방길동마을 등 일부 농어촌체험마을의 지정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마을 중에서도 실적이 저조한 곳까지 보험료 등 운영 지원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됨. 대형 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과 함께, 체험마을 운영 실적에 따른 지원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6. 서산시 전국 관광기념품

- 2025년 말 조례 제정을 통해 캐릭터 상표권을 개방하여 지역 업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실제 구매는 축제·팝업스토어 일정에 맞춰야만 가능해 관광객이 서산 방문 시 상시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구조로 확인됨. 일본 구마모토 쿠마몬 사례처럼 캐릭터가 지역 상징으로 자리잡으려면 상시 구매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관광 명소 내 소규모 판매 공간 마련을 검토하되, 공모·심사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준비해 주시기 바람.

7. 시티투어 운영 현황

- 예산이 3년째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음에도 집행률은 2024년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실집행 추세를 반영한 예산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탑승료가 전액 버스회사에 귀속되는 반면 시는 정액 임차료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용객이 줄어도 시의 예산 부담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재정구조상의 문제도 함께 제기됨. 아울러 자유코스 이용 비중이 높아 관광보다는 경로당 등 복지 성격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실집행 규모에 맞는 예산 재산정과 함께, 관광인지 복지인지 사업 성격을 명확히 하고 탑승료 정산 구조의 개선 여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8. 해미읍성역사체험문화축제 예산 투입 현황 및 연도별 사업계획

- 예산이 2018년 8억8천만 원에서 8년 만에 15억5천만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홍보비 항목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예산 표기의 정확성을 높이고,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예산 증가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람.

9. 간월도 관광지 개발 추진 현황

- 해양경관탐방로 설치 이후 간월암 방문객이 2023년 96만 명에서 2025년 21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향후 파크골프장, 해안데크길 등 후속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람.

10. 26년 계속비 사업 일반회계 밤하늘 산책 조성사업 관련

- 2016년 사업 반영 이후 10년 가까이 지연되어 온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연차별 예산 배정 방식과 설계 변경 등이 반복되며 진척이 더뎠던 것으로 파악됨. 현재 보상률 62.4%까지 진행되어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지연 요인을 되풀이하지 않고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

11.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

- 서산해미읍성축제 예산이 전체 축제 예산의 약 65%를 차지하는 반면, 팔봉산감자축제, 6쪽마늘축제, 우럭축제 등 1차산업 연계 축제들의 예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축제 간 예산 편중 문제가 지적됨. 특히 해미읍성축제의 홍보비만 1억6천만 원에 달해, 축제 콘텐츠 자체보다 홍보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축제 예산이 홍보성 지출에 쏠리기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비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축제별 예산 편성의 형평성을 함께 살펴 다른 지역 축제 지원으로의 재배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기후환경대기과]

1.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 현황 및 악취 저감 대책

-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전국 최초로 4종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며 법정 목표 대비 115%의 생산율을 달성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악취 저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시설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람.

2. 퇴비 악취관련 민원처리 현황

- 석남동의 퇴비 악취 민원이 2025년 33건으로 크게 급증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나, 악취 발생 원인이 농경지, 퇴비 사용 농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동식 포집장치만으로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경운작업 유도 등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만큼, 석남동을 비롯한 민원 급증 지역에 대한 원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대산공단 인근 마을 환경 오염 및 대기 오염과 관련하여

- 벤젠, 부타디엔 등 발암성 유해대기물질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꾸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만큼 측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안내할 필요가 있음. 통합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서산시에 없더라도 CCTV 조속한 설치와 지도점검 권한 확대 등을 충남도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람.

4. 유해동물관리 및 포획현황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연간 40~45명의 인력이 야간 포획활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렵보험, 피복, 소모품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기 바람.
- 유해야생동물 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농작물 피해로 인한 포획 요청인 만큼, 신속한 유해동물 처리와 함께 피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5.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운영 실태

- 서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위반사항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점검과 예방적 관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지속적인 업무 발전과 성과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점검·관리 방안을 발굴하고 내실 있는 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6. 군소음 피해보상 추진 현황 및 주민 지원방안

-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과도한 감액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금액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추진 상황을 주민들과 적극 공유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안위를

지속적으로 살펴주기 바람. 아울러 광주공항 전투기 분산배치 대상지에 20전투비행장이 포함될 예정으로, 9,0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주민들의 피해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7. 무공해차 보급 지원 사업

- 무공해차 보조금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환수 건수가 2026년 상반기에만 10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환수 및 위반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관리하여 부정 수급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이 실제 필요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8. 잠홍저수지 및 성암저수지 관련

- 잠홍저수지는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질지표가 6등급 수준으로 열악하며, 폐그물 수거 등 수질관리 활동도 미흡한 상황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9. 잠홍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

- 잠홍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98억 원 중 데크로드·데크광장 등 친수공간 조성에 86억 원이 투입되는 등 당초 수질개선이라는 사업 목적에 비해 편의시설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데크길 조성도 의미가 있으나, 저수지 수질등급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생태습지·수질정화시설 등 수질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10. 석면 피해구제급여 분담금

- 서산시 석면피해 인정자는 2023년 14명에서 2026년 18명으로 매년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구제급여 분담금 지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석면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자 발굴을 위한 홍보·상담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12. 기후환경대기과 전반에 대하여

- 대산공단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 등 건강 영향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만큼,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자원순환과]

1.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회수시설 (환경종합타운) 운영 · 정비사업 추진 현황

- 자원회수시설은 가동률이 개선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톤당 처리원가나 수익구조 등 실질적인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처리 실적과 경제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해 주기 바라며, 재활용품 선별장 누후화에 따른 예비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주민편익시설은 운영비 대비 수익성이 낮아, 향후 운영비 부담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체험공간과 편익시설을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외지(지역주민 외)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환경종합타운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63억 원 규모로 국비 확보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 반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주기 바람.

2. 지곡 산폐장 관련

- 에어돔 파손사고 이후 마을주민합동조사단 운영, 다수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정보공유 노력이 있었으나, 오토밸리 인근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상징후 자동감지시스템 등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힘써주기 바람.

  환경 감시단 운영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대책 마련 바람.

3.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관련

-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은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나, 재활용률이 하락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클린하우스 이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더욱 갖추어 나가기 바람.

4.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현황 및 이용률(최근3년)

-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적립된 인센티브 포인트 대비 실제 현금 보상 비율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 시민들이 보상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페트병 외 캔 등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복합적인 회수 방안도 강구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5.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추진 현황

- 재활용품 선별률이 하락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지역별로 일률적인 홍보에 그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홍보를 통해 선별률과 재활용률을 높여나가길 바람.
-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하여 분리배출 참여를 확대해 주기 바람.

6. 2024년~2026년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 추진 현황

-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동문2동·석남동 등 일부 지역은 클린하우스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지역별 편차가 있음. 고령 주민이 많은 농촌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거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거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7. 2024년 ~ 2026년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감시 CCTV 설치 현황

- 환경감시 CCTV가 총 128대 설치되어 있으나 읍면동별로 부춘동 22대, 팔봉면 2대 등 배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설치 기준과 지역별 수요를 재점검하여 보다 균형 있는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운영 현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은 매년 정산검사에서 서청환경·오산환경 모두 수천만 원 규모의 집행잔액이 환수되고 있고 민원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25년 복무점검이 미실시되고 있으므로, 수거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필요시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람.

9. 농촌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사업(서산시 관내)

-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대상지 선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24년 예산 5억 원 중 상당액이 이월·불용되는 등 예산 집행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산시에서 거점 지역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을 건의함.

[해양수산과]

1.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실태 및 사업성과

- 웅도항 등 4개 권역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완료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와 주민 간 갈등이나 이용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준공 이전에 마을협의체와의 운영방식 협의를 완료하고, 재원·성과 관리까지 아우르는 운영계획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람.

2. 낙지 방류사업 관련 내역

- 2023년부터 매년 6억 원씩 총 3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서, 드론조사 기반 서식밀도는 조성 전 대비 3배가량 증가했으나 실제 서산수협 위판량은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남. 이는 사업의 최대 목적이었던 어민 소득 증대에 반하는 결과이기도

함. 또한, 수온 변화 및 산란시기 변동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었으나, 낙지의 활동반경이 넓어 타 해역으로 유실될 가능성, 금어기와 산란기 간의 정합성 그리고 통발을 이용한 불법 채취 등 추가로 살펴볼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존량과 어획량 간 괴리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람.

3. 수산종묘 방류실적 및 해양수산자원 어종별 금어기 현황

- 방류한 치어가 성체로 자라기 전에 채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방류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산란시기 변화에도 금어기 등 관련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있음. 다만 금어기 조정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충청남도 및 해양수산부에 금어기 현실화를 적극 건의하고, 방류 이후 불법 채포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태 조사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하여 어촌 체험 마을 현황

- 중리마을에 비해 왕산·웅도 마을의 수익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 지역 고령화에 따른 홍보·기획 역량의 한계가 지목됨. 아울러 체험 프로그램이 바지락캐기 등 유사한 내용에 편중되어 있어 마을별 차별화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귀어귀촌타운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층 유입 방안을 강구하고, 마을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기 바람.

5.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 실태

- 어업인 지원 예산이 2023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음에도, 조피볼락을 제외한 대다수 방류품종에 대해서는 생존율·회수율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 확대의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는 집행률이 4.6%에 그쳐, 생사료 사용에 따른 지원 취소·반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방류사업 전반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세부 지원조건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6. 국가거점 어항사업 공모현황 및 추진계획

- 삼길포항이 총사업비 889억 원 규모로 공모에 도전하였으나 민간투자 부분의 신뢰성 부족, 배후지 여건 미흡 등을 이유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오랜 기간 삼길포 주민들이 준비해 온 사업인 만큼, 탈락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재공모 시 사업계획을 보완해 주시기 바람.

7. 삼길포항 어촌뉴딜 3.0 공모 및 추진 현황

- 주말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삼길포 지역 특성상, 이번 공모에 반영된 주차타워 조성 계획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모 선정 시 해당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람.

8.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 현황

- 기초조사부터 실시설계, 시공까지 전 과정이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되는 구조로 인해, 서산시가 사업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공단에 위탁했다 하더라도 현장 협의와 주민 의견 반영 과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례적인 협의체 구성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람.

9.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 연도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원인이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것인지 수거 인력·장비 부족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분석되지 않고 있음. 특히 4개 읍면에 배치된 바다환경지킴이가 8명에 불과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담당부서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0. 갯끈풀 제거사업 추진 현황

- 갯끈풀 자생면적이 약 37배 급증한 가운데, 현재 사업계획은 단순 제거 실적(면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발생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특히 갯끈풀은 씨앗이 맺히기 전(초여름 이전)에 제거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음에도 현재 사업 시기가 9~11월로 계획되어 있어, 오히려 씨앗 확산을 촉진할 우려도 있음. 아울러 뿌리·줄기 파편이 남지 않도록 하는 현장 감독 체계도 공단 위탁과는 별도로 갖출 필요가 있음. 제거 시기를 재검토하고, 재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과 현장 감독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11. 적조 피해예방지원(전환사업) 관련

- 최근 5년간 실제 적조 피해 사례는 없음에도 예방사업 예산 16억 원이 전량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어, 정작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적조방지망·산소공급기·황토살포기 등 실질적인 예방장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사업 물량 미확정 등으로 불용액이 반복 발생하는 문제도 함께 지적됨. 아울러 최근 창리 부유물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담수 방류와 관련해, 방류 전 수질기준 초과 시 방류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됨. 지원사업 내용을 어업인 수요에 맞게 다변화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람.

[산림공원과]

1.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추진 현황87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본수는 2022년 이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예방나무주사와 방제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성과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임.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 읍면동별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피해가 특히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와 관리에 계속 신경 써주기 바람.
-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지침상 시군 단위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 서산시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외된 상황임. 방역 예산 확보에 더욱 힘쓰는 한편,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기 바람.

2. 대산공단 인근 산불 대응책

- 대산읍 화곡리·대죽리 일원은 석유화학단지와 석유비축기지에 인접해 있어 산불이 확산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산불대책본부 가동, 유관기관 협업체계, 합동훈련 등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

3.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추진 현황

-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은 매년 집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용 성과나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직 별도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공원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만큼, 민원·만족도·시설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요예측 지표를 마련하여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시설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4. 녹지관리 현황

- 완충녹지 2호 조성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최소 3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임. 완충녹지 3호 조성사업은 사유지 보상은 마무리되었으나 토지 보상과 관련한 행정소송 2건이 접수되어 있고 인근 건물주와의 협의도 늦어지고 있음. 향후 예산 편성 계획을 차질 없이 세우고,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관계자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주기 바람.

5. 중앙호수공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 중앙호수공원 어울광장 수중 플랜터 7개 등 신규 설치된 인공구조물은 기능과 활용도가 불명확하고 시민 체감효과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임. 효과 검증 없이 시설물만 확충될 경우 호수 본연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향후에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공시설 확충보다는 호수 본연의 자연성과 수변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6. 최근 5년간 산림훼손 현황

- 산림훼손은 불법산지전용이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림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조합과 연계한 예방 활동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 산림훼손 단속·처분 업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량에 비해 담당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산림훼손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 증원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7. 명품가로수 조성사업

-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은 국도 29호선 구간을 중심으로 꾸준히 식재되며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잘 챙겨주기 바람.
- 식재된 이팝나무와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관련 민원 사항을 세심히 살펴 잘 챙겨주기 바람.

8. 최근 5년간 산불진화대 활동 실적

- 산불기동진화대는 매년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할 정도로 관심이 높고 인건비 지급액도 꾸준히 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잘 챙겨주기 바람. 특히 2026년에는 운영인원이 기존 200명에서 70명으로 크게 줄어든 만큼, 산불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규모를 잘 살펴봐 주기 바람.

9. 칡 넝쿨 제거사업 현황

- 칡넝쿨 제거사업은 덩굴류의 강한 번식력 때문에 한 번의 작업으로는 완전한 제거가 어려워 지속적·반복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함께 모색해주길 바람.

10. 산불진화헬기 관련

- 산불 진화헬기는 봄철과 가을철에만 임차 운영되고 있어, 그 외 기간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음.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가 위치한 청양은 서산에서 거리가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인접한 지역과 공동으로 헬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상하수도과]

1. 국지성 호우에 따른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 현황

- 2025년 7월 집중호우 당시 동지역에서만 주택 침수피해 79건, 상가 등 침수피해 458건이 발생하는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우선시공 구간인 석림동 스마트701 구간은 공사 완료 후 침수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효과가 확인된 만큼, 나머지 구간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힘쓰고,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와 시 재정여건 강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람.

2. 삼길포항 하수관 관리 현황

- 삼길포항 하수관로는 관광객 이용이 많은 지역 특성상 이물질 유입 등으로

막힘이 잦아 수시로 준설이 필요한 상황임. 다른 관광지의 사례도 참고하여 막힘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점검·준설 체계를 계속 철저히 운영해 주기 바람.

3. 서산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유수율을 현재 73%에서 85%까지 끌어올려 연간 누수량 15만 6천㎥ 저감, 정수 구입비 약 2억 5,800만 원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8억 원 중 국비 74억 원을 포함한 재원 협의도 마무리된 상태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대효과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경제성 검증과 진행 상황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바람.

4. 마을상수도 운영 및 지방상수도 전환 추진 현황

- 관내 마을상수도 7개소는 대부분 1970~1990년대에 설치되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지방상수도 공급 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에도 급수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 수도요금 부담 등으로 전환 신청이 저조한 상황임. 특히 고령층이 많은 면지역의 경우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원인자부담금 한시 지원 등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5. 서산시 하수관로 정비사업(5차) 관련

- 총사업비 36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시비 예산 일부가 아직 2회 추경 편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 2028년 준공 계획대로 착공 일정과 공정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6. 부석면·팔봉어송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 현황

- 부석면·팔봉어송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별로 가동률 편차가 크고(32~86% 수준), 오수 넘침이나 설비 오작동 등으로 최근 2년간 41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음. 취평·양길 시설 증설계획이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증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계속 신경 써주기 바람.

7. 배수지 가압장 등에 설치된 펌프 현황

- 노후 설비를 중심으로 이상 유무를 꾸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유지관리를 맡은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건설과]

1. 농업용 저수지 · 용배수로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최근 기후 여건을 감안하면 기존 점검 방식만으로는 c등급에서 d등급으로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17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위험등급 정보가 시와 공유되지 않고 있어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 기후변화를 반영한 점검체계 고도화와 함께,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2. 농어촌 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 관련

- 관내 총 166개소가 설치되어 상당수 마을에 보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부지가 사유지이거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설치가 무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향후에는 민원 접수 순서에 따른 지원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거나 기존 쉼터 인프라가 열악한 마을을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고령화 및 인프라 취약도를 반영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실태

-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사업은 시민들이 행정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는 사업인 만큼,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공 품질을 담보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단순 민원 접수·처리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본 원인까지 파악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킨다면 반복되는 숙원사업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민원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바람.

4. 음암, 운산, 해미, 고북 관내 저수지 수계연결사업 추진현황

-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중부지구 농촌용수체계재편사업으로, 2027년 기본조사용역 착수 이후 2033년 사업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서산시가 설계·공사 기간 단축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대호호를 수원으로 활용하는 구간의 경우 물수지 분석 결과 여유 저수량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량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비 100%·농어촌공사 시행 구조인 사업

특성상 서산시 차원에서도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국비 확보 및 단계별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5. 비법정도로 등에 대한 소송 및 사용료 지급내역

- 성연 소재 일부 필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가 패소하여 매년 사용료를 지급해 온 결과, 누적 지급액이 해당 토지의 예상 매입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됨.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로부지임이 분명함에도 사전에 매입 계획을 세우지 않아 사용료만 계속 지급하게 된 것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필지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사유재산 보호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 사용이 예상되는 비법정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 지급에 앞서 매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6. 청지천 정비사업 현황

- 중류구간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상류·중류·하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천 특성상 중류구간만의 정비로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저류지로 원활히 유입되는지, 하류 전유지 일대 스포츠시설 등의 배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10월로 예정된 실시설계 시 하류 구간과의 연계성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람.

7. 음암, 운산, 해미, 고북 하천 등(세천, 농업기반시설) 피해 복구현황

- 전체 하천 피해 복구사업 중 상당수가 준공되었으나, 피해액 기준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운산면·음암면(원평천, 도당천 등)의 경우 아직 공정률이 10~3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됨. 도당천은 도 시행 구간으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원평천은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2026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체 복구 완료까지는 다소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임.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인 만큼 잔여 구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

8. 고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현황

- 2017년부터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900m 구간이 조성되었으나 잔여 구간(약 350m) 개설을 위해서는 인접 사유지(제방 연결 구간)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한 상황임.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 차원의 협조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구간이 완성될 경우 해미 벚꽃축제 등 지역 축제와의 연계,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의 운동·산책 수요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용 승낙 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

9.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

- 전체 20개소 중 18개소가 준공되었으나, 운산면 유계리와 성암리 2개소는 아직 미준공 상태로 확인됨. 유계리 구간은 도당천 개선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비를 도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며, 성암리 구간은 현재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반납이 불가피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관내 다른 피해 지역에 재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입찰 진행 중인 사업은 연내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

[도시과]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 실태 및 관리체계 점검

- 최근 3년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53건 추진되며 행정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8개는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인구감소·고령화 등 생활권 변화를 고려한 도시공간 재편이 필요한 시점임. 사업 중심의 접근을 넘어 SOC 등 다양한 성과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사업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길 바람.

2.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 및 도시성장 기반 구축

- 서산시 도시개발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시행 시기 조절 필요로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한이 연장되는 등 사업 추진에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분양·과잉공급 우려에 대한 수요예측을 더욱 충분히 하고, 무리하게 준공 시기에 맞추기보다는 단계별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아울러 수석지구와 연계 검토 중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계획도 실제 노선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외버스 없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3. 불법간판(도로) 정비 및 과태료 징수 현황

- 불법간판은 자진철거 방식으로만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강제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는 최근 3년간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하루아침에 모든 불법간판을 정비하기는 어렵더라도, 관광지 등 무분별한 간판이 특히 눈에 띄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서산시의 경관을 개선해 나가기 바람.

4.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관련 내역

-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45억 원 중 40억 4,500만 원이 집행되고 약 4억 5,5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상태로, 예산 편성 당시 세부 계획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채로 추진된 측면이 있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한도와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상 비용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앞으로 다른 기관과 사업을 함께 추진할 때에는 예산을 미리 선지급하기보다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며 집행해 주기 바람.

5. (26년 계속비 사업 일반회계) 읍내동 도시 재생 인정 사업(복합커뮤니티)

- 실제 추진 내용은 당초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사정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 설계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기 바람.

[도로과]

1. 간월호 옆 코스모스길 및 간월도 직선화도로 추진 현황

- 서산시는 검토된 3개 대안 중 사업비가 가장 낮은 대안1을 '가장 현실적인 노선'으로 결론지었으나, 이는 단순 공사비 비교에 그친 것으로 간월도·버드랜드·창리를 잇는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도로법」 제48조의2에 따른 관광도로 지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은 검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서산시가 추진 중인 마라톤 풀코스와의 연계, 사기리 내 현재 사용하지 않는 현대RPC부지의 향후 개발 가능성, 천수만 철새도래지 탐방과 연계한 자전거 드라이브 관광 등을 함께

고려하면 해당 도로는 단순한 이동로가 아니라 체류형 관광을 이끄는 관광축으로 발전할 수 있음. 비용 절감 논리만으로 노선을 확정하기보다 관광 활성화에 따른 유발효과를 함께 분석하여 종합적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관광도로 지정 추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2. 보도블록 관련

- 성연테크노밸리 인도 뿌리들림 현상은 오래전부터 주민들과 약속되었던 사안임에도 이행되지 않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자료 작성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부서와의 예산 협업을 통해 조속히 정비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3. 양대선(중로1-26호)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및 3차 구간 추진 검토

- 2028년 서산공항 개항 및 남부산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3차구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 후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 필요'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쳐 구체적인 착수 시기나 예산 확보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도로망의 완결성 없이는 2차구간 조기 준공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바, 3차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시하기 바람

4. 미끄럼방지 포장 시공

- 현재 미끄럼방지포장(규사 포장방식)을 3가지 시공방식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에서 시공 후 마모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수막현상을 유발해 우천 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제기하였음. 현재 점검은 민원 접수 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공 이후 마모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루빙 등 대체 시공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람.

5.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 서산시가 보상금까지 투입한 노선이 계획 변경으로 실효되어 사유재산 침해 및 행정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됨. 특히 건축행위 시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제외하고 건축했으나 이후 노선이 실효되어 잔여 부지가 무용지물로 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우선 추진 대상 선정기준 또한 2018년에 마련된 이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기준 재정비가 필요함. 도시계획도로 변경·실효 시 사유재산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현행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애남선(인지면 애정리~남정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 2023년 10월 투자심사 완료 이후 4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으며, 2027년 3월에야 재해위험성 검토용역이 예정되어 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임. 보상협의 지연 사유가 '보상가 저렴'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불응인데,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물가상승 등으로 총사업비만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음. 해당 구간은 폭 3m의 협소한 도로임에도 귀농귀촌 등으로 이용가구가 50호에서 120호로 늘어난 상황인 만큼, 보상협의를 신속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최소한 1차구간(0.7km)만이라도 계획대로(2028.6)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 오남선(소로2-475호) 도시계획 변경 추진 현황

- 1995년 최초 결정 이후 2022년 한 차례 실효되었다가 재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8m 왕복2차로 구간에서 연 6~7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1차구간만 우선 개설하고 나머지 1.2km 구간은 2029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특히 해당 구간에는 안전등급 D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교량이 임시조치(아스콘 덧씌우기)만으로 대형차량과 보행자가 동시에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를 통한 병행 추진 등 전체 구간의 조기 완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빗물받이(그레이팅) 설치 현황

- 매년 시내 전역 12,980개소를 대상으로 4억9,300만 원 이상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현재까지 별도의 거름망 등 예방적 조치 없이 매년 동일한 방식의 준설 작업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타 지자체에서는 자체 개발한 저비용 거름망을 시범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서산시도 일부 상류지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쓰레기 유입 차단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과속방지턱 기준 초과 시설내역

- 기준 초과·미달 시설 5개소를 확인한 결과, 설치근거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서산시 자체 조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공업체별로 규격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기준 미달·초과 시설은 단순 보수가 아닌 기존 시설물을 깎아낸 후 재시공해야 하는 구조로, 관리 소홀이 반복될 경우 유지보수 예산이 계속 낭비될 우려가 있음.

준공·검사 단계에서 규격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재시공 비용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명지 사거리~독곶 사거리 도로 확포장 관련

- LG화학의 대산3일반산업단지 입주 포기 의사에 따라 사업비 확보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임. 해당 구간은 통학로가 포함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대 정체(평시 20분→최대 1시간)가 심각한 만큼, 투자유치과·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추가 사업비(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11. 시도5호선→문양리 도로 1.7㎞ 잔여 구간 관련

- 전체 17개 노선 중 우선순위 5위에 머물러 사업 추진이 장기간(10년 이상) 정체되어 있음. 특히 이장 및 주민 100%의 동의서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절차적 걸림돌은 없는 상황임에도 예산 미확보를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바, 최소한 문양1리 마을회관까지의 구간(650m, 약 17억 원)이라도 우선 개설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12.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현황

- 다수 노선의 보상협의 지연 사유가 공통적으로 '보상가 저렴'에 따른 토지소유자 불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물가상승 및 금융비용(이자) 부담으로 총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그럼에도 사업설명회는 최초 1회에 그치고 이후 보상 진행상황에 대한 집약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률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가로림만 해양정원 인근 관광 요충지인 호리선·호리3선 등 짧은 구간임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5개년 정비계획상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보상협의 촉진을 위한 집약적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광연계 노선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지방도 649호선 이마트~명천사거리 확포장 계획

- 면구간(충청남도 시행)과 동구간(서산시 시행) 간 실시설계 착수 시점이 약 1년 차이가 나면서, 사업효과가 큰 구간 연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서산테크노밸리 출근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충청남도와의 준공시기 조율을 통해 양 구간이 최대한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조기 착공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교통과]

1. 감응신호 구축사업 관련

- 감응신호를 구축한 결과, 출퇴근 통행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같은 시기 대산공단 근로자 감소 등 외생 변수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교통량 자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또한 감응신호 구간과 인접한 일반신호(명지사거리 등)가 연계되지 않아 감응신호를 통과한 뒤 곧바로 정지신호에 걸리는 사례도 함께 지적됨. 감응신호의 순수한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교통량 데이터 분석 체계를 갖추고, 인접 신호와의 연계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안전관리 실태

- 예천동 한성필하우스 앞 승강장에서 지붕 구조물이 도로 쪽으로 돌출되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석남동 관내에만 유사한 구조의 승강장이 5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됨. 승강장 위치가 보도 중앙에 설치되어 유모차·휠체어 이용자 등의 통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됨. 전체 승강장(약 1,007개소) 규모를 감안할 때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사고를 계기로 문제 소지가 있는 정류장을 조속히 파악하여 안전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3. 최근 3년(23~26년 현재) 행복택시 운영현황

- 현행 대상조건이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는 다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거리기준의 예외 적용 확대와 이용대상 적정성에 대한 점검, 부담금 조정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람.

4. 행복버스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 배차성공률은 평균 96.5%로 양호한 수준이나, 문제점 파악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고북 지역에서 저녁 시간대 호출 시 배차가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고, 해미행 막차 시간이 일러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귀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운영상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저녁 시간대 배차 및 막차 운행시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5.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추진 현황

- LED바닥신호등 등 안전시설의 하자보수 시 별도의 관리대장 없이 담당자의 출장복명 방식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보수 원인과 횟수, 무상보수 여부 등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별 하자보수 이력을 관리하는 대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6.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 배차간격이 큰 노선은 모바일 지도 앱 등에 도착예정시간이 표출되지 않아, 이용자가 승강장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 국토부 데이터가 포털(카카오맵 등)로 전달되는 현행 구조로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배차간격이 긴 노선에도 대기시간을 안내할 수 있는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7. 시내버스 운영 및 재정 지원 현황

- 면 단위 무궤도 승강장에 의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 관광지·학교 앞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승강장 디자인 도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됨. 회계 항목 표기의 명확화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승강장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8. 해미 시외버스 정류장 신설 계획 여부

- 현재 승·하차 지점은 보도가 협소하고 주변이 상가로 밀집되어 있어 정식 승강장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함. 이에 임시방편으로 인근 상가의 양해를 얻어 의자만 설치해 둔 상태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불편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인근 유휴 상가 임차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대안을 계속 모색해 주시기 바람.

9. 특별 교통수단 관련

- 2024년 7월 바우처 택시 5대 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2024년 4,201건에서 2025년 10,607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휠체어 이용자의 외출·병원 방문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한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2026년 본예산 16억3,220만 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람.

10. 인지초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 2024년 예산 편성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4.2%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체육진흥과·교육청 등 3개 기관·부서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업 구조상 협의가 지연되어 온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됨. 다행히 최근 교육청과 주차장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올해 9월 실시설계, 11월 완공 계획이 마련된 상태임.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주택과]

1.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오면서도 집행률이 97~99%대를 유지하는 등 지원 노력이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 선정 배점체계도 준공연수·세대수·소규모세대비율·심사위원 평가 등으로 비교적 체계

적으로 갖춰져 있으나, 현재는 최근 3년간의 지원 이력만 배점에 반영되고 있어 장기적인 형평성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심사위원 평가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하고, 총지원액 기준의 공동주택 보조금 누적관리제 도입을 검토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한층 더 보완해 주기 바람.

2. 최근 5년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현황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신청 단지 대부분이 선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연간 예산 규모가 3~5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비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3. 한센인 정착마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추진 현황

- 한센인 정착마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단열재 미시공, 접도되지 않은 주택의 장비 투입 어려움 등으로 당초 예산 1억 5,400만 원보다 1억 67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해져 2회 추경으로 예산을 보완한 상황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살피고,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의견과 민원에도 귀 기울여 주기 바람.

4. 공동주택 수목 정비 지원 기준 및 관리 방안

- 공동주택 수목 정비 지원은 2024년에는 신청 10개 단지가 모두 선정되어 지원되었으나, 2025년에는 신청 2개 단지 중 선정된 단지가 한 곳도 없었던 것

으로 나타남. 신청 단지가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수목 정비가 필요한 단지가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 등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 기준과 안내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람.

5. 대산읍 일자리연계 공공임대주택 건설 관련

- 대산읍 일자리연계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2024년 10월 LH가 참여 어려움을 통보한 이후 시에서 LH 및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청구하였으나, LH의 입장 변화는 아직 없는 상황임. LH는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가로 인한 예산 낭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점을 불참 사유로 들고 있는데, 정작 대산읍 지역은 주택 부족으로 청년들의 정주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충남형 공공임대주택(다옴주택) 등 대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실수요에 맞는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6.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 관내 빈집은 2023년 175호에서 2026년 619호로 3년 새 3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위험도·경관저해·주거환경 저해 등 특성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은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현재 추진 중인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활용·관리·철거로 등급을 구분하되, 읍면동별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정비 이후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빈집은 앞으로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기 바람.
-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만큼, 공모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7.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황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조건이 눈에 띄게 좋은 편이나, 최근에는 예산 대비 집행률이 다소 낮아지는 추세임. 전세자금 이자 지원에 더해 주택 매입에 대한 지원도 함께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남는 예산을 활용해 매입자금 지원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8.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

-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예산이 거의 전액 집행되며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 방치된 슬레이트가 거리 등 생활 근접 지역에 남아있는 경우 주민 불편과 건강 우려가 큰 만큼, 이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순위를 조정하고, 수거비용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기 바람.

[원스톱허가과]

1. 건축행정 원스톱 서비스 추진 현황

- 건축행정 원스톱 서비스는 건축인허가와 건축물대장 업무를 통합 처리하면서 민원인 편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음. 다만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는 연간 1,000건 안팎에 이르는 전체 복합민원 접수 건수에 비해 실제 이용 건수가 연 20~40건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활용도가 낮은 편임. 이 제도가 대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처리 건수 위주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관리 지표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운영을 이어가기 바람.

2. 민원처리 신속성·공정성 및 사후관리 현황

- 민원처리 신속성·공정성 및 사후관리는 2026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원스톱허가과가 96.9점을 받는 등 전체 부서 평균을 웃도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처리기간 연장 민원도 최근 들어 뚜렷이 줄어드는 추세임.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민원처리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 건축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관련

-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건축사·토목설계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연간 상담 건수가 2023년 35건에서 2025년 24건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임. 제도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원인들이 제도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4.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관련

-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사업은 2023~2025년 3년간 신청 실적이 전혀 없다가 2026년에 처음으로 지붕 수선 1건이 지원된 상황임.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지원금액이 신축 기준 최대 6,000만 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상향된 만큼, 농촌 빈집을 한옥스테이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서 주기 바람.

5. 농막 및 체류형쉼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운영 현황

- 농막 및 체류형쉼터 가설건축물은 총 969건이 신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존치기간 사전예고와 SMS 알림, 현황 표시제 등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농막의 체류형쉼터 전환 등 제도 변화 과정에서 주민 간 민원이나 업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는 만큼, 관련 민원 사례를 잘 파악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농업정책과]

1. 여성농업인 및 귀농귀촌 농업인 농기계 보급 사업 현황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가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정해진 품목 목록 안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2026년 지원 현황을 보면 대산읍과 부춘동은 배정 실적이 없는 반면 팔봉면 40대, 해미면 38대 등으로 읍면동별 편차가 큰 편임. 여성농업인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장비를 수요자 중심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품목의 폭을 넓히고, 읍면동 간 형평성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람.
- 신청 수요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읍면동이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람.

2. 청년농업인 육성 및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추진 실태

-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감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정 축소에 따른 부분도 있으나, 정착 이후의 성과를 5년 정착률과 같은 핵심 지표로 관리하고 농지은행 연계, 선배 농업인과의 1:1 멘토링, 로컬푸드 등 판로 지원, 창업모델 다각화 등을 재정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연계해 주길 바람.

3.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현황

- 현재 선정 기준에는 자부담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가 없는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설계라는 설명은 이해가 되나 준공 지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금 계획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임. 사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신청자가 스스로 준비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시설 10년, 장비 5년의 의무관리 기간을 두고 미이행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구조 아래 현재 9명이 참여 중이며 중도포기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네트워크·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품목별 판로 지원과 멘토링 연계도 함께 챙겨주시고, 준공 이후의 매출·소득 등 경영성과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사업명(자립형)에 걸맞은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람.

4. 최근 3년간(23 ~ 25년)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현황

- 관내 보유 경운기 874대 중 자체조사상 134대가 폐차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노후 경운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시가 선제적으로 실태를 자체 조사해 둔 점은 의미가 있어 보임. 다만 조기폐차 지원은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될 사업으로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니, 134대에 대한 폐차가 한 해에 다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순차적인 추진계획을 챙겨주시고,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만큼 사업물량 확대를 위한 도비 증액 건의를 지속해 주시기 바람.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관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 남부권 7개면과 북부권 3개면으로 나

뉘어 수립되고 있는데, 특히 부석면과 같은 남부권 면 지역의 경우 소재지 내 도로·주차장·공원, 장옥 정비 등 지역 현실에 맞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도로과, 일자리경제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 읍면 소재지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권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람.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농촌인력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024년 560명에서 2026년 상반기 1,351명까지 늘어난 반면, 이를 총괄하는 담당 인력은 1명에 그치고 있어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배정 기준에 비추어도 상당히 과중한 상황으로 보임.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자치행정과 등과 협의하여 인력 확충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농가와의 통역 공백이나 개별 농가가 직접 고용한 계절근로자에 대한 보험·안전 관리 매뉴얼 마련도 함께 챙겨봐 주시기 바람.
- 라오스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사전교육 체계나 내년부터 친족 초청 범위가 4촌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되는 점 등은 안정적인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람.
- 시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입국 후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안내를 강화하는 등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7. 농업기계 지원현황(23 ~ 26년)

- 곡물건조기 지원 실적과 농업용 드론 지원 보조금 수치에서 자료상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만큼, 향후 감사 자료 작성 시 한 번 더 검증을 거쳐주시기

바람. 아울러 농업기계 공급 시 일부 기종이 특정 대리점 위주로 취급되면서 가격에 대한 농가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수의 대리점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을 비교·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 주시고, 보조 지원을 받은 농기계가 의무 보유기간 내 명의를 달리하여 재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8. 서산6쪽마늘 기계화 지원 및 재배기반 유지 대책

- 서산 6쪽마늘은 서산시의 대표 농특산물이나, 재배면적 감소 추세는 이미 2022년 무렵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만큼, 그간의 대응이 다소 뒤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부서 차원에서도 깊이 있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재배면적·생산량 감소 폭에 비례하여 관련 축제 예산과 보조금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만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다만 육쪽마늘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라는 법적 지위와 브랜드 가치를 감안할 때 전면적인 품종 대체보다는, 고령농의 재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우량종구 보급과 대서종 등 대체 품종의 시범단지 조성을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재배기반을 다시 다져가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임. 기획예산담당관실과의 예산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서산 육쪽마늘이 전국 대표 명성과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9.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서산시는 쌀 생산량이 전국 3위 규모임에도 뚜렷한 쌀 브랜드가 자리 잡지 못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상황임. 향진주·뜸부기쌀 등 기존 자산을 살리면서 화성시 등 타 지자체의 브랜드화 사례도 참고하고, 현재

추진 중인 RPC·DSC 통합 작업과 연계하여 서산시만의 쌀 브랜드 전략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람.

10. 농지 전수조사 추진현황

- 심층조사 대상 6만 4,443필지 중 상당수가 고령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농지나, 법 개정 이전 주말농장 형태로 구입한 농지 등 서산시의 지역 여건이 반영되기 어려운 전국 일률 기준에 따라 부적합 의심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실적 여건이 조사·처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산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이번 전수조사 결과가 일회성 자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갱신·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정부의 전수조사 취지 자체는 이해하나, 고령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경 중인 소규모 농가까지 일률적인 조사·처분 대상이 될 경우 선의의 농업인들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영농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분보다는 유예·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람.
- 현대 A·B지구와 같이 타 지역 경작자 비중이 높은 농지의 경우, 전수조사를 계기로 시세가 조정되면 오히려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임대 연계 등 농지은행 제도를 활용하여 청년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람.

[농식품유통과]

1.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대책

- 관내 우수 농특산물이 대형식품기업 납품, 해외 수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어렵게 맺은 거래관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또한 각 농협 로컬푸드 매대에서 서산산 농산물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소량만 진열되거나 품목이 한두 가지로 제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진열 위치와 품목을 넓혀 주시기 바람. 아울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투입 대비 성과(매출·소득 증대 등)를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향후 사업의 지속·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해 주시기 바람.
- 농사랑(충남도 통합 온라인몰)에 서산 제품이 30개 업체·28개 품목 입점해 있는데, 최근 도의회에서도 농사랑의 낮은 인지도와 판매 부진이 지적된 바 있음. 경북에서 운영하는 유사 플랫폼 '사이소'는 지역별 특별관과 통합 마케팅 체계로 매출이 크게 성장한 사례로 알려져 있는 만큼, 충남경제진흥원과 협의하여 지역별·품목별 특별관 구성을 검토하고 청년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위한 별도 코너를 마련하는 등 농사랑을 서산뜨레몰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2. 최근 5년간 뜨레 운영 현황

- 서산뜨레몰·우체국쇼핑몰·농사랑 3개 쇼핑몰의 최근 총매출은 약 53억 5천만원인데, 같은 기간 홍보비 집행액은 약 20억 9천만원으로 매출 대비 약 39%에 달하고 여기에 위탁운영비 등을 더하면 매출 대비 지출 비중이 44%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 농산물 홍보라는 간접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지출 비중이 계속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매가 우수하거나 서산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품목을 선별하여 마케팅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해 주시고, 김장철 절임배추와 같이 계절별로 매출이 집중되는 상품을 활용한 계절 브랜드 육성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람.

3. 로컬푸드 및 지역 먹거리 활성화 추진 현황과 지원센터 운영실태

-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을 준비 중인 만큼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람. 학교급식지원센터나 농협 로컬푸드 매장 등 기존 안정적인 납품처에 청년 농업인들의 출하 조직을 추가로 구성해 선의의 경쟁 구도를 만들고, 공공형 직매장이 완성되면 매장의 일정 비중을 청년 농업인에게 배정하는 등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4. 학교급식 지원현황

- 학교급식 식재료 중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에 이르는 반면, 서산산 농산물이 차지하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품목이 다양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까지 전부 대체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나, 지역 농산물로 대체 가능한 품목을 꾸준히 발굴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공급 비중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5.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현황

-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최근 빛들마을, 솔마당마을, 방길동마을이 잇따라 지정

취소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5개 마을 중에서도 별마을은 2023년 이후 방문객·매출 실적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면서도 보험료 등 운영 지원은 전 개소 대상으로 계속 지급되고 있음. 마을 지정과 취소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인 점은 이해되나, 기능을 상실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상화든 지정 취소든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점을 정해두고 관리해 주시기 바람.

- 회포마을은 5개 체험마을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곳임에도 매출이 2022년 약 5억 8천만원에서 2025년 약 6천만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23년에는 방문객이 전년의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방문객과 매출의 흐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정확한 감소 원인을 마을 대표자 등을 통해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6. 서산6쪽마늘축제 관련

- 축제가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마늘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농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장 규모·접근성 등 현실적 여건과 함께 6쪽마늘의 고장인 인지면 개최 가능성도 다시 한 번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대표 축제가 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면 국토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흐름과는 다소 배치될 수 있는 만큼, 축제 접근성·편의성뿐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하여 향후 장소 선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농업지원과]

1.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및 농업인 지원 성과 점검

- 지난해 지적에 따라 지역별 재배작목에 맞춘 재배치가 이루어져 보유대수가

다소 감소함. 다만 임대사업 성과가 건수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농가 경영비 절감률·노동력 절감률 등 정량적 성과 분석자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성수기 예약 집중, 인기 기종 부족, 운반서비스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함. 성과분석을 경영비 절감 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반복 민원의 근본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전반적인 관리는 양호하나, 농기계의 성능·다양성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신기종 도입 요구가 높으나 예산 및 내구연한 제약으로 반영이 더딘 상황이며, 대농 위주 대형 농기계보다 중소농이 필요로 하는 소형 농기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이 제기됨. 소형·다양한 기종 확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람.

- 이용률이 저조한 기종을 단순화하려는 개선방안에 대해, 저조하더라도 중소농 등 소수 이용자에게는 꼭 필요한 기종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아울러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도 온비드를 통한 재판매나 필요 농가 대상 활용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단순화 검토 시 소수 이용자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람.

2. 콩 콤바인 현황

- 콩 재배 농가에 비해 콤바인이 3대에 그쳐 부족한 상황이며, 고구마·감자 수확기 등 농가 희망 품목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급이 지연되고 있음. 콤바인 확충과 함께 희망 품목의 보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콤바인 임대가 본소에만 집중되어 있어 콩 재배 면적이 넓은 음암·운산 지역 농가의 운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음. 반품된 콤바인의 성능 보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별 분산 배치에 힘써 주시기 바람.

3.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개최 현황 및 지원내역

- 6개 단체 회원 규모에 비해 예산이 5년째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농특산물 전시 부스는 있으나 시식 코너가 부족해 '보는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예산 증액과 함께 시식·체험 위주의 부스 확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전시 부스에 편성된 시식 예산이 소박한 편이어서 행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볼거리·먹거리를 확충하여 내실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람.

4.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현황 및 농가소득 창출 성과 분석

-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임에도 참여농가가 저조하며, 교육 이수 후 실제 창업·판로 개척으로 이어진 농가의 매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참여 확대를 위한 단계적 개방과 함께, 매출·소득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판로 연계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축산과]

1. 축산(우, 돈, 계) 낙농 지원 현황

- 4개년간 불용액 비중이 높고 지원 농가수는 늘었음에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임. 학생 우유급식 소비 감소로 인한 반납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 한우·낙농 지원 예산은 특정 대형 사업 유무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커 특정 농가·품목에 예산이 쏠릴 우려가 있음. 예산 편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럼피스킨병 방역 추진 현황 및 대응체계

- 2023년 발생 이후 2025년부터 재발 사례가 없어 방역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투입된 방역 예산에 대한 사후 성과관리 체계(항체형성률, 재발률 등)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에만 안주하지 말고, 향후 재발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역교육 이수 관리, 초동대응 매뉴얼, 농가별 위험도 통합관리대장 등 성과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람.

3.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

- 염소는 이력 표식 제도가 없어 통계 파악이 소나 돼지에 비해 어려운 편이며, 이에 최근 등록농가가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하였음. 등록 확대 시 타 지역 사례처럼 혜택만 노린 허위 등록 우려가 있는 만큼, 심사·점검을 함께 강화해 주시기 바람.

4. 축산물 점검, 수거검사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 2023년 세무서와의 전수조사를 통해 폐업 미신고 사례를 정비한 것은 성과이나, 현장 점검 인력이 제한적이어서 서산한우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상시 점검·단속에는 한계가 있음. 동물방역팀이 축산물 위생관리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분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점검 인력 확충과 업무 분장 개선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람.

5. 가축분뇨 처리지원(자체) 사업관련

- 운반비 지원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으며, 장마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춘 지원 시기 조정이 필요함. 미달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6.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입양 활성화 추진 현황

- 안락사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임. 동물복지위원회가 보호동물 수 기준 미달을 이유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조례 조문과 시행규칙 해석에 혼선의 여지가 있음. 안락사율 완화를 위한 반환·입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설치 근거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람.

7. 구제역 예방 백신지원 관련

- 소·염소 접종률은 동일하나 염소의 항체양성률이 소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축종별 항체형성 특성 차이에 따른 것임. 임신 중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산 시 보상률이 시중가 대비 낮다는 농가 의견이 있어, 보상기준 개선 검토가 필요함.

8. 가축 재해보험 가입 현황

- 한우 농가의 가입률이 낮고, 양돈농가는 검역기준의 모호함 등을 이유로 신규 가입이 저조함. 영세농가에 대한 자부담 비율 완화를 검토하고, 재해지원금과 보험금 간 중복지원 관련 안내, 보험사 선정 시 농가 안내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람.

[기술보급과]

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현황

- 파쇄기 운영 규모가 인근 당진시에 비해 적은 편이며, 신청 농가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상반기 접수 마감 후 하반기까지 추가 접수가 불가해 그 사이 부산물을 오래 보관해야 하는 농가 불편이 있음. 지속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2.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실태 및 성과

-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는 신품종·신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반복되는 보조사업 성격에 가깝고 노동력·경영비 절감 등 정량적 성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음. 성과지표(KPI)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확산 판단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3. 서산국화축제 관련

- 2024년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후 2025년부터 고북면 이장단 주도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국화 작품 재배 관리 인력이 6개월 기간제 1명에 그쳐 여름철 관리 공백이 우려됨. 관리인력의 상시 채용을 조속히 확정하고, 시설 보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람.

4. 벼 직파재배 보급사업 관련

- 직파재배율이 정체되어 있어 목표치 도달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잡초 관리·염해 취약성 등으로 한 번 실패한 농가가 재도전을 꺼리는 경향과 관련됨. 레이저균평기 등 신기술 도입으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만큼, 고령 농가를 위한 작업단 위탁 방식 등 확산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람.

5.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디지털농업 확산 추진 현황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사전 보고 없이 절차가 진행된 점에 대해, 성과와 별개로 절차상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공모사업 응모 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자부담 비율 결정 시 시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의회에 사전 설명하는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람.

6. 스마트 양파 기계화 보급 시범사업 관련

- 서산 지역의 경사지 지형과 토양 특성상 기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음.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감안해 기계화 보급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7.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농업환경 분석센터 운영 현황 관련

-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서비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기준 초과 시 사후관리나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집계자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정례적인 분석결과 집계표를 만들어 관리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8. 최근 5년간 농업 시범사업 추진현황

- 5년간 시범사업 중 본사업으로 확산된 사례가 4건에 그쳐 성공률이 낮은 편이며, 확산되지 못한 사업의 원인이나 자부담 부담으로 인한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사업량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원인 분석 자료를 갖추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9. 각종 병해충 공동방제 현황 및 기대 효과

- 돌발해충 방제용 약제비가 매년 예산에 포함되나 실제 발생 여부에 따라 쓰이지 않는 해도 있어, 비축 약제의 이월 관리 등 예산 운용을 합리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음. 예산 편성 시 이월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람.

[서산버드랜드사업소]

1. 서산버드랜드 운영 활성화 및 시설관리 현황

- 서산버드랜드 방문객 수가 뚜렷한 증가세 없이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건물이 2013년 전면개관 이후 내부 시설과 4D영상관 콘텐츠가 그대로 유지되어 재방문객들이 식상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으로 계획된 시설·콘텐츠 전면개편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현재 프로그램이 여름철새기행·아시아조류박람회 등 여름·가을에 편중되어 있고 봄·겨울철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니, 봄철 꽃 테마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계절별 방문 수요를 고르게 이끌어내 주시고, 간월도 방향 도로 연계 등을 통해 주변 관광지와의 동선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람. 야생동물 안락사·폐사 현황에 대해서는 세부 판단 기준과 절차를 위탁기관과 함께 명확히 파악

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람.

- 지난해 아시아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성과로 평가되나, 연간 약 50억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자체 수익률은 2%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러한 구조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투입 대비 성과를 방문객 수·연령대·소비행태 등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니, 내년 예정된 종합 용역에 민간위탁 등 운영 다변화 방안과 함께 성과관리 체계 구축도 포함해 주시기 바람. 4D영상관 좌석 등 시설 하자보수 이력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향후 유지보수 이력 추적과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장부화를 갖춰 주시기 바람. 4~5년째 법적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캠핑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문제를 해소하거나 원상복구하여 시설이 계속 정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호 중인 조류가 폐사·안락사에 이르게 된 경위도 위탁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시가 직접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4D영상관은 2011년 개관 이후 2013년 제작한 영상을 15년 가까이 그대로 상영해 오다가 올해 처음 신규 영상을 임차하였는데, 임차 영상의 제작연도나 제작처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도입한 것으로 보임. 관람객 사이에서 기존 영상이 다소 시대에 뒤처진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전면개편 시 관내 정착한 황새 부부 스토리 등을 소재로 한 신규 영상 제작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카페테리아 판매 품목이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주 이용객인 아동·청소년의 기호에 맞는 간식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람.

- 방문 후기 등을 살펴보면 체험 프로그램뿐 아니라 미로공원·광장·야외공연장 같은 공간 자체의 경관과 휴식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 성인 방문객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확충해

주시기 바람. 전기버스 승강장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에 배차 간격과 대기 상황이 한눈에 파악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내년 설치 예정인 스마트 승강장을 통해 대기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람.

2. 노후 시설물 관리 및 교체계획

- 철새전시관·4D영상관·둥지전망대 등 핵심 시설물이 설치된 지 13~14년이 지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최근 5년간 시설 유지보수·교체에 매년 수억 원에서 많게는 13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노후 시설물 전반에 대한 교체·개선 계획을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함께 수립하여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람.

3. 생태관광협의회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 천수만생태관광협의회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27년 예정된 국제 생태관광 관련 행사 서산 개최와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회 차원의 구체적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충남도와의 연계 협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람. 아울러 관광과 소관인 크라운파머스 인근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체험공간 조성 등 연계 방안을 적극 협의해 주시고, 시설 정비에 그쳤던 창리뉴딜300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객이 머물며 즐길 콘텐츠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4. 천수만 철새서식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현황

- 아시아조류박람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단순 행사성 투자가 아닌 안목 있는 투자였다고 평가할 만하나, 생태관광 활성화의 성과를 계층별·시기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한 자료가 부족한 점은 아쉬움. 탐조투어의 경우 22인승 차량 한 대로 운영되는 데다 예약 후 미취소 등으로 운영에 제약이 있어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해 주시기 바람. 특히 4~5년째 법적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캠핑장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향후에는 사업 효과를 과학적 데이터로 관리·평가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차별화된 생태 콘텐츠를 발굴해 주시기 바람.

- 서산·태안 신재생에너지 관련 송전선로가 간월도~해미 구간을 통과할 예정으로, 인근 부석면·간월도 지역에는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을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볏짚존치 등 먹이제공사업 면적만으로는 다수의 도래 철새를 감당하기 부족해 인근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5.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과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 간에 단가가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면서, 기존 참여 농가가 단가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같은 시 안에서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부서별로 단가 차이를 두고 운영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축산과와 협의하여 단가 체계를 조정하거나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

토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전년 대비 철새 개체수가 감소한 원인으로 잦은 강우에 따른 먹이자원 감소, 간월호 수위 조절에 따른 휴식처 소실 등이 제시된 만큼, 서식지 환경 관리에 계속 신경 써 주시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도 차질 없이 유지해 주시기 바람.

[공통사항]

1.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완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한 결과, 보조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확보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 보조사업 신청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른 신청자의 수혜 기회까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사업 신청 단계부터 대상자의 사업 추진 의지와 수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도비가 불필요하게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2. 행정사무감사 준비 개선 필요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다수 부서의 수치 불일치 사례가 확인되었음. 이는 단순한 오탈자를 넘어 감사자료의 신뢰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확한 자료 작성과 사전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감사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거나

준비와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자료 불충분과 신속한 자료제출 미흡으로 감사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내실있는 감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추가 자료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 우수 수범사례

1. 미래전략담당관

- 서산 가로림만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그 탁월한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서산이 명실상부한 생태관광지로 빛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2. 농업정책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농촌인력 지원사업은 비자·입국 절차부터 배정, 관리, 민원 대응까지 업무 범위가 방대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난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한정된 인력만으로도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왔음.

3. 해양수산과

- 창리 부유물 사건 발생 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칫 확산될 수 있었던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음.

4. 교통과

-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특별교통수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5. 농업지원과

- 인력난,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대변하며, 이를 뒷받침할 여러 사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6. 기술보급과

- 교부받은 보조금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파악됨.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 9. 22.(화)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8. 24.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회계과 소관)

다. 회부일자 : 2026. 8. 27.

라. 심사일자 : 2026. 9. 7.

2. 제안설명 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사업명	취득 구분	규모(면적)	취득가액(예정)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토지	2,3350㎡	1,450,000천원

4. 검토의견 요지

○ 현 수소충전소는 2020년 12월 준공 이후 연중무휴로 운영되면서 주요 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수요 증가로 기존 시설의 단독 운영에 따른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산정 시 동일한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토지·건물·시설물(공작물)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 본 건은 단순히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이후 해당 토지에 충전소 및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 취득과 시설 구축이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되는 경우라면 토지 매입비뿐만 아니라 향후 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공유재산 취득 규모 등을 종합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 취득 사항만 반영한 사유와

향후 수소충전소 건축 및 관련 시설물의 취득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인지,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의 안 번 호	제50호
의결연월일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8. 24.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50호

제출연월일 : 2026. 8. 2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2. 제안이유

상기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부사업: 1건

연번	심의안건	소관부서
1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기후환경대기과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35	225,609	14,359,207	36	227,944	14,474,322	1	2,335	115,115	
		건물	9	7,509	31,981,900	9	7,509	31,981,900				
		기타	1	-	514,000	1	-	514,000				
	1. 매입	토지	35	225,609	14,359,207	36	227,944	14,474,322	1	2,335	115,115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9	7,509	31,981,900	9	7,509	31,981,900				
		기타	1	-	514,000	1	-	514,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토목공사비포함)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 1필지		2,335	1,450,000			
1	음암면 상홍리 916-12	임야	2,335	1,450,000	2026.12.	수소충전소 구축	

회계명: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단위 :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건수	수량(면적)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1	1,121	430,464	1	1,121	430,464	-	-	-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1	1,121	430,464	1	1,121	430,464	-	-	-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연번	1

소관부서: 기후환경대기과

1. 제안이유

○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과 사업을 추진하여 충전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수소차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상기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 위　　치 :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916-12 / 1필지

○ 사업기간 : 2026. 2. ~ 12.

○ 소요예산 : 1,450백만원(전액 시비)

○ 사업면적 : 2,335㎡(임야)

○ 매입방법 : 협의취득(사유지)

○ 취득대상

(단위 : 천원, ㎡)

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기준가격[1]	취득비용 (추정가격)[2]	비고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916-12	임야	2,335	115,115	1,450,000	

· 2026. 4. 감정평가액(1차): 602,000원/㎡ × 2,335㎡ = 1,405,670,000원

1) 공시지가 × 취득면적

2) 토지가격 및 기타 부대경비(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등)를 포함

3. 그동안 추진현황

○ 2026. 2. ~ 6. : 토지주 사전 미팅 및 협의

○ 2026. 4. : 취득 대상 토지 감정평가(1차) 실시

○ 2026. 7. : 의원정책간담회 설명 및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4. 향후계획

○ 2026. 9.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서산시의회)

○ 2026. 9. ~ : 토지 매입비 예산 확보(제2차 추경 및 정리추경 예산)

○ 2026. 12. : 토지 매입 완료

※ 토지 매입 완료 후, 일자리경제과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 확보 예산을 활용하여 수소충전소 구축(확장) 사업 본격 추진

5. 의결을 요하는 사항

○ 現 수소충전소 준공(2020. 12.) 이후 현재까지 연중무휴 운영·가동으로 인해 주요 설비의 부하 지속 및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최근 유지 보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운영상, 정비상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 지속적인 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하여 충전 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기존 충전소의 단독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소충전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현장 사진, 관련 법규 등

❑ 위치도 및 사진현황

(단위 : 천원, ㎡)

대상지	소재지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916-12	지목	임야	면적(㎡)	2,335
	용도	수소충전소	기준가격		115,115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